

광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2019. 2



제 출 문

광주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시로부터 의뢰받은 「광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9. 2.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사장 조 형 준

참 여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범

조

강

박

김

상

민

민

지

민

규

석

애

완

영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이해	3
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1.2 과업의 목적	3
2. 과업의 범위	4
3. 과업 추진 체계	5

II 사업여건 분석

1. 광주시 일반현황	9
1.1 입지여건	9
1.2 자연환경	10
1.3 인문환경	12
2. 지역문화재단의 이해	8
2.1 문화재단의 개요	8
2.2 문화재단의 유형	8
2.3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	12
3. 문화예술여건 분석	12
3.1 경기도 문화예술여건	12
3.2 광주시 문화예술여건	12

III 관련계획 및 법제도 검토

1. 관련 계획 및 정책	11
1.1 역대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14
1.2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비전 2030」	24
1.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2018)	34
1.4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2014~2030)	54
1.5 민선 7기 공약	46

2. 관련 법규	4
2.1 지역문화진흥법	4
2.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4
2.3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5
2.4 지방재정법	5
2.5 문화예술진흥법	5
2.6 기부금 관련 법규	8
2.7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관련 법규	35

IV 사례조사 및 분석

1.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75
2. 경기도 내 문화재단 사례연구	95
2.1 일반현황	59
2.2 비전 및 추진방향	6
2.3 조직 및 인력현황	8
2.4 사업범위 및 주요사업내용	36
2.5 운영시설 현황	6
2.6 축제 운영 현황	8
2.7 단체 운영 현황	9
3. 해외의 지역문화예술기관	17
3.1 영국	71
3.2 미국	73

V 설문조사 및 분석

1. 시민 설문조사	7
1.1 조사 개요	77
1.2 설문 분석	78
2. 이해관계자 의견	9

VI 광주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1.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59
1.1 공공문화시설 운영방식	59
1.2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11
2. 대상사업 검토	108
2.1 기초문화재단의 사업범위	8
2.2 광주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	9
2.3 문화재단 대상사업의 수행기관 중복도 검토	21
2.4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 방안 검토	2
3. 조직 및 인력계획	124
3.1 이관시설의 기존 인력 검토	14
3.2 광주문화재단 인력계획(안)	8
3.3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 변동요인 검토	51
4. 운영계획	136
4.1 비전도출을 위한 SWOT 분석	8
4.2 운영 기본방향	137
4.3 운영 사업 계획	139

VII 광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1. 경제성 분석	155
1.1 기본방향	155
1.2 비용 추정	157
1.3 편익 추정	163
1.4 재무적 타당성	170
1.5 경제적 타당성	172
2. 파급효과 분석	174
2.1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4
2.2 경제적 파급효과	179
2.3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180

VII 종합결론

부 록

1. 주민의견조사 설문지 18
2.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3. 광주문화재단 정관(안) 20

표 목 차

[표 1] 광주시 위치	9
[표 2] 광주시 기상개황	11
[표 3] 광주시 행정구역 현황	21
[표 4] 최근 5년간 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3· 1
[표 5] 행정구역별 인구	41
[표 6] 연령별 인구	51
[표 7] 연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6 1
[표 8] 광주시 산업구조	71
[표 9] 문화재단의 유형 분류	91
[표 10]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	0 2
[표 11] 경기도 시·군 인구대비 문화예산	12
[표 12] 경기도 시·군 인구대비 문화시설	22
[표 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32
[표 14] 광주시 문화시설 현황	42
[표 15] 광주문예회관 개요	52
[표 16] 광주문예회관 시설 현황	5 2
[표 17] 광주문예회관 운영 인력 현황	5 2
[표 18] 광주문예회관 운영예산	5 2
[표 19] 남한산성 아트홀 개요	62
[표 20] 남한산성 아트홀 주요 시설 현황	6· 2
[표 21] 남한산성 아트홀 운영 사업 현황	7· 2
[표 22]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인력 현황	8· 2
[표 23] 청소년수련관 개요	92
[표 24] 청소년수련관 주요 시설 현황	9 2
[표 25]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 현황(2017년)	0· 3
[표 26] 광주문화원 개요	23
[표 27] 광주문화원 운영 인력 현황	2 3
[표 28] 광주문화원 주요 사업 현황(2018년)	3· 3
[표 29] 광주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4 3
[표 30] 광주시립예술단 개요	4 3
[표 31] 광주시립예술단 단원 현황	4 3

[표 32] 광주시립예술단 운영예산	5 3
[표 33] 광주시립예술단 연도별 공연실적	5 3
[표 34] 광주예총 개요	63
[표 35] 광주예총 운영 조직 현황	6 3
[표 36] 광주예총 운영 예산 현황(2018년)	7 3
[표 37] 광주시 축제 현황	83
[표 38] 광주시 문화예술 관련 부서별 업무 분장	8 3
[표 39] 역대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1 4
[표 40]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14~2018) 목표 및 과제	3 4
[표 41] 경기도 6대 문화권역 설정	3 4
[표 42] 경기도 7대 문화벨트 설정	4 4
[표 43] 문화·체육 부문 기본방향 및 목표	54
[표 44] 문화 관련 추진과제	64
[표 45] 지역문화진흥법	74
[표 4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 4
[표 47]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9 5
[표 48] 지방재정법	105
[표 49] 문화예술진흥법	15
[표 5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 5
[표 51] 전문예술법인 기부금 세액공제	2 5
[표 52] 경기도 내 문화재단의 전문예술법인 지정현황	2 5
[표 53] 청소년활동진흥법	35
[표 54]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7 5
[표 55] 시군구별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8 5
[표 56] 경기도 내 문화재단 일반 현황	9 5
[표 57] 경기도 내 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	10 6
[표 58] 경기도 내 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 현황	2 6
[표 59] 경기도 내 문화재단 사업범위	3 6
[표 60] 경기도 내 문화재단 운영시설 현황	6 6
[표 61] 경기도 내 문화재단 운영시설 세부 현황	6 6
[표 62] 경기도 내 문화재단 축제 운영 현황	8 6
[표 63] 용인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9 6
[표 64] 조사 내용	77

[표 65]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87
[표 66] 문화예술 활동 관심도	08
[표 67] 선호하는 문화예술 활동(다중응답)	0 8
[표 68] 최근 1년간 문화예술 활동 참여지역(다중응답)	1 8
[표 69] 공연 관람 참여횟수	18
[표 70]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참여횟수	2 8
[표 71] 축제 방문횟수	28
[표 72] 문화예술교육 참여횟수	28
[표 73] 역사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 활동횟수	3 8
[표 74] 문화관련 단체 활동횟수	38
[표 75] 극장에서 영화관람 참여횟수	3 8
[표 76] 최근 1년간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별 만족도	4 8
[표 77] 문화예술 활동 및 환경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4 8
[표 78]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 주요 고려사항(다중응답)	5 8
[표 79]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 장애요인(다중응답)	5 8
[표 80]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험	6 8
[표 81]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 만족도	6 8
[표 82]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불만족한 이유	6 8
[표 83] 향후 문화예술 활동시간 확대 의향	7 8
[표 84] 광주시 문화예술활동 필요 여건(다중응답)	7 8
[표 85]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	8 8
[표 86] 광주문화재단 설립 찬성 이유	8 8
[표 87] 광주문화재단 설립 반대 이유	8 8
[표 88]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추진 희망 사업(다중응답)	9 8
[표 89]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성공 요건(다중응답)	9 8
[표 90]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기대효과(다중응답)	0 9
[표 91] 이해관계자 의견	19
[표 92] 운영방식별 장단점 분석	99
[표 93] 운영방식별 평가기준 및 검토결과	00
[표 94] 광주시 도시개발사업	0
[표 95] 광주시 관내 문화 관련 사업분석	01
[표 96] 문화 관련 추진과제	0
[표 97] 광주시 문화관광과 팀별 업무	01

[표 98] 기초문화재단 주요 사업영역 내용 및 사업 예시	801
[표 99] 광주문화재단 이관검토 대상사업	91
[표 100] 경기도 내 문예회관 운영주체 현황	101
[표 101] 타 지자체 문예회관 운영 현황	11
[표 102] 경기도 내 문예회관 운영주체 현황	111
[표 103] 경기권 문화재단 운영축제	51
[표 104] 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결과	71
[표 105] 광주시 및 관련 단체의 이관 대상사업	81
[표 106] 광주문화재단 사업범위(안)	91
[표 107] 광주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1021
[표 108] 광주시 문화예술 관련 단체	11
[표 109] 광주시 문화예술 단체별 사업내용	21
[표 110]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영역 구분	321
[표 111] 문화팀 인력별 직급 및 담당업무	51
[표 112] 유사규모 공연장 운영인력 비교	61
[표 113]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7·21
[표 114] 유사규모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력 비교	721
[표 115] 팀별 업무범위	1
[표 116] 단계별 조직 및 인력계획	2
[표 117] 문화재단 직급체계 사례	2
[표 118] 1단계 운영인력(2020년)	31
[표 119] 2단계 운영인력(2021년)	31
[표 120] 3단계 운영인력(2022년)	41
[표 121] 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조건 사례	431
[표 122] 공무원 인력감축 효과	3
[표 123] 공무원 인력감축 효과	3
[표 124] 분석기법 장단점	5
[표 125] 기준 기본급의 한계액	7
[표 126] 직급별 인건비	8
[표 127] 단계별 운영인력 및 인건비	81
[표 128] 단계별 팀별 인건비	9
[표 129]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신규인력	951
[표 130]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신규인력	1061

[표 131] 이관사업 운영비	0
[표 132] 문화재단 특화사업 운영비	11
[표 133] 광주문화재단 총 사업비	16
[표 134] 문화재단 설립 후 5년간 사업비	21
[표 135] 현 운영비 대비 문화재단 설립시의 운영예산 비교	261
[표 136] 유사 인구규모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기부금 현황	361
[표 137] 광주문화재단의 예상 운영수입	31
[표 138] 남한산성아트홀 기획공연 수입 및 이용객 현황	461
[표 139] 국내 공공 및 민간공연장 평균 티켓가격	461
[표 140] 기획공연 수입	4
[표 141] 전시실 관람에 따른 이용료 절감편익	561
[표 142] 대관료 절감 편익	6
[표 143] 청소년 수강료 절감편익	6
[표 144] 성인 수강료 절감편익	6
[표 145] 남한산성문화제 직접경제효과	71
[표 146] 왕실도자기축제 직접경제효과	71
[표 147] 자연채 행복밥상 편익	8
[표 148] 해돋이행사 편익	8
[표 149] 광주문화재단의 사회적 편익	91
[표 150] 광주문화재단의 연차별 수입 · 비용 내역	071
[표 151] 재무성 분석 결과	1
[표 152] 광주문화재단의 연차별 편익 · 비용 내역	271
[표 153] 경제성 분석 결과	3
[표 154] 광주문화재단 예상 출연금	4
[표 155] 유사규모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출연금 현황	471
[표 156] 연도별 광주시 예산규모 현황	51
[표 157] 분야별 예산규모 현황(일반회계)	671
[표 158] 일반회계 대비 출연금 비율	61
[표 159] 경기지역 산업연관표 유발계수	91
[표 160]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9
[표 161] 광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종합	41

그림 목 차

[그림 1] 과업 추진 체계	5
[그림 2] 광주시 위치도	9
[그림 3] 광주시 표고 및 경사 분석도	0 1
[그림 4] 연차별 인구 및 세대 추이	3 1
[그림 5] 연령별 인구 현황	5 1
[그림 6] 연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6 1
[그림 7] 문화예술사업 주체 형태	9 1
[그림 8] 남한산성 아트홀 주요시설	6 2
[그림 9]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조직도	8 2
[그림 10] 청소년수련관 전경	9 2
[그림 11]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0 3
[그림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1 3
[그림 13] 광주문화원 운영조직도	2 3
[그림 14] 광주시립예술단 공연 모습	5 3
[그림 15]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비전 2030」	2 4
[그림 16] 문화권역별 지도	4 4
[그림 17]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도시미래상	5 4
[그림 18] 용인문화재단 조직도	9 6
[그림 19] 수원문화재단 조직도	0 7
[그림 20] 공공예술 프로젝트	3 7
[그림 21] 뉴욕주예술위원회 추진 사업 이미지	4 7
[그림 22] 광주시의 인구변화	10
[그림 23] 광주시 문화예술 예산 및 광주시민의 문화활동 참여지역	20 1
[그림 24] 광주도시관리공사 조직도	6 1
[그림 25] 문화예술단체간 역할관계 정립	3 1
[그림 26] 광주 도시관리공사 조직도	4 1
[그림 27] 의정부예술의전당 조직도	8 1
[그림 28] 김포문화재단 조직도	9 1
[그림 29] 광명문화재단 조직도	9 1
[그림 30] 광주문화재단 인력계획(안)	6 1
[그림 31] 비전 및 목표	8

[그림 32] 광주문화재단의 단계별 추진계획	81
[그림 33] 대구문화재단의 ‘옛 골목은 살아있다’ 공연 전경	10
[그림 34] 신당창작아케이드 및 연희문학창작촌 전경	141
[그림 35] 인천문화재단의 우주인 프로젝트	21
[그림 36] 성남문화재단의 시민밀착형 문화지원사업	341
[그림 37]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매개자 사업	41
[그림 38] 완주문화재단 찾아가는 예술포차	51
[그림 39] 부산문화재단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71
[그림 40] 인천 서구문화재단 노을마당 문화행사	81
[그림 41] 인천문화재단 인천왈츠	9
[그림 42] 운영재원 조달방안	8
[그림 43] 최근 1년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지역	81
[그림 44] 문화예술활동 참여시 장애요인	81
[그림 45] 문화재단 설립 기대효과	8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이해
2. 과업의 범위
3. 과업 추진 체계

1. 과업의 이해

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한 이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문화시설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 및 문화진흥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집행에 따라서 향후 경기도 지역의 문화/관광 수요 대비 공급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필요성과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하여 법 제정 및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문화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재단의 필요성 제기
- ◆ 광주시는 급속한 도시 발전과 동시에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임
- ◆ 그러나 공공영역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의 확보가 어렵고 지역주민 및 관련 문화계가 요구하는 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지역 내 문화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다양한 문화시설의 운영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사업무에 대한 운영인력 중복투입 및 문화프로그램, 공연 등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문화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문제 야기되며, 문화적 전문성을 갖춘 조직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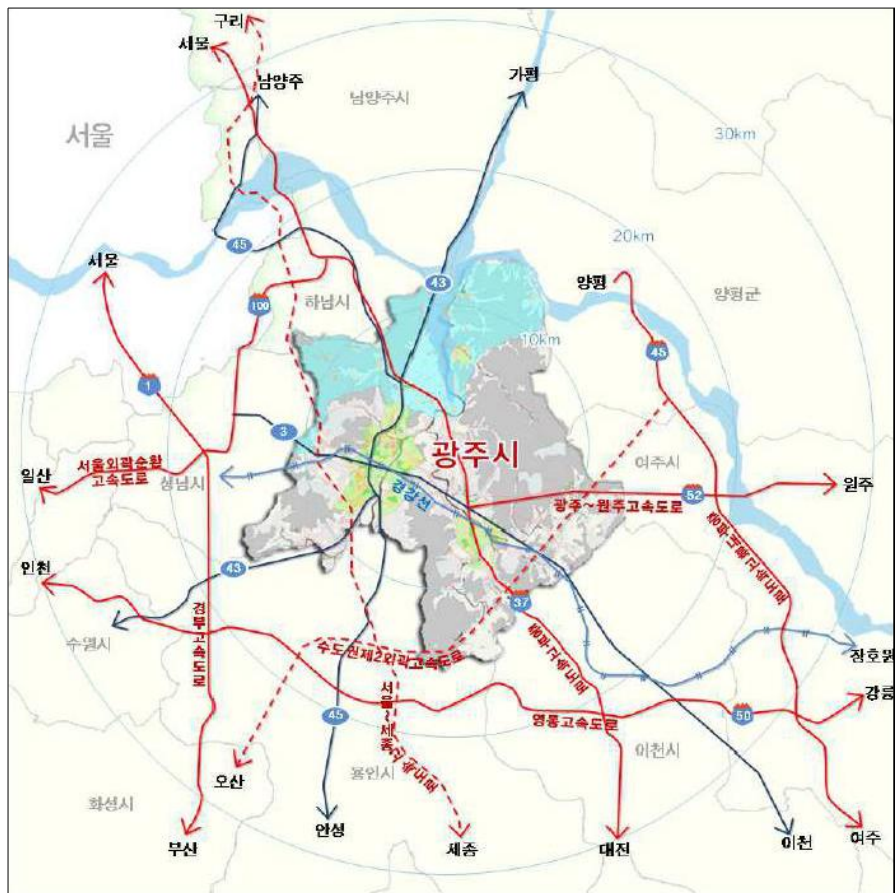
1.2 과업의 목적

- ◆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 주도형 문화정책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화예술 행사·축제 통합운영 및 문화시설 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내용 적정성 검토 용역의 수행이 필요함
- ◆ 이에 본 용역은 문화재단의 사업내용 적정성 및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문화재단 설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기본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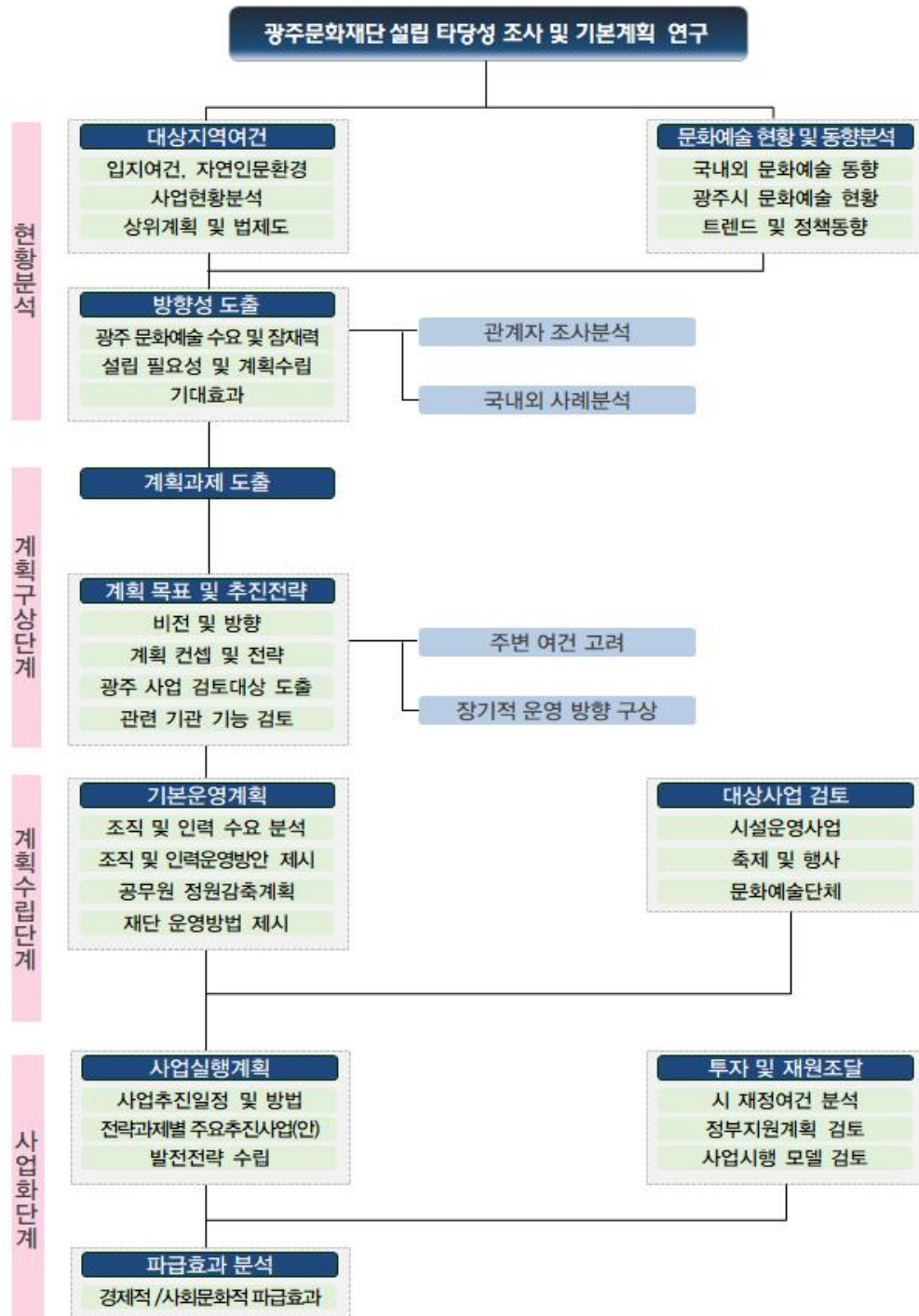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	위 치	광주시 관내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20년
내용적 범위	• 광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및 방향성 기초조사·분석 • 광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종합검토 • 광주문화재단 비전과 방향 연구 • 광주문화재단 설립 기본운영계획 제시 - 이관업무 및 시설, 역할 조직, 인력, 운영방법 등	

위 치



3. 과업 추진 체계

- ♦ 과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의 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통합성을 제고하여 계획 수립



[그림 1] 과업 추진 체계

Ⅱ

사업여건 분석

1. 광주시 일반현황
2. 문화재단의 이해
3. 문화예술여건 분석

1. 광주시 일반현황

1.1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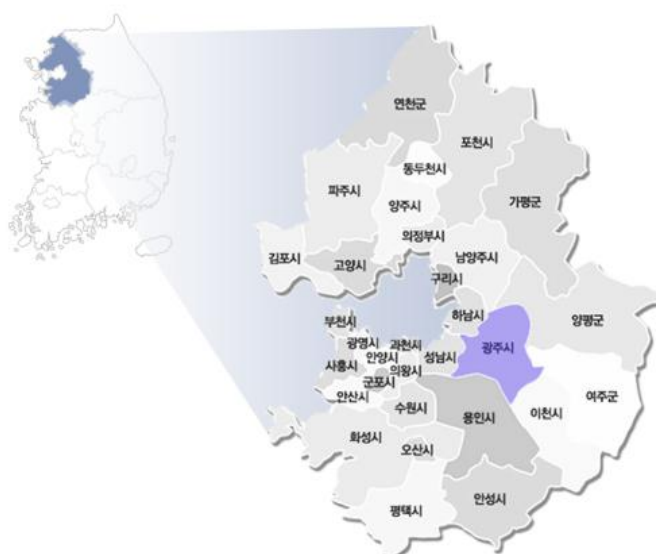
- ◆ 광주시는 서울시 동남쪽에 있으며 경기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 ◆ 면적은 430.96km²에 이르며, 동쪽으로 여주군, 이천시, 서쪽으로 성남시, 남쪽으로 용인시,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남양주, 양평군, 하남시와 접하고 있음
- ◆ 광주시청을 중심으로 주요지역간의 거리는 서울 약 45km, 대전 약 140km, 대구 약 262km, 부산 약 36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 광주시 내외부로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지나고 있으며, 철도역으로는 경강선의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서측으로 신분당선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함

-서울과의 접근성 : 자가용 및 고속버스 약 55분, 대중교통 약 1시간 40분 소요

[표 1] 광주시 위치

구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동단	곤지암읍 유사리	동경 127도 26	동서간 27.88km
서단	오포읍 신현리	동경 127도 08	
남단	도척면 방도리	북위 37도 15	남북간 30.26km
북단	남종면 검천리	북위 37도 33	

자료 : 광주시 통계연보(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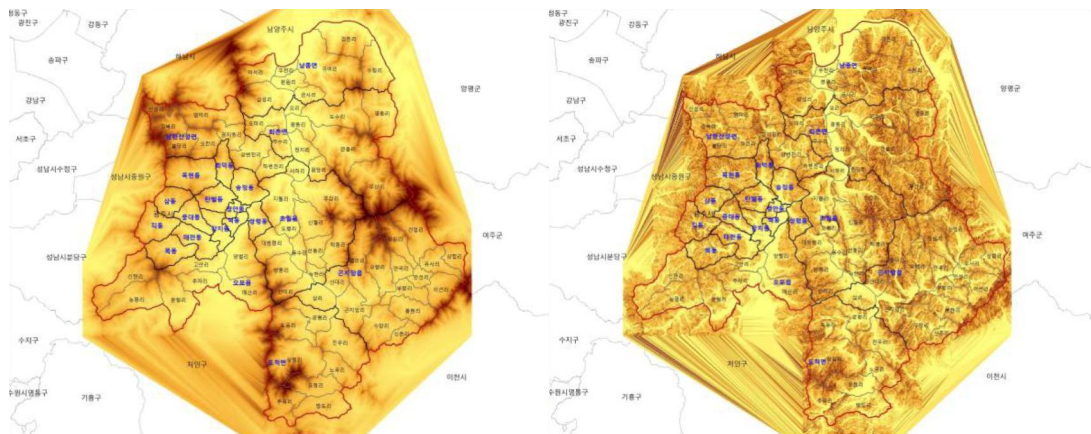


[그림 2] 광주시 위치도

1.2 자연환경

가. 지형 및 지세

- ◆ 동부의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빗살같이 뻗은 여러 산줄기 가운데 하나인 광주산맥의 영향권에 있으며, 산악으로 둘러싸인 계곡형 지형을 나타내고 있음
- ◆ 남한산을 중심으로 한 광주산맥은 구릉이 많아 기복이 매우 심하고, 평지가 적어 경지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22%에 불과함
- ◆ 또한 산지의 경사가 심하여, 지형 발달 과정에서 풍화와 침식이 활발하고 퇴적은 일부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좁게 발달됨
- ◆ 산지가 많은 지형의 특성상 주로 밭농사를 지으며,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서울의 근교 농업지로 토마토, 오이, 상추, 치커리, 버섯류 등의 채소가 특화작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쌀농사는 주로 한강과 경안천 유역의 서부 평양지대에서 주로 지음



[그림 3] 광주시 표고 및 경사 분석도

자료 :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나. 기상

- ◆ 광주시는 여름은 고온다우, 겨울은 다설지역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기온은 12.9℃임
- ◆ 광주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023.4mm이고, 5월과 7월의 강수량은 약 474.1mm로 연중 강수량의 약 20.0%를 차지함

[표 2] 광주시 기상개황

구 분	기온(℃)			강수량 (mm)	상대 습도 (%)	일조 시간	최대 적설 (cm)	평균 풍속 (m/s)
	평균	최고	최저					
2012	12.1	17.2	7.7	1,748.3	69	2,291.6	10.5	1.8
2013	12.3	17.5	7.8	1,240.1	72	2,310.2	7.8	1.7
2014	13.1	18.6	8.5	1,029.1	68	2,372.7	5.5	2.1
2015	13.5	19.0	8.8	751.1	68	2,450.3	8.2	1.8
2016	13.6	19.1	9.0	1,023.4	68	2,367.2	3.7	1.8
1월	-2.1	2.6	-6.3	4.6	59	183.7	3.7	1.7
2월	0.9	6.1	-4.2	52.6	59	192.3	1.8	1.9
3월	7.0	13.4	1.8	54.8	58	241.0	0.0	1.7
4월	13.9	21.3	8.5	79.2	64	206.8	0.0	1.8
5월	19.1	25.9	13.1	156.4	65	272.8	0.0	2.0
6월	23.2	28.9	18.8	37.4	73	235.6	0.0	1.9
7월	26.0	30.2	22.9	317.7	83	146.8	0.0	1.8
8월	27.7	32.8	24.0	73.0	73	230.9	0.0	1.8
9월	22.7	27.6	18.9	67.8	75	163.2	0.0	1.7
10월	15.7	21.2	11.1	99.1	72	168.5	0.0	1.7
11월	7.0	12.3	2.2	17.4	64	166.5	0.0	1.7
12월	1.7	6.9	-2.9	63.4	67	159.1	1.3	1.6

자료 : 광주시 통계연보(2017)

1.3 인문환경

가. 행정구역

- ◆ 광주시의 전체 면적은 431.02km², 광주시 행정구역은 3개 읍, 4개 면, 3개 동으로 구성됨
- ◆ 광주시 읍면동별 면적은 곤지암읍이 76.18km²로 가장 넓고, 경안동이 6.54km²로 가장 작음

[표 3] 광주시 행정구역 현황

구 분	면적(km ²)	구성비(%)
광주시전체	431.02	100.0
오 포 읍	46.93	10.9
초 월 읍	55.90	13.0
곤지암읍	76.18	17.7
도 척 면	52.15	12.1
퇴 촌 면	60.71	14.1
남 중 면	48.57	11.3
남한산성면	33.74	7.8
경 안 동	6.54	1.5
송 정 동	21.87	5.1
광 남 동	28.43	6.6



자료 : 광주시 통계연보(2017)

나. 인구 및 세대

■ 인구 및 세대 추이

- ◆ 최근 5년간 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5.6% 수준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기준 인구는 374,709명, 세대수는 148,745세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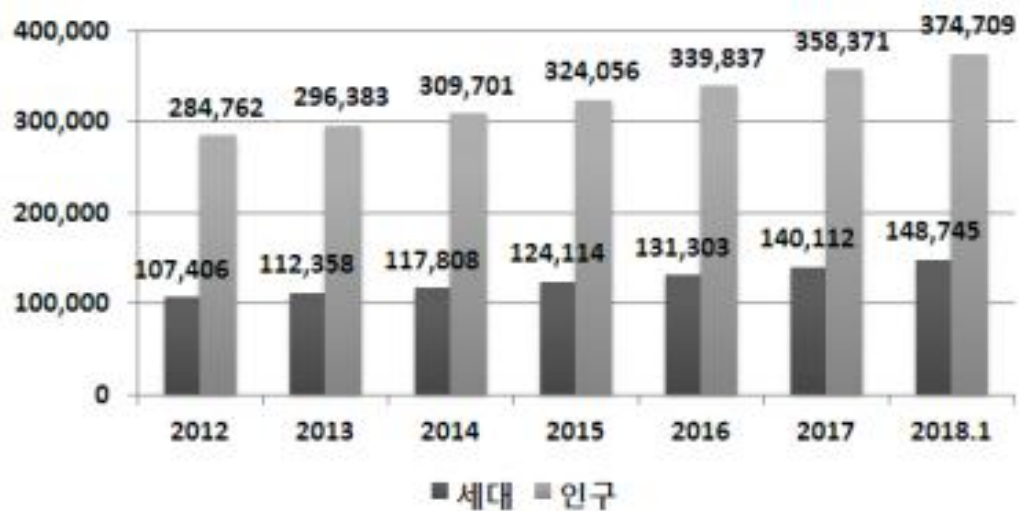
[표 4] 최근 5년간 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연도	세대	인구			인구 증가율 (%)	세대당 인구	인구 밀도	면적 (km ²)
		계	남	여				
2012	107,406	284,762	147,928	136,834	3.6%	2.65	660.7	430.99
2013	112,358	296,383	154,163	142,220	4.6%	2.64	687.7	431.00
2014	117,808	309,701	161,317	148,384	4.9%	2.63	718.6	431.00
2015	124,114	324,056	168,514	155,542	5.4%	2.61	751.8	431.05
2016	131,303	339,837	176,698	163,139	5.8%	2.59	788.4	431.02
2017	140,112	358,371	186,114	172,257	6.7%	2.56	831.4	431.02
2018.10	148,745	374,709	194,341	180,368	6.2%	2.52	869.4	431.02

주 : 외국인 세대수 제외

자료 : 광주시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년 10월 기준)

[그림 4] 연차별 인구 및 세대 추이



■ 행정구역별 인구

- ◆ 행정구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오폐읍 102,288명(28.3%), 광남동 61,269명(16.9%), 송정동 60,111명(16.6%) 순으로 분포함
- ◆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높은 행정구역은 광남동(24.4%), 경안동(8.3%), 오폐읍(5.1%) 순이었으며, 전년대비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행정구역은 남종면(-3.2%)으로 나타남

[표 5] 행정구역별 인구

구 분	인구		세대	전년 인구	전년대비 인구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계(명)	비율				
합 계	361,930	100.0%	148,745	340,616	21,314	6.3%
오폐읍	102,288	28.3%	42,258	97,284	5,004	5.1%
초월읍	43,153	11.9%	17,456	42,852	301	0.7%
곤지암읍	23,004	6.4%	10,636	23,316	-312	-1.3%
도척면	9,169	2.5%	4,448	9,098	71	0.8%
퇴촌면	14,208	3.9%	6,407	13,952	256	1.8%
남종면	1,555	0.4%	787	1,606	-51	-3.2%
남한산성면	2,869	0.8%	1,286	2,938	-69	-2.3%
경안동	44,304	12.2%	17,987	40,904	3,400	8.3%
송정동	60,111	16.6%	24,175	59,413	698	1.2%
광남동	61,269	16.9%	23,305	49,253	12,016	24.4%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광주시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년 10월 기준)

■ 연령별 인구

- ◆ 광주시의 연령별 인구는 40대 62,515명(17.3%), 30대 60,564명(16.7%), 50대 58,958명(1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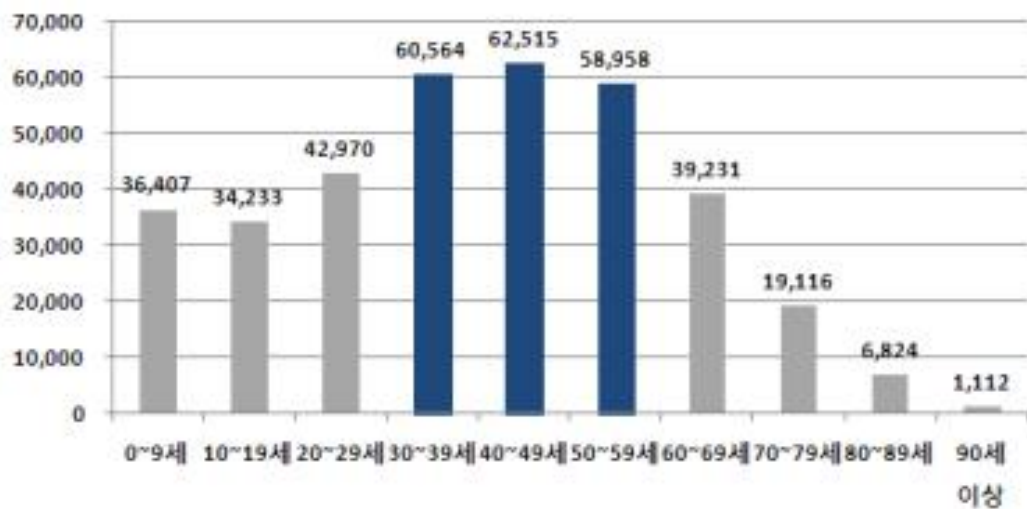
[표 6] 연령별 인구

구 분	인구수(명)	구성비
0~9세	36,407	10.1%
10~19세	34,233	9.5%
20~29세	42,970	11.9%
30~39세	60,564	16.7%
40~49세	62,515	17.3%
50~59세	58,958	16.3%
60~69세	39,231	10.8%
70~79세	19,116	5.3%
80~89세	6,824	1.9%
90세 이상	1,112	0.3%
계	361,930	100.0%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광주시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년 10월 기준)

[그림 5] 연령별 인구 현황



다. 산업구조

■ 연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 광주시의 사업체 수는 25,603개, 종사자수 129,669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표 7] 연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남	여
2012	20,578	102,688	67,163	35,525
2013	21,595	105,681	68,365	37,316
2014	23,142	115,876	74,944	40,932
2015	24,362	121,582	77,985	43,597
2016	25,603	129,669	82,824	46,845

자료 : 광주시 통계연보(2017)

[그림 6] 연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광주시 산업구조

- ◆ 광주시 사업체 수는 1차 산업 19개(0.1%), 2차 산업 7,378개(28.8%), 3차 산업 18,206개(71.1%)로 3차 산업 비중이 높음
- ◆ 광주시 종사자 수는 1차 산업 152명(0.1%), 2차 산업 55,127명(42.5%), 3차 산업 74,390명(57.4%)로 3차 산업 종사자가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남

[표 8] 광주시 산업구조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남	여
합 계	25,603	129,669	82,824	46,845
농업,임업 및 어업	19	152	103	49
광 업	4	41	40	1
제조업	6,388	47,615	36,221	11,39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250	204	46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6	403	359	44
건설업	935	6,818	5,876	942
도·소매업	5,748	22,575	14,007	8,568
운수업	3,120	9,648	7,994	1,654
숙박 및 음식점업	3,351	10,248	3,791	6,45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2	402	287	115
금융 및 보험업	88	1,214	522	69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5	2,629	1,739	890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379	1,986	1,352	6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1	1,059	707	35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9	2,458	1,646	812
교육서비스업	757	6,552	2,198	4,35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30	7,672	1,319	6,35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1	2,612	1,204	1,408
협회 및 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2,105	5,335	3,255	2,080

자료 : 광주시 통계연보(2017)

2. 지역문화재단의 이해

2.1 문화재단의 개요

가. 문화재단의 개념

- ◆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문화전문기관임

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배경

- ◆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분권(devolution)과 분산(decentr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문화예술영역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위원회’ 구성 또는 ‘재단’ 설립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체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해졌으며,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활발해짐
- ◆ 과거 광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2항에 의해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나, 기초 문화재단은 법적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음
 -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2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 2014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 이후 법 제19조1항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근거가 통합됨
 -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의무화와 새 정부의 지역분권 정책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2.2 문화재단의 유형

- ◆ 문화예술사업의 주체의 종류는 크게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및 지자체, 임의단체, 예술가 개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문화재단은 비영리 법인의 재단법인에 해당함

[그림 7] 문화예술사업 주체 형태



자료 : 한선미(2010), 「지역문화재단 역할정립을 통한 전북지역 문화재단 발전방향 연구」

- ◆ 문화재단은 설립주체에 따라 기업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특별법 문화재단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고자 하는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에 해당함

[표 9] 문화재단의 유형 분류

구 분	기업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특별법문화재단
설립주체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특징	기금을 제공하는 기업과 법률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짐	특정지역의 문화, 예술 등 기타 자선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적 재단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지원재단
기금의 조성	기업의 증여와 정기적인 기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며 일반기부자들의 기부금을 받기도 함	정부지원, 문예진흥 기금 등의 확보
의사결정	기업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	지역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결정	조직체계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금 사용방법	기업의 영업활동분야 영업지역에서 사업	지역의 자선단체만 사용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
대표 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금호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연강재단, 일민문화재단, 호암재단, LG연암문화재단 등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자료 : 윤선미(2003), 「한국의 문화재단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 또는 일부 기부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기금에서 얻어지는 이자 등의 수익으로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고 재단 자체의 기획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임

2.3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

- ◆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음

[표 10]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

구 분	내 용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① 제1항제1호에 다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문화예술여건 분석

3.1 경기도 문화예술여건

■ 인구대비 문화예산

- ◆ 2018년 광주시의 문화예산은 7,432백만원, 1인당 문화예산은 19.9천원으로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인구대비 문화예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광주시의 문화예술예산은 24위,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31위
- ◆ 문화재단 설립 현황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음

[표 11] 경기도 시·군 인구대비 문화예산

구 분	인 구	2018년 예산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문화 재단 설립
		일반회계 (백만원)	문화예술 예산 (백만원)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천원/명)	예산대비 문화예산 비율(%)			
경기도	13,425,758	26,108,971	674,371	50.2	2.58	59.8	60.5	○
수원시	1,242,733	2,025,557	72,233	58.1	3.57	55.7	65.9	○
고양시	1,055,531	1,299,724	34,354	32.5	2.64	48.9	64.4	○
용인시	1,044,854	1,865,532	43,972	42.1	2.36	62.1	73.0	○
성남시	974,841	2,052,577	72,247	74.1	3.52	63.5	75.9	○
부천시	870,978	1,276,843	49,994	57.4	3.92	40.4	62.5	○
화성시	780,162	1,769,326	70,376	90.2	3.98	64.2	77.4	○
안산시	716,309	1,352,740	34,108	47.6	2.52	57.8	71.3	○
남양주시	688,314	1,136,596	21,605	31.4	1.90	34.2	60.6	—
안양시	587,809	1,038,824	32,027	54.5	3.08	49.2	70.4	○
평택시	514,439	1,165,360	16,249	31.6	1.39	49.0	67.9	—
시흥시	474,769	850,767	9,582	20.2	1.13	50.5	69.9	—
파주시	459,669	862,022	17,297	37.6	2.01	43.6	63.0	—
의정부시	449,006	759,070	22,728	50.6	2.99	30.7	58.3	○
김포시	434,442	707,917	19,835	45.7	2.80	46.1	63.7	○
광주시	373,228	700,547	7,432	19.9	1.06	48.5	66.7	—
광명시	335,328	614,321	13,730	40.9	2.23	44.7	67.9	○
군포시	284,518	498,955	25,535	89.7	5.12	45.3	68.2	○
하남시	247,792	429,241	11,717	47.3	2.73	53.6	66.4	○
오산시	228,277	466,597	12,880	56.4	2.76	46.2	68.7	○
이천시	222,246	679,836	12,774	57.5	1.88	52.9	72.3	—
양주시	222,101	558,426	7,074	31.9	1.27	35.3	67.5	—
구리시	203,537	358,363	7,557	37.1	2.11	38.9	67.3	—
안성시	194,887	592,751	13,491	69.2	2.28	34.0	67.3	—
포천시	164,487	486,425	6,166	37.5	1.27	27.3	65.5	—
의왕시	154,797	337,391	6,682	43.2	1.98	51.5	73.0	—
양평군	117,724	447,271	3,213	27.3	0.72	24.3	70.3	—
여주시	115,205	514,272	10,213	88.7	1.99	34.6	69.4	○
동두천시	99,935	354,091	4,600	46.0	1.30	29.3	66.2	—
가평군	64,222	355,754	3,709	57.8	1.04	25.7	70.3	—
과천시	57,869	229,615	7,668	132.5	3.34	48.3	85.2	—
연천군	45,749	322,260	3,323	72.6	1.03	21.0	68.2	—

자료 : 1.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18), 2018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

2.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인구대비 문화시설

- ◆ 광주시의 문화기반시설 수는 15개소,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4.02개소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15위 수준으로 나타남

[표 12] 경기도 시·군 인구대비 문화시설

구 분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 수	인 구	문화시설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경기도	3.92	13,425,758	526	250	140	54	42	31	9
과천시	20.74	57,869	12	3	4	3	1	1	—
여주시	19.96	115,205	23	3	15	3	1	1	—
양평군	16.14	117,724	19	6	8	3	1	1	—
가평군	15.57	64,222	10	4	—	4	1	1	—
연천군	10.93	45,749	5	2	1	—	1	1	—
포천시	8.51	164,487	14	7	5	—	1	1	—
파주시	7.83	459,669	36	14	13	5	3	1	—
동두천시	6.00	99,935	6	2	2	—	1	1	—
양주시	5.85	222,101	13	7	2	2	1	1	—
안성시	5.64	194,887	11	5	3	1	1	1	—
이천시	5.40	222,246	12	4	4	2	1	1	—
오산시	5.26	228,277	12	6	2	2	1	1	—
의왕시	5.17	154,797	8	3	2	1	—	1	1
용인시	4.02	1,044,854	42	17	16	5	3	1	—
광주시	4.02	373,228	15	6	5	2	1	1	—
남양주시	3.92	688,314	27	12	11	2	—	1	1
안산시	3.77	716,309	27	14	5	6	1	1	—
고양시	3.32	1,055,531	35	17	10	3	3	1	1
화성시	3.08	780,162	24	13	4	1	3	1	2
부천시	2.99	870,978	26	14	9	—	2	1	—
광명시	2.98	335,328	10	5	1	—	1	1	2
수원시	2.98	1,242,733	37	24	7	2	3	1	—
시흥시	2.95	474,769	14	11	1	1	—	1	—
구리시	2.95	203,537	6	3	1	—	1	1	—
군포시	2.81	284,518	8	6	—	—	1	1	—
안양시	2.72	587,809	16	10	3	—	2	1	—
김포시	2.53	434,442	11	4	3	2	1	1	—
평택시	2.53	514,439	13	9	—	—	3	1	—
하남시	2.42	247,792	6	3	1	—	1	1	—
성남시	2.26	974,841	22	12	2	4	1	1	2
의정부시	1.34	449,006	6	4	—	—	1	1	—

자료 : 1. 경기통계(2018년 9월말 기준), 경기도 시군별 인구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3.2 광주시 문화예술여건

가.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의 개념 및 종류

- ◆ 문화시설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됨

[표 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구 분		내 용	비 고
공연시설	공연장	● 종합공연장 : 1천석 이상 ● 일반공연장 : 1천석 미만 300석 이상 ● 소공연장 : 300석 미만	공연법
	영화상영관	영화상영관, 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야외음악당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 공연장 외 시설	—
전시시설	박물관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술관	박물관 중에서 특히 미술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시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연구·학습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도서관법
	문고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의집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복지회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집회·강연·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기본법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국악원	전통국악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 교육·전수하는 시설	—
종합시설		시설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2항 별표1(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 ◆ 광주시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22개소로 공연시설 3개소, 전시시설 7개소, 도서관 6개소, 지역 문화복지시설 5개소, 문화보급전수시설 1개소가 있음

[표 14] 광주시 문화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설립연도	위치
합 계		22개소	—	—	—
공연시설	공연장 ¹⁾ (3개소)	광주문화예술회관(광주문화원)	공공	1991	경안동 157-26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남한산성 아트홀	공공	2011	송정동 340-1
		청석에듀시어터	민간	2014	쌍령동 15-8
전시시설	박물관 (5개소)	경기도자박물관	공립	2001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만해기념관	사립	1981	남한산성면 산성리 912-1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사립	2003	퇴촌면 원당리 65
		사람박물관 얼굴	사립	2004	남종면 분원리 68
		폴질공예박물관	사립	2006	오포읍 신현리 331-5
	미술관 (2개소)	닷미술관	사립	2010	초월읍 대쌍령리 447-32
		영은미술관	사립	2001	쌍령동 8-1
도서관	도서관 (6개소)	경기도립광주도서관	교육청	1990	경안동 47-1
		곤지암도서관	지자체	2010	곤지암읍 곤지암리 460-3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지자체	2007	경안동 161-24
		능평도서관	지자체	2016	오포읍 능평리 318-4
		오포도서관	지자체	2010	오포읍 고산리 253-3
		초월도서관	지자체	2013	초월읍 대쌍령리 253-15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체육센터 (2개소)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공공	2011	송정동 340-1
		광주시여성문화센터	공공		송정동 120-8
	청소년 활동시설 (3개소)	청소년수련관(1개소)	시립(1개소)		
		청소년야영장(2개소)	도립(1개소,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민간(1개소)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1개소)	광주문화원	공공	1987	경안동 157-26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 통계청(2017),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

1) 등록공연장 : 공연법 제9조에 의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1) 광주문예회관

- ◆ 1991년 개관한 광주문예회관은 문화원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는 노후한 시설과 협소한 공간 규모로 공연 활동의 수요가 적음

[표 15] 광주문예회관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광주시 경안동 157-26
개관일	1991년 8월 30일
규모	부지 2,211㎡, 연면적 1,463㎡(지하 1층, 지상 3층)
운영주체	광주시

■ 시설 현황

- ◆ 주요시설 : 전시실(612㎡), 세미나실(135㎡), 자료실(18㎡)

[표 16] 광주문예회관 시설 현황

구 분	면적(㎡)	수용인원	비 고
소공연장	201	146석	
전시실	234	—	
회의실	162	—	
사무실	122	—	
기타	843	—	

■ 운영 현황

- ◆ 광주시가 직영 운영하며, 운영 인력은 1인임

[표 17] 광주문예회관 운영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	주요 업무
실무직	1	광주문예회관 관리

- ◆ 2018년 광주문예회관 운영예산은 48,800천원이며 전체 시비로 운영됨

[표 18] 광주문예회관 운영예산

사 업 명	2018년(천원)	2017년(천원)	증 감
광주문예회관 운영비	48,800	48,800	—

자료 : 광주시청 홈페이지(2017.12), 2018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2) 남한산성 아트홀(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공연장)

- ◆ 오페라, 뮤지컬,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과 시민대상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내에 위치해 통합 운영됨

[표 19] 남한산성 아트홀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광주시 송정동 340-1
개관일	2011년 9월 28일
규모	부지 30,327㎡, 연면적 26,925㎡(지하 2층~지상 4층)
특징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와 통합 운영
운영주체	광주도시관리공사

■ 시설 현황

- ◆ 주요시설 : 대공연장(1,755㎡), 소공연장(390㎡), 전시장(397㎡)

[표 20] 남한산성 아트홀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면적(㎡)	수용인원	비 고
남한산성 아트홀 (문화동)	대공연장	1,755	1,068석	1층 748, 2층 308 장애인 12석 포함
	소공연장	390	270석	장애인 4석 포함
	전시장(2개소)	397	—	
체육동	수영장	975.7	—	
	헬스장	287.8	—	
	G·X룸	149.5	—	
	다목적 체육관	1,001	—	



[그림 8] 남한산성 아트홀 주요시설

■ 운영 현황

- ◆ 남한산성 아트홀은 문화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며, 영·유아 및 성인 대상 정규강좌, 기획 및 대관 공연, 전시, 축제 및 행사 등이 있음
- ◆ 외부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으며, 나머지 7개 사업은 남한산성 아트홀이 직접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가입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타 지역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가입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태임

[표 21] 남한산성 아트홀 운영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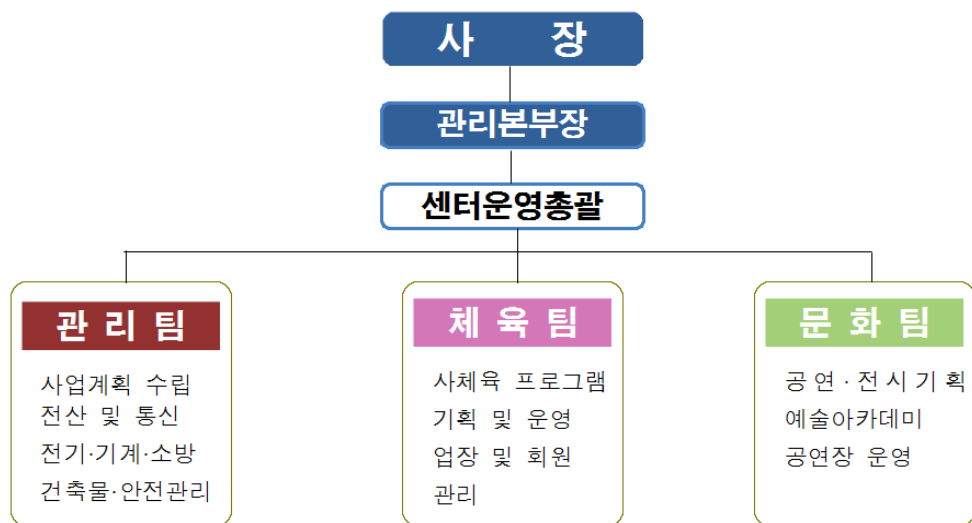
구 분	사업명	운영 횟수	사업비 (천원)	비 고
정규강좌	예술아카데미(영·유아)	131회	—	
	예술아카데미(성인)	77회	—	
공연 및 전시	기획공연	102회	—	
	대관공연	77회	—	
	기타	70회	—	
외부 지원사업	2017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3회	80,000	경기문화재단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립단체 우수공연	1회	50,400	한국문화예술 회관 연합회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단체 우수공연	3회	55,575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 기획프로그램	1회	38,000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5회	29,000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시 기획프로그램	1회	18,0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회	30,000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1회	9,660	

- ◆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 조직은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리본부 산하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전체 운영 인력 중 문화팀이 남한산성 아트홀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22]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	주요 업무
합 계		35	—
광주도시 관리공사 관리본부	관리본부장	1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관리 총괄
	관리팀	11	기본운영계획 수립 조정,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산 및 통신 등 시설 관리·운영 업무
	문화팀	13	공연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 대관, 무대기술 및 감독 등 문화예술 업무
	체육팀	10	체육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체육시설 대관 등

주 : 현원 기준, 문화팀 3명 채용 진행 중



[그림 9]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조직도

(3)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 ◆ 광주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부설 외국어체험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광주시는 2018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음
(민간위탁 계약 기간 : 2019~2020, 2년간)

[표 23] 청소년수련관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광주시 태전동 7-10
개관일	2014년 7월 4일
규모	부지 6,472㎡, 연면적 9,715㎡(지하 1층~지상 4층)
특징	방과후아카데미 및 특화사업 운영
운영주체	2018년 : 직영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사업소)) 2019년 : 민간위탁



[그림 10] 청소년수련관 전경

■ 시설 현황

- ◆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동아리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됨

[표 24] 청소년수련관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수용인원	비 고
동아리실	댄스연습실(2개소)	18명	
	음악연습실(2개소)	13명	
	동아리실(2개소)	17명	
체육시설	체육관	179명	
	헬스장	20명	
문화시설	공연장	176석	장애인 2석 포함
	광남작은도서관	20명	
	휴(休)카페	60명	청소년 휴식 및 체험공간

■ 운영 현황

- ◆ 광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정규강좌, 지역특화사업, 청소년 축제 및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음

[표 25]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 현황(2017년)

구 분	사업명	운영기간	비 고
정규강좌	청소년강좌(평생교육, 생활체육)	연중 운영	
	성인강좌(평생교육, 생활체육)	연중 운영	
특화사업	남한산성 청소년 영상제	정기(9월)	
	남한산성 청소년 역사캠프	정기(10월)	
	남한산성 바로알기 가족탐방	정기(10월)	
	청소년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정기(11월)	
	경안천 바로알기 프로젝트	정기(10월)	
	가족과 함께 떠나는 광주 왕실도자기 여행	정기(11월)	
축제 및 행사	남한산성 청소년 영상제	정기(9월)	
	청소년종합예술제	정기(6월)	
	청소년연극제	정기(6월)	
	너른고을 청소년 축제	정기(9월)	
기타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기타 단체	연중 운영	
	진로아카데미, 자유학기제 특강, 인성캠프, 방과후아카데미	—	



[그림 11]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 ◆ 현재 민간위탁 인원은 불확실한 상태로 2018년 광주시 직영 운영 시의 운영인력을 검토함
 - 청소년 수련관 운영 인력은 16명으로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외국어체험센터의 경우 별도의 업체에게 민간위탁((주)해럴드)) 방식으로 운영
- ◆ 현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비용은 1,854,025천원(2019년 기준), 외국어체험센터 700,000천원(2018년 기준)으로 총 2,554,025천원임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꿈드림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은 모두 서울장신대학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예산규모는 930,527천원임
- ◆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전문상담 프로그램, 다릿돌 거점공간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사업, 학교 밖 아동지원사업 등이 있음
- ◆ 센터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송정동 120-8) 1층
 - 규모 : 330m²
 - 운영방식 : 민간위탁(서울장신대학교)
 - 운영인력 : 19명(시간제 10명)
 -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태전동 7-10) 광주시청소년수련관 4층
 - 규모 : 154m²
 - 운영방식 : 민간위탁(서울장신대학교)
 - 운영인력 : 5명



[그림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5) 광주문화원

- ◆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향토문화자원 발굴 및 전통문화계승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26] 광주문화원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광주시 경안동 157-26
설립일	1987년 1월 16일(1991년 광주문예회관 건물로 이전)
특징	부설기관으로 2002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음
운영주체	광주문화원(비영리 특별법인)

■ 운영 인력 현황

- ◆ 운영은 자체 법인이 주체로 하며 운영 인력은 3인, 회원은 200명임

[표 27] 광주문화원 운영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	주요 업무
합 계	3	-
광주 문화원	사무국장	1
	문화실장	1
	총무과장	1



[그림 13] 광주문화원 운영조직도

■ 주요 사업 현황

- ◆ 광주문화원의 2018년 운영사업은 시민 대상 전통문화교육, 민속문화사업, 축제 및 행사 등이 있으며, 문화원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357,500천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음

[표 28] 광주문화원 주요 사업 현황(2018년)

구 분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 고
문화예술교육	문화학교 운영	56,000	
	문화유적지 답사	4,000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교육	20,000	
	법국민 전통 예절교육	10,000	
책자 발간	광주문화소식지 발간	9,000	
	제29호 광주문화 발간	8,000	
	제16회 청소년 문화탐방	9,000	
	너른고을 문학동인지 발간	4,000	
	회안 한사회 동인지 발간	3,000	
축제 및 행사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50,000	
	광주시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4,000	
	제4회 광주시 박물관 미술관 공동전시회	10,000	
	제4회 광주시 문화의 날 행사	13,000	
민속문화	전통제례계승사업	50,100	
	덩쿨네(故조송자) 줄타기 복원사업	10,000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15,000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 한마당	15,000	

자료 : 광주시청 홈페이지(2017.12), 2018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나. 문화예술단체 및 유관기관

- ◆ 광주시 문화예술단체는 다음과 같음

[표 29] 광주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법인·단체명	사무실 소재지	설립연도	비 고
광주문화원	경안동 157-26	1987.1.16.	인력 3명, 회원 200명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회	송정동 388-1	2003.4.29.	회원 1,944명
시립예술단 (광지원 농악단)	초월읍 용수리 91-1	2010.7.15.	단원 18명

(1) 광주시립예술단(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 ◆ 광주시 시립예술단은 지역전통문화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창단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광지원농악을 전승하고 있음

[표 30] 광주시립예술단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147번길 42-14
창단일	2010년 7월 15일
조직구성	정원 30명 (총감독 1, 단무장 1, 상임단원 23, 비상임단원 5)
운영주체	광주시 직영
운영비	864,320천원

■ 운영 현황

- ◆ 광주시립예술단의 단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 광주시립예술단 단원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합 계	30	18	—
총감독	1	—	—
단무장	1	1	—
상임단원	23	13	—
비상임단원	5	4	—

- ◆ 2018년 광주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은 864,320천원이며 전체 시비로 충당함

[표 32] 광주시립예술단 운영예산

사 업 명	2018년(천원)	2017년(천원)	증 감
시립예술단 단원 보수 및 운영비	864,320	715,310	149,010천원 ▲

자료 : 광주시청 홈페이지(2017.12), 2018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 ◆ 광주시립예술단의 연도별 공연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3] 광주시립예술단 연도별 공연실적

연 도	공연횟수(회)	수입료(천원)	비 고
합 계	516	385,652	유료공연 297건
2010	14	11,312	유료공연 8건
2011	42	17,500	유료공연 11건
2012	89	45,860	유료공연 38건
2013	79	83,660	유료공연 60건
2014	50	29,070	유료공연 23건
2015	89	81,000	유료공연 61건
2016	71	61,350	유료공연 48건
2017	82	55,900	유료공연 48건



[그림 14] 광주시립예술단 공연 모습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시회

-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시회(이하 광주예총)는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됨

[표 34] 광주예총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광주시 중앙로319번길 10-27 (송정동)
설립일	2003년 4월 29일
조직구성	예총 및 산하단체(9개 지부, 회원수 1,944명)

■ 운영 현황

- ◆ 광주예총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9개 지부가 운영되며, 총 1,944명의 회원이 있음

[표 35] 광주예총 운영 조직 현황

구 분	회 원 수	비 고
연예협회(6개 분과)	225	작곡창작, 연주, 연기, 가수, 무용, 가요강사
음악협회(5개 단체)	261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 오케스트라
연극협회(6개 극단)	408	극단 과발극회, 극단 청석에듀씨어터, 광주시민 극단, 극단 이제, 극단 밀북, 광주시 청소년 극단
무용협회(3개 단체)	538	해달별 예술단, 한가람 예술단, 광주시 청소년 무용단
문인협회(4개 단체)	124	시, 소설, 수필, 낭송
미술협회(5개 분과)	215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공예, 수채화
영화협회(단일 지부)	30	—
국악협회(단일 지부)	98	—
사진협회(단일 지부)	45	—

- ◆ 광주예총의 2018년 운영사업은 지부별 공연 및 전시 행사 운영 등이 있으며, 전체 운영비는 276,664천원으로 시 예산을 지원받음

[표 36] 광주예총 운영 예산 현황(2018년)

구 분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 고
합 계	-	276,664	
광주예총	광주예술 제10호 책자발간	5,000	
	예총 문화예술사업 운영비	22,000	
	제14회 광주예술제	50,000	
	예술인 송년 워크숍	10,000	
음악협회	여성합창단 운영수당	11,832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수당	11,832	
	제19회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6,000	
	제10회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000	
	제4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4,000	
	제8회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4,000	
	제21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6,000	
연극협회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출전	8,000	
	제15회 광주시 창작연극제	6,000	
	남한산성 뮤지컬 제작 및 공연	55,000	
무용협회	제23회 보훈가족과 노인을 위한 조재연 출판	7,000	
	제15회 시민과 함께하는 한범택 춤의 세계	4,000	
연예협회	제3회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정기문화공연	5,000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가요제(경기광주시편)	35,000	
문인협회	광주문학 제21호 발간	4,000	
	어울림 시화전	4,000	
미술협회	제16회 너른고을 미술제	5,000	
국악협회	제15회 효 국악한마당	4,000	
	제15회 어울너을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4,000	

자료 : 광주시청 홈페이지(2017.12), 2018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다. 축제 및 행사

- ◆ 광주시의 지역 축제 및 행사는 2018년 기준 3개의 축제가 있으며, 광주시가 주최하고 각 축제의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형태임

[표 37] 광주시 축제 현황

축제(행사)명	기 간	예 산 (백만원)	방문객수 (만 명)	주요 내용	주최 / 주관
남한산성 문화제	10.12~ 10.14	370	25	• 줄타기 및 농악단 공연 • 남한산성 역사 체험 • 무예 및 문과체험	광주시·경기도 /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4.27~ 5.13	420	136	• 왕실도예 전시 및 판매 • 왕실도예 퍼포먼스 • 도자체험 및 다례 시연	광주시 /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퇴촌토마토축제	6.22~ 6.24	120	25	• 가수 공연 및 음악회 • 토마토 풀장 체험 • 토마토 요리 경연대회	광주시 퇴촌면 / 퇴촌 토마토축제 위원회

주 : 조사 기간은 2018년 1월~12월 기준

라. 문화예술인력

- ◆ 광주시 행정조직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단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광주시 본청 행정조직 6개 국 32개 과 중 '문화관광과'에서 광주시 주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8] 광주시 문화예술 관련 부서별 업무 분장

구 분	부 서	주요 업무
광주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광주시문화상, 문예회관 관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보조사업
	문화재팀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 문화재 유지·보수, 조선백자요지 관리
	문화예술팀	남한산성문화제, 시민의날, 광주예술제 등 축제 업무, 광주시예총 및 광주시립예술단 관련 업무
	관광개발팀	관광인프라사업, 관광개발 및 홍보사업
시립중앙 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도서관 정책 업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관리
	도서관운영팀	도서관 시설 운영 및 관리, 도서 관리, 문화프로그램 총괄, 정규 및 특별강좌 기획 및 운영
청소년 수련관	관리팀	청사시설 관리, 회계 및 예산 관리, 교육문화강좌 운영
	청소년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사회단체 운영지원
	활동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남한산성 청소년 영상제 운영지원, 청소년 기자단 운영

자료 : 광주시청 홈페이지(2018년 11월말 기준, www.gjcity.go.kr)

Ⅲ

관련계획 및 법제도 검토

1. 관련 계획 및 정책
2. 관련 법규

1. 관련 계획 및 정책

1.1 역대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²⁾

- 문화정책의 핵심가치인 ‘예술 창작 활성화’이념은 1980년대부터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국가 중심의 ‘진흥육성’정책이 주를 이루었음
-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문화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하여 문화의 경영 및 협업 중심의 지원사업을 펼쳤으며, 현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을 주요 지원 영역으로 함

[표 39] 역대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구 분	문화정책 목표	주요 지원 영역	Keyword
해방 이후~4공화국 (1945~1980)	• 문화정체성의 확립	•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전통문화
제5·6공화국 (1981~1992)	• 예술창작 역량 제고	• 문화생산 및 창작 • 문화생활기반 조성	문화예술창작
문민정부 (1993~1998.2)	• 한국문화의 국제화	• 문화의 산업화 • 문화의 정보화	문화복지
국민의 정부 (1998.3~2003.2)	• 문화복지 국가 실현	• 문화산업 육성 • 문화관광 육성	문화복지
참여정부 (2003.3~2008.2)	• 창의한국의 구현	• 창의적 문화시민사회 구축 • 자율·참여·분권 기반 조성	문화예술교육
이명박 정부 (2008.3~2013.2)	• 콘텐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콘텐츠 산업 • 문화기술(CT) 개발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 (2013.2~2017.3)	• 문화가 있는 삶과 국민행복	• 문화경영 • 문화협업사업	문화융성
문재인 정부 (2017.5~현재)	•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예술인 권리 확대 •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의 자율성

2)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창출 및 발전방안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

1.2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비전 2030」

■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로 문화기본법의 3대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여 3대 방향과 9대 의제를 제시함
 -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성폭력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함
- ◆ 구체적인 대표과제들은 정책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및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현재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세부 분야별 다양한 진흥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임

[그림 15]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비전 203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2030」

1.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2018)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규정에 의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체계적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문화경쟁력과 가치 제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경기도를 문화예술 창조의 발신지로 조성하고자 함
- ‘문화가 변화시키고, 문화로 꿈꾸고, 문화로 하나 되는 경기’를 비전으로 하여 4개 목표와 10개 세부전략목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
 -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정체계 개편’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초문화재단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며, **기초문화재단은 생활문화활동 지원 조직 중심으로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40]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14~2018) 목표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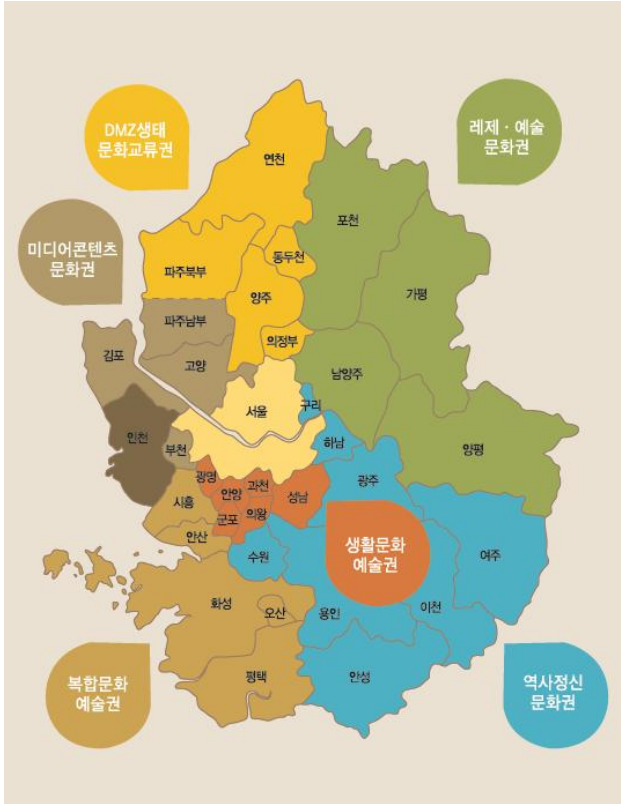
전략목표	세부 전략목표	전략과제(아젠다)
문화의 미래 경기, 미래의 문화 경기	-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 경기천년 이미지 제고 - 한류 문화관광의 메카 조성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정체계 개편 - 경기천년 문화이미지 제고 - 한류 문화관광의 메카 조성
문화로 꿈꾸고, 꿈을 실현하는 경기	- 문화가 있는 삶 활성화 - 문화예술 창작의 발산지 조성	- 문화가 있는 삶 일상화 - 문화예술 창작의 발신지로 전환 - 문화재정 3% 확충
문화가 바꾸는 지역사회와 시민	- 문화환경 조성 및 지역재생 - 시민문화활동의 활성화	- 문화시설의 시민문화활동 거점화 - 문화를 통한 특성화된 지역재생
문화로 하나 되는 경기	- 인문정신문화의 중심지 조성 - 문화격차 해소 - 남북 문화교류 거점 지역 조성	- 인문정신문화와 공동체 가치 제고 - 경기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DMZ에 평화생태 예술창작중심지 조성

■ 경기도 6대 문화권역

- 지역별 발전계획 및 문화인프라 현황을 고려하여 문화권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광주시는 역사정신문화권역에 포함됨
 - 역사정신문화권의 주요사업으로 ① **수원 화성 예술 프로젝트(수원, 광주)**, ② **청년문화허브(수원, 고양)**, ③ **인문정신문화지원센터 건립(수원)**을 제시하고 있음

[표 41] 경기도 6대 문화권역 설정

문화권역	해당 지역
미디어콘텐츠문화권	김포, 고양, 부천, 파주남부 (4개시)
DMZ생태문화교류권	연천군,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북부 (4개시 1개군)
역사정신문화권	구리, 하남, 광주 , 여주, 이천, 용인, 수원, 안성 (8개시)
생활문화예술권	광명, 군포, 의왕, 과천, 성남, 안양 (6개시)
복합문화예술권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5개시)
레저·예술문화권	남양주, 가평, 포천, 양평 (2개시 2개군)



[그림 16] 문화권역별 지도

■ 경기도 7대 문화벨트

- ◆ 특성 있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7개의 문화벨트를 설정하였으며, 광주·경북은 4개 벨트에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임

[표 42] 경기도 7대 문화벨트 설정

문화권역	해당 지역
세계문화유산벨트	수원, 광주, 구리, 남양주, 파주, 고양
전통문화산업관광벨트	이천, 여주, 광주, 용인, 안성
한강 레저·예술벨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남양주
한류·문화콘텐츠벨트	고양, 파주, 부천, 과천, 안양, 성남
인문정신문화벨트	남양주, 광주, 파주, 수원
DMZ 평화·생태·문화벨트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국제문화벨트	안산, 평택, 화성, 시흥, 광명, 고양

1.4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2014~2030)

- 변화하는 광주시의 여건 및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람과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 광주'를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함

[그림 17]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도시미래상



- 문화·체육 부문의 3대 기본방향 및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43] 문화·체육 부문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계획목표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건강한 도시	•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전개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여가 서비스 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 인구규모의 성장에 따른 중생활권 중심의 문화시설 설치 확대
지역주민 삶의 활력이 있는 문화도시	• 지역문화 인프라 확대 및 문예활동 지원체계 구축 •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체육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실천계획

- 공공문화·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서의 문화강좌 실시, 생활권별 스포츠문화센터의 설치, 지역특화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실천계획으로 제시함

1.5 민선 7기 공약

- ◆ 민선 7기 광주의 5대 시정목표는 ① 지방분권 이끄는 자치도시 광주, ② 기업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 ③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광주**, ④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광주, ⑤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로 설정하고 있음
- ◆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 문화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문화예술 도시 조성, 전통문화 중심도시 광주 문화콘텐츠 구축, 광주의 자연과 역사를 살리는 천년고도 역사전통문화벨트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표 44] 문화 관련 추진과제

방침	추진과제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	· 광주 청소년의 끼를 살리는 재능학교 건립 · 청소년들의 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 건립 · 마을별 교육사랑방 진로 순회교육 운영
문화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문화예술 도시 조성	· 재단 등 문화전담조직 신설 · 광주시립 시민예술단 창단운영 · 일상이 문화가 되는 지역축제 개발 · 자매도시 결연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광주산업·관광발전
전통문화 중심도시 광주 문화콘텐츠 구축	· 허난설헌 문화제 · 신익희상 제정 · 최은희 영화제 개최 · 광주시 전통문화
광주의 자연과 역사를 살리는 천년고도 역사전통문화벨트 조성	· 역사문화 탐방 및 관광벨트 조성 · 자연과 문화재를 연계하는 둘레길 조성

2. 관련 법규

2.1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45] 지역문화진흥법

구 분	조 항	내 용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법 제1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법 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법 제22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률 상 문화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표 4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분	조 항	내 용
적용 대상 등	법 제2조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법 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민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법 제5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법 제6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표 계속]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분	조 항	내 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법 제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시행령 제7조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시행령 제8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현황 7.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이 영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

2.3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표 47]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구 분	조 항	내 용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설립허가	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4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표 48] 지방재정법

구 분	조 항	내 용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5 문화예술진흥법

-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표 49] 문화예술진흥법

구 분	조 항	내 용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법 제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설치 등	법 제16조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법 제17조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기부금 관련 법규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할 수 있음

[표 5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구 분	조 항	내 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 ◆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게 될 경우, 기부자는 일정한도 안에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봄

[표 51] 전문예술법인 기부금 세액공제

구 분	기부금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비 고
개인기부자	2,000만원 이하	15%	30%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000만원 초과	30%		
법인기부자	—	손비산정(비용처리)	10%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 경기도 내 문화재단의 대부분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음
 -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광명문화재단(2017년), 여주세종문화재단(2017년)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표 52] 경기도 내 문화재단의 전문예술법인 지정현황

재단명	활동유형	재단명	활동유형
(재)경기문화재단	종합/기타	(재)안산문화재단	공연분야
(재)고양문화재단	공연분야	(재)안양문화예술재단	공연분야
(재)군포문화재단	종합/기타	(재)오산문화재단	종합/기타
(재)김포문화재단	종합/기타	(재)용인문화재단	종합/기타
(재)부천문화재단	공연분야	(재)하남문화재단	공연분야
(재)성남문화재단	종합/기타	(재)화성시문화재단	공연분야
(재)수원문화재단	종합/기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분야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2.7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관련 법규

-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표 53] 청소년활동진흥법

구 분	조 항	내 용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정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령 제2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단체의 정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5-6호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IV

문화재단 현황 및 사례조사

1.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2. 경기도 내 문화재단 사례연구
3. 해외의 지역문화예술기관

1.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 ◆ 2018년 11월 기준 지역문화재단은 총 95개소이며, 광역문화재단 17개소, 기초문화재단 78개소로 이루어져 있음
-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각각 16개소로 가장 많은 지역문화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기초문화재단은 총 15개소가 설립되어 있음

[표 54]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시·도	합 계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구성비(%)
합 계	95	17	78	100
서울특별시	16	1	15	16.8
부산광역시	2	1	1	2.1
대구광역시	7	1	6	7.4
인천광역시	3	1	2	3.2
광주광역시	1	1	0	1.1
대전광역시	2	2	0	2.1
울산광역시	2	1	1	2.1
세종특별자치시	1	1	0	1.1
경기도	16	1	15	16.8
강원도	10	1	9	10.5
충청북도	5	1	4	5.3
충청남도	5	1	4	5.3
전라북도	4	1	3	4.2
전라남도	6	1	5	6.3
경상북도	7	0	7	7.4
경상남도	7	1	6	7.4
제주특별자치도	1	1	0	1.1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 행정안전부(20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자료

[표 55] 시군구별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시·도		문화재단 명칭	개소수
합 계		—	95
광역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17
기초	서울특별시	종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광진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동대문문화재단	15
	부산광역시	금정문화재단	1
	대구광역시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동구문화재단, 행복북구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달서문화재단, 달성문화재단	6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2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재단	1
	경기도	수원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고양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여주세종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15
	강원도	춘천시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횡성문화재단, 영월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홍천문화재단	9
	충청북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주증원문화재단, (재)괴산군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동축제관광재단	4
	충청남도	천안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백제고도문화재단	4
	전라북도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3
	전라남도	목포문화재단,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담양군문화재단, 강진문화관광재단, 영암군문화재단	5
	경상북도	포항문화재단, 경주문화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관광재단, 영양군영양축제관광재단,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7
	경상남도	창원문화재단, 사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재)밀양문화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창문화재단	6

2. 경기도 내 문화재단 사례연구

2.1 일반현황

- ◆ 경기도 내 지역문화재단은 15개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광명, 성남, 하남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각 지자체장이 맡고 있음
 - 설립자본금은 대부분 1천만원이며, 인력은 최소 24명 ~ 최대 166명으로 나타남
 - 예산은 최소 57억원 ~ 최대 317억원임

[표 56] 경기도 내 문화재단 일반 현황

재단명	인구(명)	설립연도	설립자본금	예산 (A)	출연금 (B)	출연금비율 (B/A)
수원문화재단	1,242,733	2011년	-	-	177억원	-
고양문화재단	1,055,531	2004년	1,000만원	200억원	145억원	72%
용인문화재단	1,044,854	2011년	1,000만원	202억원	187억원	93%
성남문화재단	974,841	2004년	1,000만원	285억원	219억원	77%
부천문화재단	870,978	2001년	100만원	74억원	62억원	84%
화성시문화재단	780,162	2009년	1,000만원	317억원	307억원	97%
안산문화재단	716,309	2013년	1,000만원	135억원	91억원	67%
안양문화예술재단	587,809	2009년	1,000만원	156억원	124억원	80%
의정부예술의전당	449,006	2007년	1,000만원	84억원	66억원	79%
김포문화재단	434,442	2015년	1,000만원	71억원	66억원	94%
광명문화재단	335,328	2017년	1,000만원	61억원	52억원	85%
군포문화재단	284,518	2013년	1,000만원	183억원	126억원	69%
하남문화재단	247,792	2012년	1,000만원	86억	-	-
오산문화재단	228,277	2012년	1,000만원	60억원	54억원	90%
여주세종문화재단	115,205	2017년	1,000만원	57억원	57억원	100%

주 1) 예산 및 출연금은 2017년 기준, 출연금은 위탁 및 대행사업 포함
 2) 수원 및 하남 문화재단 현황 중 미가입 부분은 자료 미확보로 인한 공란임

2.2 비전 및 추진방향

- ◆ 각 문화재단은 비전 및 추진방향을 수립함으로써 경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표 57] 경기도 내 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

재단명	구 분	내 용
수원문화재단	비전	다시 찾고 싶은 수원 함께하는 문화예술
	추진방향	생활 속 예술환경 저변확대 / 수원형 전략적 관광 활성화 / 문화예술 소통확산 / 지숙성장을 위한 조직체질 개선
성남문화재단	비전	품격 있는 예술, 참여하는 생활문화
	추진방향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혁신 / 창의적 문화예술 기획으로 예술사업 활성화 / 활력 있는 문화공동체, 살아있는 문화도시
부천문화재단	비전	즐거움 관심, 소통과 공유의 문화
	추진방향	시민생활문화 기반조성 / 소통하는 예술생태계 조성 / 다양성이 가치가 되는 문화환경 구축 / 신뢰받는 문화경영
광명문화재단	비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추진방향	지역문화예술진흥 / 지역문화예술 균형 발전
안산문화재단	비전	시민 문화향유를 최고화하는 문화재단
	추진방향	미래기반 확충 / 문화예술 안산시민 향유제고 / 문화예술 지원 / 운영기반 탄실화
안양문화예술재단	비전	안양시민이 상호 교류하고 삶을 가꾸는 일상 문화예술 플랫폼 구현
	추진방향	안양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다양화 / 생활예술 활성화 및 문화복지 강화 / 안양 도시자산브랜드화를 통한 인지도 개선 / 고객만족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 경영고도화를 통한 전문성·투명성 강화
고양문화재단	비전	104만 시민으로 복직이는 문화예술 플랫폼
	추진방향	시민과 예술을 이어주는 콘텐츠 기획 / 시민이 안전한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 시민 소통에 기반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 / 시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예술 책임경영
오산문화재단	비전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재단
	추진방향	지역문화 소통의 중심 역할 확립 /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중심 운영 / 교육과 연계한 공연·전시 운영 / 적극적인 창의인재 육성 및 발굴 /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향수권 제고
군포문화재단	비전	문화예술의 융복합으로 선진 문화재단 실현
	추진방향	지역문화 진흥 및 시민문화예술 향유 확대 / 청소년 육성 허브 역할 강화 / 지역맞춤문화·교육거점 / 자립도 향상 및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

[표 계속] 경기도 내 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

재단명	구 분	내 용
하남문화재단	비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문화로 하나 되는 하남
	추진방향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 생활 속의 문화 확산 / 순수예술의 대중화 / 문화의 다양성 제고
용인문화재단	비전	문화브랜드 매니저로서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사람들의 용인'을 만든다
	추진방향	문화영역 확장 및 문화공간 인프라 강화 / 공연·전시 브랜드 위상 제고 및 콘텐츠 강화 / 일상 속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확산 / 전문·생활 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김포문화재단	비전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행복한 삶
	추진방향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거점화 / 문화유산 고나광자원화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정체성 /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MICE 활성화
화성시문화재단	비전	문화로 소통하고 나누는 도시 화성
	추진방향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 플랫폼 구축 / 시민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운영 활성화 / 기관경영 개선 홍보역량 강화 / 화성답고 화성스러운 문화 콘텐츠 개발 / 배움으로 도약하고 나눔으로 행복한 시민 육성
의정부예술의전당	비전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창조 도시
	추진방향	가치 경영 / 서비스 경영 / 파트너십 경영

2.3 조직 및 인력현황

- 최근 설립된 광명문화재단과 여주세종문화재단의 경우 인력이 적은 편이며 팀체제로 운영 중임

[표 58] 경기도 내 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 현황

재단명	정원 (명)	현원 (명)	조직	조직 세부현황
수원문화재단	174	166	2국 7부 21팀	• 화성관광국 : 기획경영부, 화성사업부, 관광사업부, 전통사업부 • 문화국 : 문화예술부, 공연부, 책문화부
성남문화재단	134	126	3국 9부	• 경영국 : 총무부, 경영기획부, 홍보미디어부, 안전시설부 • 예술국 : 공연기획부, 무대운영부, 전시기획부 • 문화진흥국 : 문화기획부, 문화사업부
부천문화재단	91	76	3본부 7부 2센터	• 경영본부 : 경영지원부, 문화시설부 • 문화예술본부 : 문화진흥부, 문화도시사업부, 예술교육부, 공연기획부 • 시민문화본부 : 정책홍보부, 생활문화지원센터, 시민미디어센터
광명문화재단	—	35	6팀	• 문화정책팀, 시민화관팀, 문화사업팀, 오리서원팀, 기형도문학관팀, 시설관리TF
안산문화재단	57	54	2본부 6부 1국	• 경영지원본부 : 기획홍보부, 행정지원부, 지역문화부 • 문화사업본부 : 공연기획부, 무대예술부, 전시사업부, 축제사무국
안양문화예술재단	69	62	2본부 1실 9부	• 경영본부 : 기획홍보부, 경영지원부, 시설운영부 • 사업본부 : 공연기획부, 무대운영부, 지역예술부, 축제운영부, 박물관부, 공공예술부
고양문화재단	122	107	1실 6팀	• 감사실, 정책기획팀, 경영지원팀, 안전시설팀, 공연사업팀, 전시교육팀, 시민문화팀
오산문화재단	27	25	4팀	•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팀, 전시팀
군포문화재단	132	127	1실 4본부 19팀	• 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책마을운영본부
하남문화재단	37	38	1관 6팀	• 경영안전팀, 공연기획팀, 시민문화팀, 홍보마케팅팀, 무대기술팀 • 하남역사박물관 : 학예조사팀
용인문화재단	87	80	2본부 1센터 11팀	• 경영본부 :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총무회계팀 • 문화사업본부 : 공연기획팀, 무대예술팀, 문예회관운영팀, 예술단운영팀 • 시민예술교육센터 : 예술교육팀, 시민문화팀, 청덕도서관 운영팀,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팀
김포문화재단	45	44	1국 7팀	• 총무팀, 문화예술진흥팀, 공연사업팀, 아트빌리지팀, 전시기획팀, 관광MICE팀, 문화유산팀
화성시문화재단	167	161	2국 21개팀	• 재단사무국 : 기획홍보팀, 총무팀, 재무회계팀, 동탄센터운영팀, 미디어운영팀, 미디어사업팀 • 문화공연사업국 : 문화사업팀, 축제추진팀, 공연사업팀, 생활문화운영팀, 생활문화사업팀 • 도서관
여주세종문화재단	24	20	3팀	• 문화기획팀, 문화예술팀, 문화사업팀
의정부예술의전당	40	40	2본부 5부 2실	• 경영행정본부 : 행정지원부, 교육전시부 • 문화사업본부 : 공연기획부, 홍보마케팅부, 무대기술부

2.4 사업범위 및 주요사업내용

- ◆ 각 문화재단 조례에 따른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자료 수집·조사, 문화정책개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교류 등을 범위로 하고 있음

[표 59] 경기도 내 문화재단 사업범위

재단명	내 용
수원문화재단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3.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4.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5.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7. 수원 SK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 8.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성남문화재단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2.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4.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5. 성남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6.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부천문화재단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문화재단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시민회관·오리서원·문화의 집·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기형도문화관 및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관리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및 교육연구 7.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8.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9. 관광순환버스 운영 10.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1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계속] 경기도 내 문화재단 사업범위

재단명	내 용
안산문화재단	1. 시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시행 3.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6. 축제기획 및 운영 7.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8.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안양문화예술재단	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안양아트센터·평촌아트홀·안양파빌리온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4.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 5. 김중업건축박물관 운영 및 관리 6.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7.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8.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 9.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 10. 문화예술진흥 및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 한 사업
고양문화재단	1.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7.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오산문화재단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5.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6. 문화예술 관련 교육사업의 지원 7. 오매장터의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운영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군포문화재단	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시 평생학습원, 군포책마을,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교육연구 5. 축제 기획 및 운영 6.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계속] 경기도 내 문화재단 사업범위

재단명	내 용
하남문화재단	1.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박물관 운영 및 관리 3. 공연 및 작품전시활동과 그 보급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 연구 6. 기타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용인문화재단	1. 용인시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시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6. 시민축제 기획 및 운영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수행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김포문화재단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3.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4.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6.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화성시문화재단	1.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업무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3.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6.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7.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8. 노작홍사용문학관 관리 및 운영 9.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 10.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11.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화성시장이 수행하는 사업
여주세종문화재단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7.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8.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 9.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 10.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의정부예술의전당	1. 법인의 운영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2.5 운영시설 현황

- ◆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은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문화센터, 복지회관 등을 포함하는 지역문화복지시설, 전수회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등도 있음

[표 60] 경기도 내 문화재단 운영시설 현황

재단명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기타 시설
수원문화재단	○	○	○	○	○	○
성남문화재단	○	○	○	—	—	—
부천문화재단	○	○	○	○	—	—
광명문화재단	○	○	—	○	—	○
안산문화재단	○	○	—	—	—	—
안양문화예술재단	○	○	—	—	—	—
고양문화재단	○	○	○	○	—	○
오산문화재단	○	○	—	—	—	—
군포문화재단	○	—	—	○	—	○
하남문화재단	○	○	—	—	—	—
용인문화재단	○	○	○	○	○	—
김포문화재단	○	—	—	○	—	○
화성시문화재단	○	○	○	○	—	—
여주세종문화재단	○	○	—	—	—	○
의정부예술의전당	○	○	—	—	—	—

- ◆ 수원문화재단과 용인문화재단은 모든 분야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광명문화재단은 2017년 설립 이전에 기존하던 시설들을 인수 및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 경기도 내 문화재단 운영시설 세부 현황

재단명	수원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공연시설	- 수원SK아트리움 - 수원제1아외음악당 - 수원제2아외음악당	- 성남아트센터 - 성남시 아외공연장	- 북사골문화센터 아트홀 - 오정아트홀 - 대·소공연장 (부천시민회관 내)	대공연장 (광명시민회관 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시설	- 행궁길갤러리 - 한옥기술전시관 - 즐거샘도서관 - 지혜샘도서관 - 바른샘도서관	큐브미술관 (성남아트센터 내)	- 부천시 박물관 (위탁운영) - 도서관 多感 (북사골문화센터 내)	기형도문학관	- 단원미술관 - 화랑전시관
도서관	- 즐거샘도서관 - 지혜샘도서관 - 바른샘도서관	책테마파크	도서관 多感 (북사골문화센터 내)	—	—
지역문화 복지시설	수원호텔	—	- 부천시민회관 - 북사골문화센터	- 광명시민회관 - 하안문화의집 - 광명문화의집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문화보급 전수시설	-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 수원전통문화관 - 화서사랑채	—	—	—	—
기타시설	- 문학인의집 - 예술인의집 - 문화향수의집	—	—	- 광명시민운동장 - 오리서원	- 안산문화광장 - 아프시골

[표 계속] 경기도 내 문화재단 운영시설 세부 현황

재단명	안양문화예술재단	고양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공연시설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아람극장·음악당 ●어울림누리극장	●오산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안양파빌리온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아람미술관 ●어울림미술관 ●고양어린이박물관 (위탁운영)	●오산시립미술관	—	●하남역사박물관
도서시설	—	●아람누리도서관	—	—	—
지역문화 복지시설	—	●아람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청소년 문화의집 ●군포시평생학습원	—
문화보급전수시설	—	—	—	—	—
기타시설	—	●고양관광안내센터 (위탁운영)	—	●군포책마을	—
재단명	용인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화성시 문화재단	여주세종 문화재단	의정부 예술의전당
공연시설	●용인포은아트홀 ●큰·작은어울마당 (여성회관 內) ●마루홀(문화예술원) ●처인홀(문예회관) ●죽전야외음악당	●김포아트홀 ●통진두레문화센터	●동탄북합문화센터 아트홀	●세종국악당 ●시민회관 ●신흥사 야외공연장 ●명성황후 생가문예관	●예술의전당 공연장
전시시설	●용인포은아트갤러리	—	●동탄아트스페이스 (북합문화센터 內)	●명성황후 기념관	●예술의전당 전시장
도서시설	●용인책마을도서관 ●청덕도서관	—	●시립도서관 12개소	—	—
지역문화 복지시설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월곡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	—
문화보급전수시설	—	—	—	—	—
기타시설	—	●김포아트빌리지 ●김포국제조각공원	—	●명성황후 생가	—

2.6 축제 운영 현황

- ◆ 축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례가 가장 많음
- ◆ 문화재단이 주최와 주관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거리행사부터 국제행사까지 규모가 다양함

[표 62] 경기도 내 문화재단 축제 운영 현황

재단명	수원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주최 축제	—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	●광명생활문화축제	—
주관 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연극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수원국제음악제 ●수원문화재야행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	—	—	●안산국제마당축제
주최·주관 축제	—	—	●어린이축제 ‘부천어린이세상’	●광명인형극제	●여름이오페스티벌
재단명	안양문화 예술재단	고양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주최 축제	●스마일맘페스티벌	—	—	—	—
주관 축제	●안양시민축제 ●안양충훈 벚꽃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행주문화제	●독산성문화제	●군포철쭉축제 ●평생학습축제 ●청소년진로박람회	—
주최·주관 축제	—	—	●오산천두바퀴축제	●군포생활문화제	●이성산성문화축제 ●하남부침개막걸리 페스티벌
재단명	용인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화성시 문화재단	여주시종 문화재단	의정부 예술의전당
주최 축제	—	—	●품앗이공연예술축 제	—	●천상병예술제
주관 축제	—	—	●화성뱃놀이축제 ●정조 효문화제 ●봄사랑 가족축제 ●매향리 평화소풍 ●화성가족사랑축제 ●동탄예술시장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세종대왕문화제	—
주최·주관 축제	●용인거리축제	—	●파크페스티벌 ●병점로드페스티벌	●명성황후송모제	●의정부음악극축제 ●국제기아급축제 ●한여름방의 힐링U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지역축제 개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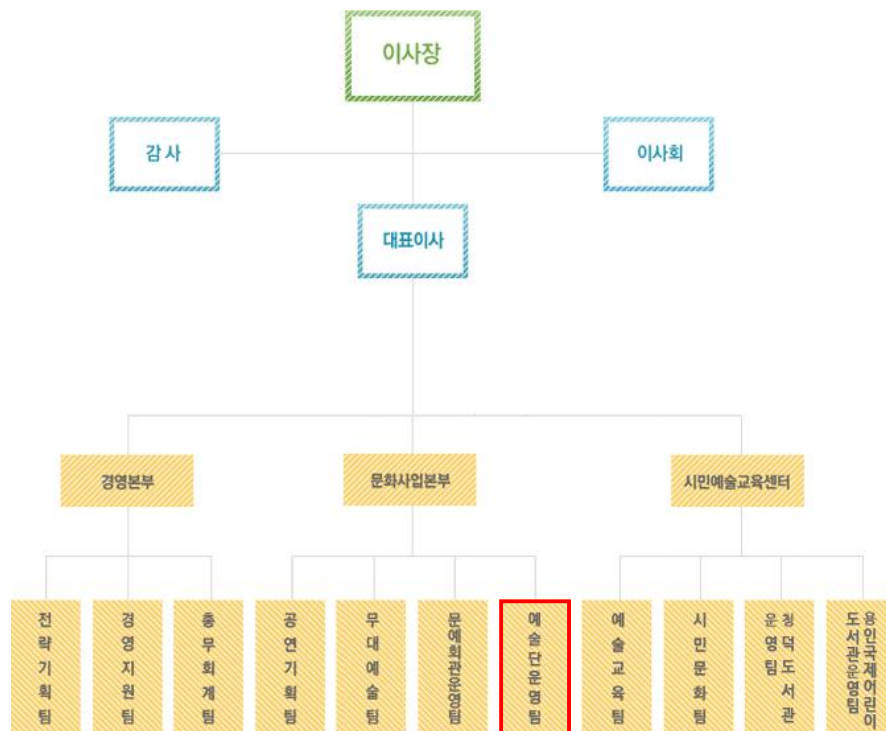
2.7 단체 운영 현황

- ◆ 경기도 내 문화재단 중 시립예술단의 소속을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용인문화재단이 유일하며, 수원문화재단은 예술단의 운영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있음
- ◆ 용인문화재단은 2011년 설립 이후, 2016년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을 인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관 후 용인시립합창단을 창단함
 - 용인시는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연활동 공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으로의 이관을 추진함
 - 시 직속 기관인 시립예술단의 운영 주체를 문화재단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단원들의 강한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적이 있으며, 충분한 기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실현된 사례임

[표 63] 용인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구 분	구 성	창단시기	비 고
용인시립합창단	지휘자 1명, 상임단원 5명, 단원 78명	2017년	문화재단 설립 이후
용인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 1명, 단원 51명	2004년	-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상임단원 1명, 단원 56명	2001년	-

- ◆ 용인문화재단은 2본부 1센터 11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시립예술단 운영 업무를 위한 예술단 운영팀(4인)을 갖추고 있음



[그림 18] 용인문화재단 조직도

- ◆ 수원의 경우, 수원시립예술단의 소속은 시 직영 소속이지만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수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음
- ◆ 수원문화재단의 수원화성문화제팀에서 수원시립공연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19] 수원문화재단 조직도

3. 해외의 지역문화예술기관

3.1 영국

- ◆ 영국의 문화재단은 유럽과 미국의 혼합된 형태로서 재정 조달에 있어 공적·사적 구분없이 진행되고 있음
- ◆ 영국은 미국에 비해 예술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높은 편이긴 하나, 다른 해외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사재단의 역할이 두드러짐
- ◆ 영국의 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슷한 역할로서 정부의 지원금을 각 지역 예술위원회나 재단을 통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 영국은 4개 지역,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웨일즈예술위원회,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를 두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4개의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이들은 지역의 균형있는 문화예술발전과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영국의 각 지역마다 있는 지역 예술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공공 지역 문화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 예술지원의 형태 또한 중앙정부(DCMS)에서 예술위원회로, 그리고 지역예술위원회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통해 매년 기금을 지원받고 있음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ACE)

-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1946년에 설립된 대영제국예술위원회를 계승한 독립된 형태의 비정부공공기관으로 2002년 4월 지역예술위원회와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고 있음
- ◆ 2002년 지역예술위원회가 통폐합됨에 따라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산하 9개 지역위원회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운영이사(이사장의 개념)를 비롯한 9개 지역의 지역예술위원 이사와 대외, 재정 및 운영, 개발, 예술 4개 부문의 운영위원 이사 등 1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예술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지역정책과 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음
- ◆ 지속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주요 활동의 목표는 ① 예술의 지식·이해·실천을 촉진, ② 국가 내에서의 시민생활과 예술활동의 융화, ③ 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와의 교류, ④ 국가 수준의 예술정책 수립, ⑤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과 관리, ⑥ 예술단체의 평가 등임

■ 런던 예술위원회(London Arts)

- ◆ 런던예술위원회는 1991년 잉글랜드 지역예술위원회 중 하나로 설립됨

- ◆ 런던시민의 수준 높은 예술을 진흥과 대중적인 접근을강화하고 예술에 대한 감상능력을 개발하여 복지차원으로서의 예술활동을 촉진코자 하는 데 있음
- ◆ 런던 내 예술활동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과 예술활동의 확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이 런던시민의 생활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주요사업으로는 런던 내 예술발전을 위한 기금지원기관으로 여러 형태의 지원을 위한 파트너쉽 형성과 런던 예술조직, 예술가, 기타 예술관련 단체 및 문화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지원함
- ◆ 런던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수입원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로부터 나오는 국고지원으로 전체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각종 기금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86~89%, 인건비 및 운영비용으로 10~1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예술위원회로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기금이 예술활동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예술장르별 예술가와 문화단체 및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지원 및 예술활동을 위한 기초 조사사업과 사업평가, 연구,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함
-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재단과 달리 그 밖의 시의 관련 업무는 위탁받지 않으며, 사업의 진행 또한 단순한 배분이 아닌 전략적 선택에 의해 집중 지원하고 있음
 - 단발성의 기금 배분이 아닌 전략적 투자정책에 의해 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차원으로 추진
- ◆ 현재 런던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AECE(Arts Education Classroom Experience) 학교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 런던 교사들과 전문 예술가들이 런던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예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실습과 연습의 '창조적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Belong to song 음악활동을 통한 정신치유 프로그램
 -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통한 치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 참가자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오고, 듣기 위해 참여할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함
 - 개인 교습 또는 멘토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
 - CAIDC 치매노인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
 - 맥코믹 치매서비스(MDS) 회사와 런던예술위원회 전문예술 교육자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시행
 - 현재 댄스, 시각예술, 작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CAIP(Community Arts Investment Program) 예술공동체 지원사업

- 영화와 멀티미디어 예술, 문학, 음악,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지원함
- 런던 내 거주하는 전문 아티스트, 및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
- Culture city Youth 문화도시 청소년 투어
 - 전문적 예술가, 도시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이끄는 도시역사 현장 탐방 프로그램
 - 지역 토착 예술가가 알려주는 역사 이야기 투어
 - 전문 댄서, 음악가 및 배우와 함께 브레이크 댄스, 작곡 및 즉흥 연주
 - 전문사진가와 함께하는 도시 사진찍기
- 공공예술 프로젝트
 - 10년 이상 런던 예술위원회는 런던 문화청과 협력하여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함
 - 런던예술위원회는 부지를 평가하고, 예술가 선정을 위한 배심원을 소집하며, 일정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함



[그림 20] 공공예술 프로젝트

3.2 미국

■ 뉴욕주예술위원회 (NYSCA)

- ◆ 미국 뉴욕에는 주 예술기구 중 하나인 뉴욕주예술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 1960년 설립된 뉴욕주예술위원회(NYSCA)는 최초의 주예술기구로 뉴욕주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가 및 비영리문화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뉴욕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금지원기관임
 - 시각, 문학, 미디어 및 공연 예술을 지원하며, 예술 교육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담당함
 - 2018년도에는 예술단체에 1,100건의 직접 보조금과 62개 주 카운티에 총 1,300건의 보조금을 지급함

- ◆ 기금지원 정책은 예술장르와 문화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원정책과 선정기준은 각 정책별로 별책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예술경영 및 문화행정 전문 인력에 의한 전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 현재 운영되는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rts Education 예술교육 지원
 - 취학 전 아동부터 노인, 학생 등 모든 연령의 학습자를 위한 학교 및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현장 서비스, 통합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 Facilities Projects 문화시설 프로젝트
 - 작은 마을에서부터 주요 대도시 지역에 이르기 까지 뉴욕의 예술장소는 지역사회의 생명선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시설이 물리적으로 더 접근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 지원
 - Literature 문학활동 지원사업
 - 뉴욕 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활동 추진
 - Folk Arts 민속예술 지원사업
 - 지역사회 내에서 민속 예술의 전승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전통 공연 예술, 이야기 및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콘서트, 전시회, 강의/시연 및 기타 형식을 지원함



[그림 21] 뉴욕주예술위원회 추진 사업 이미지

V

시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

1. 시민 설문조사
2. 이해관계자 의견

1. 시민 설문조사

1.1 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 광주시민
- ◆ 조사 기간 : 2018년 11월 28일(수) ~ 12월 2일(일), 5일간
- ◆ 설문 부수 : 총 501부
- ◆ 조사 방법 : 전문조사원을 통한 현장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자기기입방식
- ◆ 조사 내용

[표 64] 조사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광주시민의 문화예술활동 특성 및 만족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도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종류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
	문화예술활동 참여 빈도 및 만족도
	광주시 문화예술활동 및 환경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 주요 고려사항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 애로사항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향후 문화예술활동시간 연장 의사
	광주시 문화예술여건 요구사항
「광주문화재단」 설립 관련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추진 희망 사업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성공요건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기대효과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1.2 설문 분석

가. 설문조사 특성

■ 인구통계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 47.3%(237명), 여자 52.7%(264명)로 구성됨
- 연령은 30대 29.3%(147명), 40대 26.9%(135명), 50대 22.4%(112명), 20대 11.2%(56명), 60대 이상 10.2%(51명)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는 오포읍 26.1%(131명), 광남동 14.0%(70명), 송정동 14.0%(7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5~10년 거주한 응답자가 22.0%(110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65]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	구성비
총 유효표본 수		501	100.0%
성 별	남	237	47.3%
	여	264	52.7%
연 령	20대	56	11.2%
	30대	147	29.3%
	40대	135	26.9%
	50대	112	22.4%
	60대 이상	51	10.2%
거주지	경안동	61	12.2%
	곤지암읍	30	6.0%
	광남동	70	14.0%
	남종면	20	4.0%
	남한산성면	20	4.0%
	도척면	20	4.0%
	송정동	70	14.0%
	오포읍	131	26.1%
	초월읍	60	12.0%
	퇴촌면	19	3.8%
거주기간	3년미만	147	29.3%
	3~5년	77	15.4%
	5~10년	110	22.0%
	10~15년	83	16.6%
	15년이상	84	16.8%

- ◆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 33.7%(169명), 주부 28.5%(143명), 판매/서비스/영업직 8.8%(44명) 순으로 조사됨

[표 계속]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	구성비
총 유효표본 수		501	100.0%
직업	농·축·수·임업	6	1.2
	자영업	39	7.8
	공무원	12	2.4
	회사원	169	33.7
	생산/기술직	7	1.4
	판매/서비스/영업직	44	8.8
	전문직	16	3.2
	단순노무직	8	1.6
	학생	32	6.4
	주부	143	28.5
	무직	11	2.2
	은퇴자	12	2.4
	기타	2	0.4
	무응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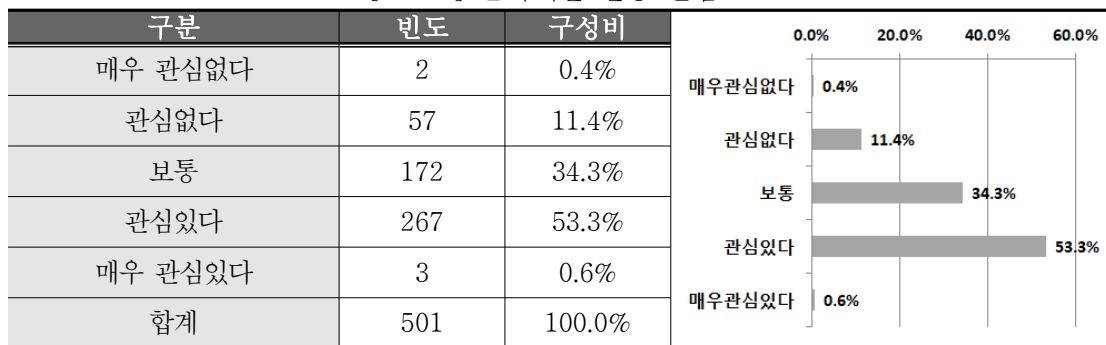
나. 조사 결과

(1)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견

■ 문화예술 활동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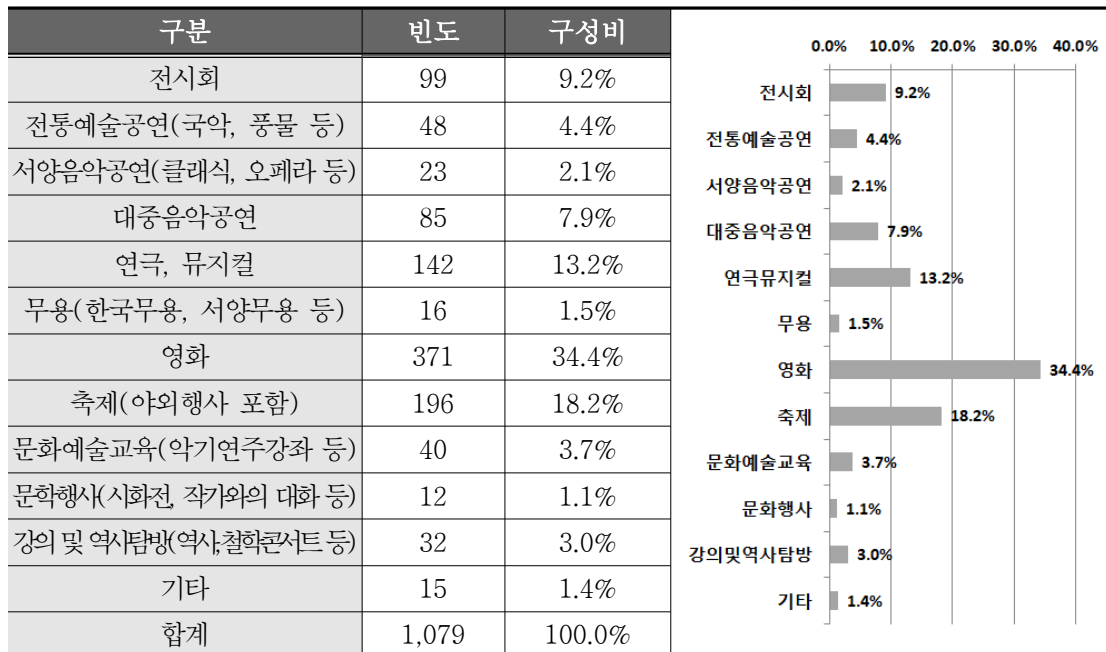
- ◆ 평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있다 53.3%(267명)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보통 34.3%(172명), 관심없다 11.4%(57명)순으로 응답함
- 문화예술 활동 관심도에 대하여 보통 이상(보통,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으로 응답한 광주시민은 88.2%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6] 문화예술 활동 관심도



- ◆ 광주시민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영화 34.4%(371명), 축제 18.2%(196명), 연극·뮤지컬 13.2%(142명) 순으로 나타남(다중응답)

[표 67] 선호하는 문화예술 활동(다중응답)



■ 최근 1년간 문화예술 활동 참여지역

- ◆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지역은 광주시 37.2%(205명), 서울 33.8%(186명), 타 지역 24.9%(137명) 순으로 응답함(다중응답)

[표 68] 최근 1년간 문화예술 활동 참여지역(다중응답)

구 분	빈 도	구성비	
광주시	205	37.2%	광주시 37.2%
타지역	137	24.9%	타지역 24.9%
서울	186	33.8%	서울 33.8%
기타	23	4.2%	기타 4.2%
합계	551	100.0%	

■ 최근 1년간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횟수

- ◆ 공연관람(음악, 무용, 연극 등)
 - 공연관람 참여 횟수는 없다 67.1%(336명), 1회 20.8%(104명), 2회 8.0%(40명) 순으로 나타남
 - 광주시민의 평균 공연관람 횟수는 0.51회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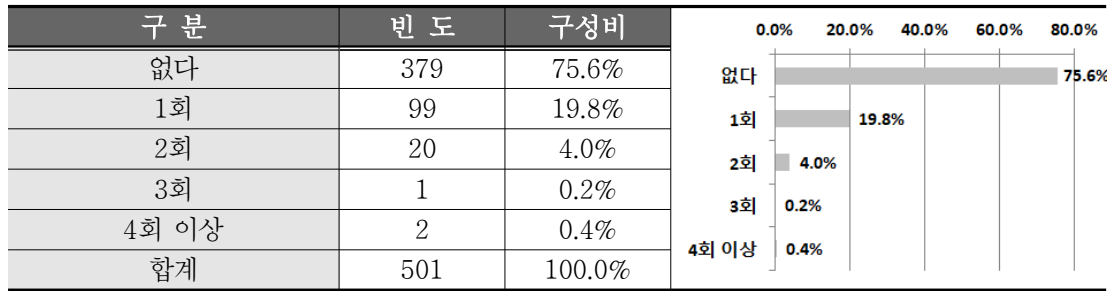
[표 69] 공연 관람 참여횟수

구 분	빈 도	구성비	
없다	336	67.1%	없다 67.1%
1회	104	20.8%	1회 20.8%
2회	40	8.0%	2회 8.0%
3회	16	3.2%	3회 3.2%
4회 이상	5	1.0%	4회 이상 1.0%
합계	501	100.0%	

◆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의 참여 횟수는 없다 75.6%(379명), 1회 19.8%(99명), 2회 4.0%(20명) 순으로 나타남
- 광주시민의 평균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횟수는 0.31회로 분석됨

[표 70]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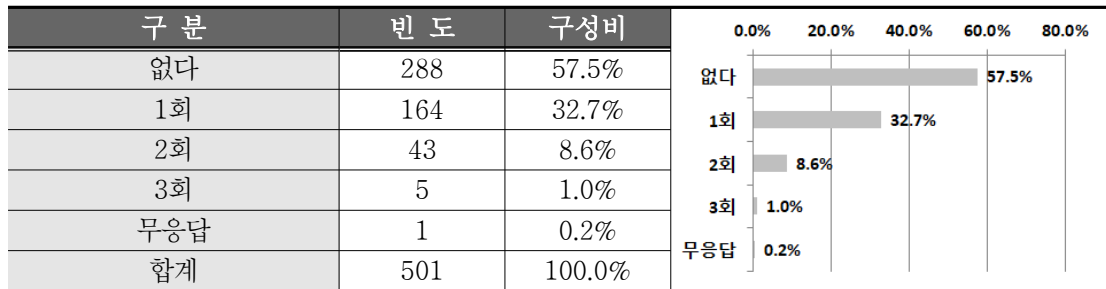


◆ 축제 방문(야외행사 포함)

— 축제 방문횟수는 없다 57.5%(288명), 1회 32.7%(164명), 2회 8.6%(43명) 순으로 나타남

— 광주시민의 평균 축제방문 횟수는 0.53회로 분석됨

[표 71] 축제 방문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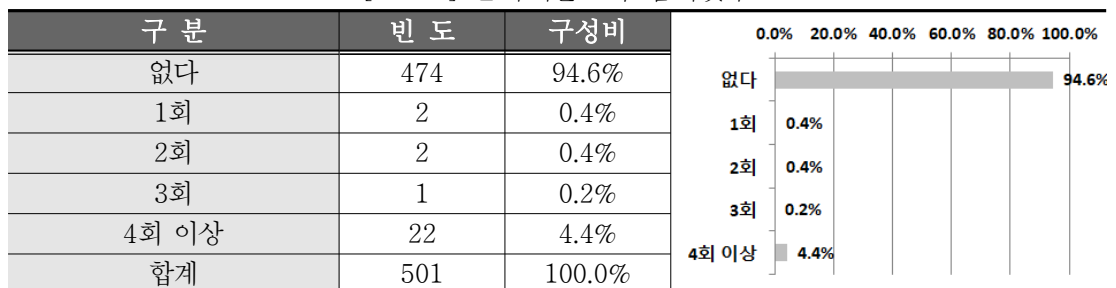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학교 교육 제외)

—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의 참여 횟수는 없다 94.6%(474명), 4회 이상 4.4%(22명), 1회 0.4%(2명), 2회 0.4%(2명) 순으로 나타남. 교육에 참여한 경우 정기교육으로 참여횟수가 다른 활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주시민의 평균 문화예술 교육 참여횟수는 1.11회로 분석됨

[표 72] 문화예술교육 참여횟수



◆ 역사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

— 역사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 활동횟수는 없다 93.8%(470명), 1회 5.4%(27명), 2회 0.6%(3명) 순으로 나타남

—광주시민의 평균 역사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 활동횟수는 0.78회로 분석됨

[표 73] 역사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 활동횟수

구 분	빈 도	구성비	
없다	470	93.8%	없다 94.6%
1회	27	5.4%	1회 0.4%
2회	3	0.6%	2회 0.4%
3회 이상	1	0.2%	3회 0.2%
합계	501	100.0%	4회 이상 4.4%

◆ 문화관련 단체(동호회, 합창단 등) 활동

—문화관련 단체 활동 횟수는 없다 98.8%(495명), 3회 이상 0.6%(3명), 2회 0.4%(2명) 순으로 나타남

—광주시민의 평균 문화관련 단체활동 횟수는 0.12회로 분석됨

[표 74] 문화관련 단체 활동횟수

구 분	빈 도	구성비	
없다	495	98.8%	없다 98.8%
1회	1	0.2%	1회 0.2%
2회	2	0.4%	2회 0.4%
3회 이상	3	0.6%	3회 이상 0.6%
합계	501	100.0%	

◆ 극장에서 영화관람

—극장에서 영화관람 참여자는 79.0%로 다른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참여비율 및 참여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회 40.1%(201명), 3~4회 28.9%(145명), 없다 21.0%(105명) 순으로 조사됨

—광주시민의 평균 극장에서 영화 관람횟수는 2.17회로 분석됨

[표 75] 극장에서 영화관람 참여횟수

구 분	빈 도	구성비	
없다	105	21.0%	없다 75.6%
1~2회	201	40.1%	1회 19.8%
3~4회	145	28.9%	2회 4.0%
5~6회	43	8.6%	3회 0.2%
7회 이상	7	1.4%	4회 이상 0.4%
합계	501	100.00%	

■ 최근 1년간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별 만족도

- ◆ 최근 1년간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역사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활동 3.83점, 문화관련 단체활동(동호회, 합창단) 3.83점, 교육활동 3.74점,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3.70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76] 최근 1년간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별 만족도

구 분	만족도(5점 만점)	
공연관람	3.57	공연관람만족도 3.57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3.70	전시회관람만족도 3.70
축제방문(아외행사 포함)	3.45	축제활동만족도 3.45
문화예술교육(학교교육 제외)	3.74	교육활동만족도 3.74
역사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	3.83	역사문화유적만족도 3.83
문화관련 단체(동호회, 합창단 등)	3.83	단체활동만족도 3.83
극장에서 영화관람	3.70	영화관람만족도 3.70

■ 문화예술 활동 및 환경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 ◆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2.47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 ◆ 불만족 순위
 - 1순위 : 환경부문(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기회가 충분하다) 2.19점
 - 2순위 : 활동부문(광주시 문화예술 활동단체가 다양하다) 2.19점
 - 3순위 : 교육부문(광주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2.38점
 - 4순위 : 축제부문(광주시 축제 및 문화행사가 다양하다) 2.47점
 - 5순위 : 시설부문(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충분하다) 2.5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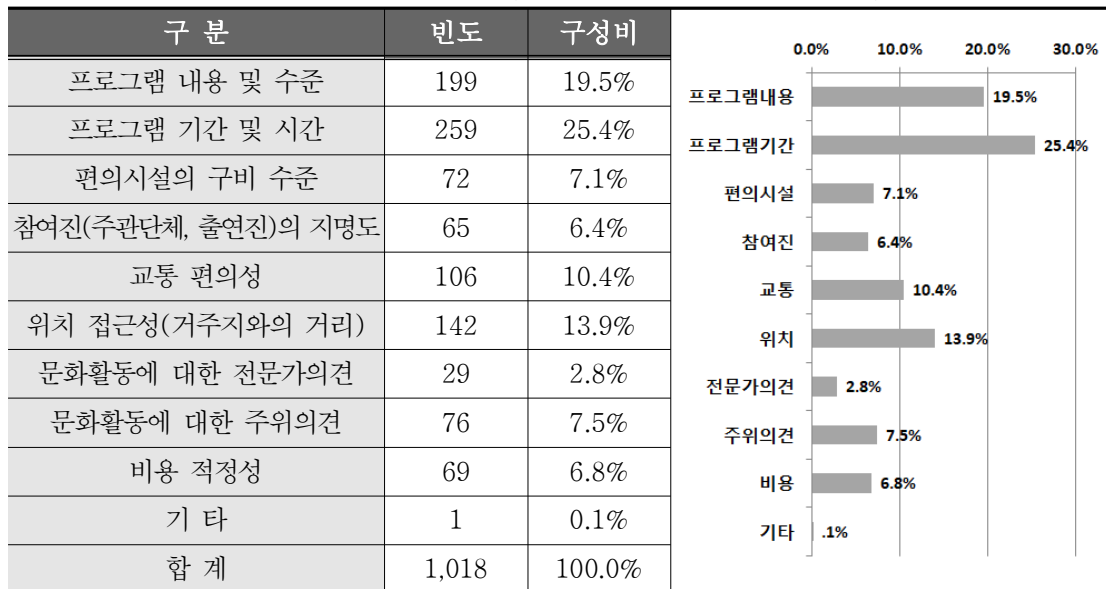
[표 77] 문화예술 활동 및 환경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구 분	만족도(5점 만점)	
시설부문 만족도	2.59	시설만족도 2.59
환경부문 만족도	2.19	환경만족도 2.19
활동부문 만족도	2.19	활동만족도 2.19
교육부문 만족도	2.38	교육만족도 2.38
축제 만족도	2.47	축제만족도 2.47
종합만족도	2.47	종합만족도 2.47

■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 주요 고려사항

- ◆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 주요 고려사항은 프로그램 기간 및 시간 25.4%(259명),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19.5%(199명), 위치 접근성(거주지와의 거리) 13.9%(142명), 교통 편의성 10.4%(106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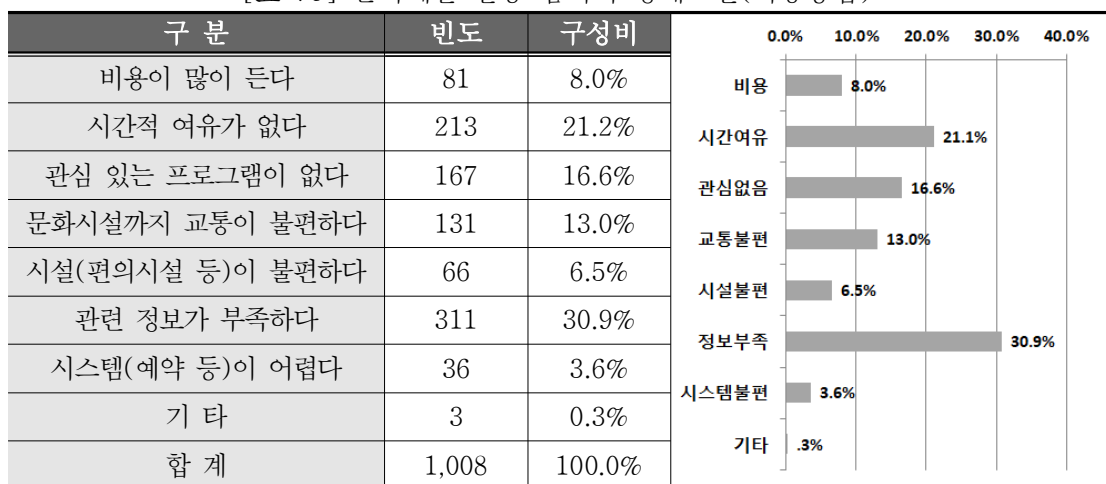
[표 78]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 주요 고려사항(다중응답)



■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 장애요인

- ◆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 장애요인으로 정보 부족 30.9%(311명), 시간 부족 21.1%(213명),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16.6%(167명), 교통불편 13.0%(131명) 순으로 나타남(다중응답)

[표 79]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 장애요인(다중응답)



■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험

- ◆ 광주시 문화예술시설(광주문예회관, 남한산성아트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험한 적이 있다 45.9%(230명), 없다 54.1%(271명)으로 나타남

[표 80]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험

구 분	빈도	구성비	
있 다	230	45.9%	
없 다	271	54.1%	
합 계	501	100.0%	

- ◆ 광주시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230명 중 시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17.6%(88명), 보통 14.2%(71명), 불만족 14.2%(71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54점으로 분석됨(5점 척도)

[표 81]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 만족도

구 분	빈도	구성비	
매우 불만족	1	0.2%	
불만족	70	14.0%	
보 통	71	14.2%	
만 족	87	17.4%	
매우 만족	1	0.2%	
합 계	230	45.9%	

- ◆ 광주시 문화예술시설을 이용 시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7.9%(35명)가 '문화프로그램의 부족'을 이유로 답하였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 등 혜택 부족' 26.0%(19명), '주민홍보부족' 11.0%(8명) 순으로 나타남(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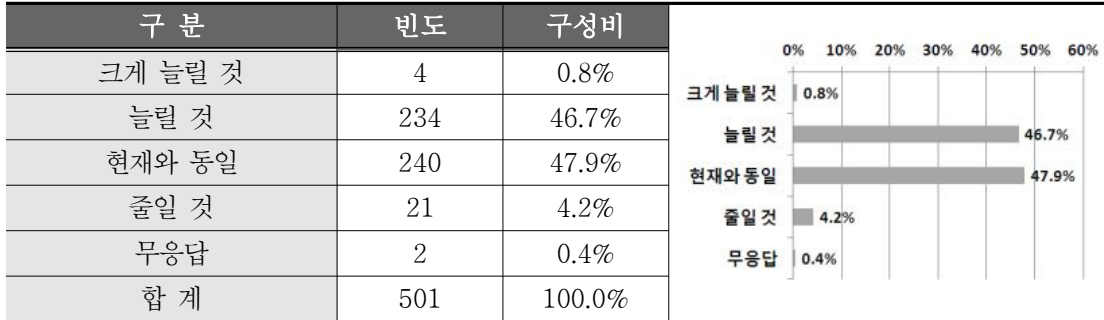
[표 82]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불만족한 이유

구 분	빈도	구성비	
취약한 시설	5	6.8%	
프로그램 부족	35	47.9%	
행정지원 미약	2	2.7%	
주민 혜택 부족	19	26.0%	
홍보 부족	8	11.0%	
기 타	4	5.5%	
합 계	73	100.0%	

■ 향후 문화예술 활동시간 확대 의향

- ◆ 향후 문화예술 활동시간을 확대할 의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 47.9%(240명명), '늘릴 것' 46.7%(234명), '줄일 것' 4.2%(21명) 순으로 조사됨

[표 83] 향후 문화예술 활동시간 확대 의향



■ 광주시 문화예술활동 필요 여건

- ◆ 광주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여건을 조사한 결과, '축제 및 행사 확대' 30.7%(309명), '정보 및 홍보 강화' 20.9%(210명),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19.4%(195명) 순으로 나타남(다중응답)

[표 84] 광주시 문화예술활동 필요 여건(다중응답)



(2)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

■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

- ◆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찬성 67.3%(337명), 반대 6.2%(31명), 잘 모르겠음 26.5%(133명)으로 나타남

[표 85]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

구 분	빈도	구성비	
찬 성	337	67.3%	
반 대	31	6.2%	
잘 모르겠음	133	26.5%	
합 계	501	100.0%	

- ◆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한 337명은 그 이유를 '안정된 지원과 다양한 문화행사 기대' 28.5%(143명), '축제 및 문화행사의 질 향상 기대' 17.4%(8명), '공공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제공' 11.2%(56명) 순으로 응답함

[표 86] 광주문화재단 설립 찬성 이유

구 분	빈도	구성비	
공공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제공	56	11.2%	
축제 및 문화행사의 질적 향상 기대	87	17.4%	
문화에 대한 종합전문기관 설치 필요	50	10.0%	
안정된 지원과 다양한 문화행사 기대	143	28.5%	
기 타	1	0.2%	
합 계	337	67.3%	

- ◆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한 31명은 그 이유를 '타 분야 사업 우선' 2.0%(10명), '타 기관 기능 중복' 1.8%(9명) 순으로 응답함

[표 87] 광주문화재단 설립 반대 이유

구 분	빈도	구성비	
현재 상태 만족	6	1.2%	
타 기관 기능 중복	9	1.8%	
지역발전 영향력 미비	6	1.2%	
타 분야 사업 우선	10	2.0%	
합 계	31	6.2%	

■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추진 희망 사업

- ◆ 광주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추진하길 희망하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개발' 25.6%(129명), '프로그램 확대 운영' 22.8%(115명), '주민활동 지원' 13.1%(66명) 순으로 나타남(다중응답)

[표 88]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추진 희망 사업(다중응답)



■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성공 요건

- ◆ 광주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건은 '충분한 자원 확보' 19.5%(196명), '지역특화사업 개발' 18.6%(187명), '주민과의 협력관계' 18.5%(186명) 순으로 나타남(다중응답)

[표 89]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성공 요건(다중응답)



■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기대효과

- ◆ 광주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문화콘텐츠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6.5%(267명),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22.7%(229명), '문화복지·교육 확대로 시민 문화역량 증대' 19.1%(192명) 순으로 나타남(다중응답)

[표 90]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기대효과(다중응답)



2. 이해관계자 의견

- ◆ 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련된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각각의 의견에 대해 수렴하였으며, 각 기관의 입장은 다음 표와 같음

－ 광주문화원, 광주예총, 광주시립예술단(광지원농악회), 문예회관, 남한산성아트홀, 청소년수련관

[표 91] 이해관계자 의견

구 분	관계자 의견
문화원	· 문화재단 설립 관련 찬성 입장 － 문화원 역할(지역문화 보존)과 관련 없는 축제 행사에 대해 재관으로 이관하길 원함 －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광주시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전시회 등 5개 사업
광주예총	· 문화재단 설립 관련 부정적 입장 － 시 지원 예산 감축 우려, 유사 성격의 행사 재단 개최 우려 등 부정적 입장 － 단, 문화재단 설립 시 지역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개발, 각 예술단체의 기존 성격을 유지시킨 채 문화재단은 총괄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찬성임
광주시립예술단	· 문화재단 이관 반대 입장 － 시립예술단의 위상상 재단 소속은 맞지 않다는 의견 · 현 운영상의 문제점 － 입지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연습실이 있으며, 컨테이너 공장 건물을 임대 사용 중으로 연습환경 열악 － 현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남한산성 아트홀과의 연계협력 사업 부재 → 문화재단 설립·운영 시 연계 사업 활성화 기대
문예회관	· 현재 공연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로 활용도 저조 － 공연장으로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 현재 소규모 집단의 대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동률 낮음 (공연시설 규모 협소(현 168석), 주차시설 협소, 접근성 열위, 시설의 노후화 등) － 현재 문화원이 입주하여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교실 운영 중임
남한산성아트홀	· 문화재단 설립 관련 찬성 입장 － 문화예술 사업의 특수성과 유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견해 － 성과적(경제성) 지표에 집중하는 공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이질적 사업으로 사업 운영에 한계점 존재 · 향후 재단 이관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로의 전문적 운영 기대 － 공연 : 대중성 있는 한정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장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지향 － 문화예술교육 : 현재 문화센터와 유사한 취미강좌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재단 이관 시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청소년수련관	· 문화재단 이관사업의 범위 확대 및 시설별 객관적 검토 요청 － 이관검토 대상 : (기존) 청소년수련관 + (추가) 외국어체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2개소) － 청소년수련관 이관 시 외국어체험센터(현 민간위탁(주혜럴드))도 함께 이관 필요 － 사업별 문화재단 이관 적정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토 요청

VI

광주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1.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2. 대상사업 검토
3. 조직 및 인력계획
4. 운영계획

1.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1.1 공공문화시설 운영방식

가. 운영주체별 장·단점 검토

- ◆ 문화시설 운영조직 유형은 크게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으로 구분 가능하며, 세부적으로는 직영, 재단법인(문화재단), 공사/공단 위탁,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구분 가능함

(1) 직영 사업소

■ 운영형태

- ◆ 조직위상 : 지자체 산하 사업소
- ◆ 운영체계 : 공무원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필요에 따라 개방직 운영 가능
- ◆ 추진절차 : 문화시설 시설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근거 마련

■ 장점

- ◆ 운영 초기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시 재정으로 충당하므로 쉽고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하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함
- ◆ 인력의 안정성이 높고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서비스 지속성과 안정성이 가장 높음
- ◆ 재정확보에 따라서 가장 관건이 되는 전문직 확보(개방형 직위공모제)도 가능하며, 현 정부의 성과관리 강화 체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책임성 확보도 가능함

■ 단점

- ◆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조직운영의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직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함
- ◆ 전문직의 권한 부여 여부에 따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제고될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임
- ◆ 총액 인건비 제도 등에 따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조직 신설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많고, 변화하는 문화수요와 해당 시설의 특성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성이 미흡함
- ◆ 공무원 조직으로서 성과에 대한 유인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경직성 경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비판이 큼
- ◆ 개방형 직위제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이나, 지자체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정부조직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운영상 자율성에 한계가 있음

(2) 공사 · 공단

■ 운영관리형태

- ◆ 조직위상 : 지자체 산하 공사 · 공단
- ◆ 운영체계 : 일반적으로 공사 · 공단의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에 대하여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교부받고 수입금은 자치단체에 귀속됨

■ 장점

- ◆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자유재량의 신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 수행에 공사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와 시설이용에 대한 가격 절충에 유리함
- ◆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인력 포함) 절감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함

■ 단점

- ◆ 시설통합운영으로 기본경상비 등 운영경비 절감을 기할 수 있으나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과 운영 비교를 하는 경우 아트홀과 같은 공연장은 비수익 시설로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 문화시설 운영의 문화적 특성이나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일반 공공시설 관리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문화프로그램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음
- ◆ 평가를 의식하여 지나치게 경영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공익성을 강조할 경우 기업성이 악화되어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부족분은 조세로 충당해야하며, 반대로 기업성을 강조할 경우 공공성이 저해되어 지방공기업 설립목적과 대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3) 재단법인

■ 운영형태

- ◆ 조직위상
 - 재산권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전담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식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로 재단법인 조례와 계약에 의한 산하단체일 뿐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재정부담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가 지는 채무는 공단·공사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

◆ 운영체계

- 공익 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운영체계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들을 선발하여 운영
- 각 시설별 운영은 통합 운영 또는 시설별 자율운영 방식의 선택 가능계약에 의하되, 매년 예산을 승인하여 보조하고 이러한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여건에 따라 일정액의 정액 위탁보조도 가능

- ◆ 추진절차 : 시 조례를 통하여 재단법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시설운동을 위탁

■ 장점

- ◆ 전문인력 위주로 문화시설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경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이 가능함. 즉 문화적 전문성과 자율성의 조화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과 운영의 노하우 축적이 가능함
- ◆ 독점적이고 공공적인 위상으로 인하여 지속적 서비스 발전이 가능함. 재단법인도 공익법인으로서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익성 측면이 우수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문화정책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함
- ◆ 전문 인력의 안정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 ◆ 통합적 운영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여 비용 절감 효과도 있으며,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도 가능함

■ 단점

- ◆ 독점적 운영으로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효율성 및 책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조직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경우 조직의 경직성이 우려됨
- ◆ 지자체의 재정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관리에 따른 기본적 경비가 소요되며, 초기 설립 및 정착 단계에서 보다 많은 전문인력 양성과 별도 인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 ◆ 또한 운영인력 등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인력으로 충원되는 경우 실질적 자율성 훼손이 우려되며, 순수 민간위탁에 비해 자율성이 약함

(4) 민간위탁

■ 운영형태

◆ 조직위상

-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함
- 전체 문화기반시설 또는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외부의 단체 및 법인에 경쟁 위탁하며, 운영업체는 지자체와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업체로 재정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
- 성과관리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 차원의 통제 관리는 가능(위탁보조비에 대한 사후정산과 감독)

◆ 운영체계

- 외부의 단체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고 계약을 갱신(재입찰)하며, 각 시설의 운영방식은 해당 단체에 일임하고, 기본운영방식은 계약 시 평가에 포함
- 위탁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위탁보조비를 지급하고, 부족한 수입은 해당 단체 및 법인에서 조달하여야 하며, 초과수입금도 해당단체에서 처리

◆ 추진절차

- 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설치와 위탁운영조례를 통하여 시설 운영을 위탁 관리

■ 장점

- ◆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음
- ◆ 민간운영방식의 규모의 경제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위한 성과유인 동기가 높고 성과지향적 관리도 가능함
- ◆ 해당단체 및 법인의 전문성에 따라 조직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높으며, 행정절차상으로 추진이 가장 용이함

■ 단점

- ◆ 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상징성 훼손 우려가 있으며 시설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낮음
- ◆ 수익성이 낮은 문화시설의 경우 정확한 민간위탁비용 산정이 어려워 비용부담이 가중되거나 역선택의 우려가 높음
- ◆ 민간위탁 단체 및 법인은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선발하여 자율 운영하며, 위탁 단체가 변경될 경우 계약여부에 따라 일부 전문직 및 운영인력 등의 고용승계 가능하나 인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음
- ◆ 민간위탁단체의 수익성 또는 비용절감 유인동기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운영으로 장기적인 투자,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투자의 어려움이 있음

- ◆ 민간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시설운영의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우며, 위탁기관의 선정, 평가, 감독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항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

(5) 종합

- ◆ 운영주체별 장단점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92] 운영방식별 장단점 분석

구분	직접운영방식	간접운영방식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 사업소)	재단법인 설립 (문화재단)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단체 위탁
의미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여 사업수행 및 시설 운영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자율 운영	각종 공공시설 통합 관장	정부가 민간에게 비용 지불
재원	지자체 예산 수입은 지자체 귀속	지자체 지원금 + 자체수입 수입은 자체예산 편성	지자체 지원금 + 자체 수입 수입은 자치단체 귀속(공단)	지자체 지원금 + 자체 수입 수입은 자체예산 편성
서비스	공공	공공	공공	민간
장점	· 안정적 재원 조달, 공공성 확보용이 · 지역문화시설이용률, 문화향유수준 높지 않을 경우 적합	· 전문인력 위주로 운영 가능 · 경영의 연속성, 업무 축적 가능 ·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	· 재원조달 용이,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탄력적 인력 채용 가능	· 낮은 운영비용으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법인, 단체) 선정 가능 · 전문인력 탄력적 채용 및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가능
단점	·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낮음 ·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 성과에 대한 유인체계 상대적 부족	· 초기 설립 및 정착단계 투입 비용 多 · 정착 이후 독점적 위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우려	· 일반 공공시설 관리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문화프로그램 수준 하락 · 평가를 의식하면 경영성과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	· 조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낮음 · 수익위주로 운영할 경우 공공성 훼손 우려 · 단기적 성과위주 운영으로 장기적 사업 및 투자 불가능

나. 운영방식별 부문별 적정성 평가

- ◆ 문화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4개 부문, 9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직영, 공단·공사, 문화재단, 민간위탁 4개의 대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 공공성 : 시설의 공공적 위상, 공공서비스의 공급범위 및 수준
 - 전문성 : 운영주체의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전문성
 - 경제성
 - 운영조직 : 운영의 자율성, 조직의 안정성, 대응성
- ◆ 평가기준은 경기연구원(2006), 「도 건립·운영 문화기반시설 운영방안 연구」의 문화시설 운영주체별 비교 평가항목을 참조하였음
- ◆ 공공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부문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단 운영방식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 공공성과 전문성, 운영의 자율성을 가진 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통해 문화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문화향유 범위 확장 등 기대 가능

[표 93] 운영방식별 평가기준 및 검토결과

구 분		직영	공단/공사	문화재단	민간위탁
공공성	시설의 공공적 위상	○	△	△	x
	공공서비스의 공급범위 및 수준	○	○	○	x
전문성	운영주체의 전문성	△	x	○	○
	인력의 전문성	△	x	○	○
	프로그램의 전문성	△	△	○	○
경제성		x	△	△	○
운영조직	운영의 자율성	x	△	○	○
	조직의 안정성	○	○	○	x
	대응성	x	△	△	○
합 계		27	27	39	33

주 : ○ 5점, △ 3점, x 1점으로 합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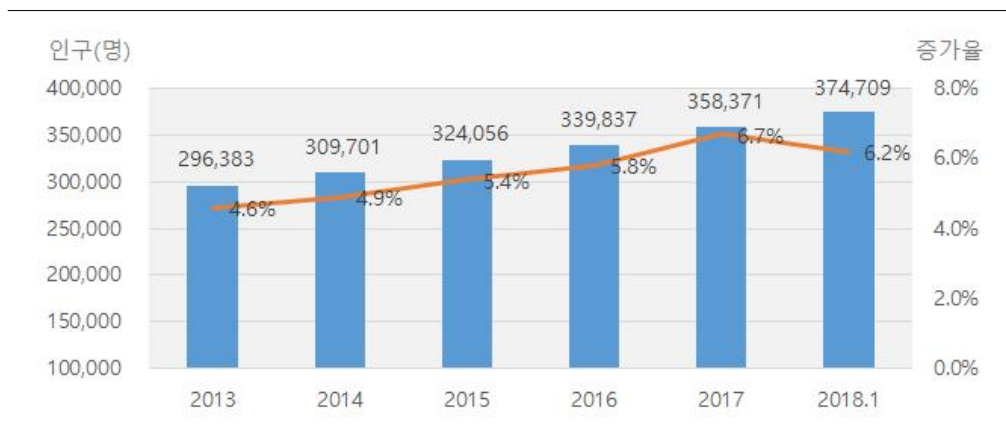
1.2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가. 설립 필요성

(1) 광주시 대외환경의 변화

■ 광주시 문화수요 증대

- ◆ 광주시는 2013년 29만여명에서 2018년 10월 기준 37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 5.6%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2] 광주시의 인구변화

- ◆ 광주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신규 인구 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음

— 광주·곤지암·쌍동 등 역세권 개발, 태전·송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인구유입 증가

■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확립 필요

- ◆ 광주시는 경안2지구,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공간적·사회적 변화가 발생하는 과도기에 있음

[표 94] 광주시 도시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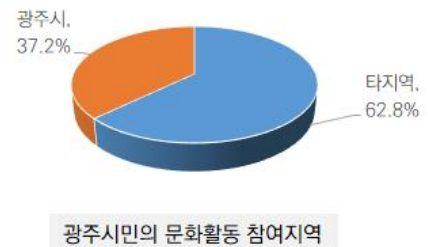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경안2지구(역동IC일원) 도시개발사업	역동 28-3 일원	2016~2022	73,399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역동 169-15 일원	2012~2019	431,758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곤지암읍 곤지암리 367 일원	2012~2019	37,300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송정동 318-4 일원	2014~2019	67,521

출처 :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city.go.kr>)

- ◆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각 권역별 문화적 이질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적 격차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
- ◆ 이에 지역별 문화적 특수성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점점 기회 확대 등이 가능한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이러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서 문화재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주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광주시만의 지역정체성 확립이 가능할 것임

■ 광주시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질 향상 필요

- ◆ 광주시의 문화예술 부문의 재정적 여건을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 가장 적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위해 문화예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주시는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19.9천원으로 경기 지자체 평균인 50.2천원보다 30.3천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본 연구에서 실시한 광주시민의 문화활동지역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시 37.2%, 타 지역 62.8%로 광주시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 광주시 문화예술 예산 및 광주시민의 문화활동 참여지역

■ 광주시 문화예술사업 운영여건

- ◆ 광주시 문화예술사업 운영여건을 살펴보면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광주문화원 등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현 여건상 협업 관계가 아닌 사업별 분리 체제방식임
- ◆ 또한 현재 광주시의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순환보직체제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의 배치가 어려움
- ◆ 또한 광주시의 대표 문화예술 시설인 남한산성아트홀을 운영하는 도시관리공사의 경우 기관의 성격상 성과, 평가지표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한계점이 존재함

(2) 광주시 문화정책

■ 현 광주시 문화사업 분석

-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들은 문화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문화정책 수립 지원 및 자문,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지원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영역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문화재단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기본 영역에 대하여 광주시 사업 및 광주시의 지원을 통한 관련기관 추진 사업들을 검토함

[표 95] 광주시 관내 문화 관련 사업분석

구 분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문화원	한국예총 광주지부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 문예회관 • 시립도서관 • 청소년수련관	• 남한산성아트홀	—	—
문화정책 수립 지원 및 자문	—	—	—	—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 향교서원 활성화	—	• 전통제례계승사업 • 줄타기 복원사업 • 향토지 발간 등	—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지원	• 시립광지원농악단 • 너른고을 광주 성악 콩쿠르 • 솜씨마켓	—	—	• 분야별 9개 협회 운영(연예/음악/연극/무용 등)
문화행사 축제	• 남한산성문화제 • 광주왕실도자기축제 • 불량콘서트	—	•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 한마당 • 연주회/전시회	• 광주예술제 • 청석공원 정기공연 • 미술제/연극제 • 각종 연주회
문화예술 교육	—	• 남한산성아트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문예회관 문화학교 • 문화유적지 답사 • 문화재교육 • 예절교육	• 문학창작교실 • 영화창작아카데미
생활문화 활성화	• 찾아가는 문화활동 • 거리로 나온 예술 •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 솜씨마켓	—	—	—
문화인력 양성	—	—	—	—
그밖의 특화사업	—	—	—	—

- ◆ 광주시 관내 문화사업 검토 결과 **문화정책 수립지원 및 자문, 문화인력 양성, 그 밖의 특화사업의 영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 광주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관련인력의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광주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광주시만의 특화사업을 계획하여 광주시만의 문화적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임
- ◆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수립을 시행하고, 정책에 따른 세부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직접/협력 수행하거나 사업의 성격과 부합하는 단체에게 위임하는 등 총괄적 수행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주체로서 문화재단의 설립이 요구됨

■ 광주시 문화정책 및 사업 계획

- ◆ 민선 7기 광주의 5대 시정목표는 ① 지방분권 이끄는 자치도시 광주, ② 기업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 ③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광주**, ④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광주, ⑤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로 설정하고 있음
- ◆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도시로서 성장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전체적 문화사업의 총괄 및 신규 사업의 지속적 개발·운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96] 문화 관련 추진과제

방침	추진과제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	· 광주 청소년의 끼를 살리는 재능학교 건립 · 청소년들의 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 건립 · 마을별 교육사랑방 진로 순회교육 운영
문화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문화예술 도시 조성	· 재단 등 문화전담조직 신설 · 광주시립 시민예술단 창단운영 · 일상이 문화가 되는 지역축제 개발 · 자매도시 결연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광주산업·관광발전
전통문화 중심도시 광주 문화콘텐츠 구축	· 허난설헌 문화제 · 신익희상 제정 · 최은희 영화제 개최 · 광주시 전통문화
광주의 자연과 역사를 살리는 천년고도 역사전통문화벨트 조성	· 역사문화 탐방 및 관광벨트 조성 · 자연과 문화재를 연계하는 둘레길 조성

나. 대안검토

■ 광주시 직접 수행 방안

- ◆ 현재 광주시의 문화예술관련 조직은 문화관광과로 문화정책팀, 문화재팀, 문화예술팀, 관광개발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19명임
 - 과장(1), 문화정책팀(5), 문화재팀(5), 문화예술팀(5), 관광개발팀(3)
- ◆ 문화관광과의 팀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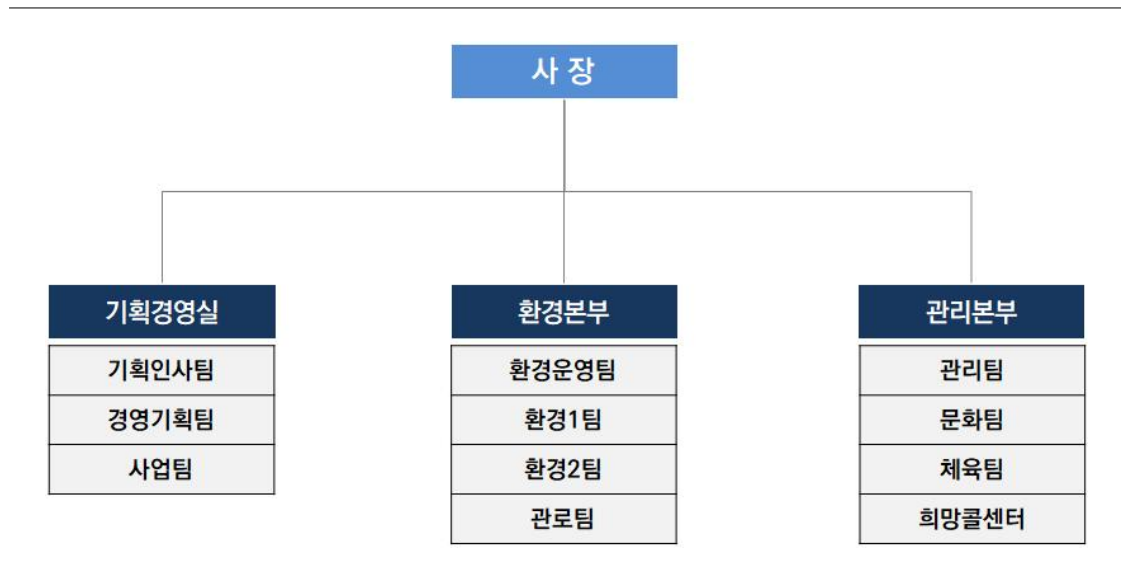
[표 97] 광주시 문화관광과 팀별 업무

방침	추진과제
문화정책팀 (5명)	· 문화정책 업무 · 문화관광과 예산 및 회계 · 문예회관 관리, 문화원 보조사업 등
문화재팀 (5명)	·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 전통사찰 지정 및 보수 · 무형문화재 관리 · 문화재 현상 변경 ·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리 등
문화예술팀 (5명)	· 남한산성문화제 및 각종 예술 행사 · 조형물 및 미술작품 심의 · 광주시 예총, 시립예술단, 문화예술사업 · 문화유통관련업 등록 및 신고 등
관광개발팀 (3명)	· 관광인프라 사업, 관광개발 및 홍보사업 · 문화관광탐방로 사업 · 시티투어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 ◆ 문화재단 미설립시 문화정책팀 및 문화예술팀의 인력 충원을 통해 정책개발 및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기획·운영, 생활문화예술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여야 함
- ◆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원의 확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원 확충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순환보직의 한계 상 지속적인 정책계획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함

■ 광주도시관리공사 조직 개편 방안

- ◆ 현재 광주시의 대표 문화시설인 남한산성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사업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 현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조직체계는 기획경영실, 환경본부, 관리본부의 1실 2본부 체계로 남한산성아트홀 관련 공연기획, 무대기술, 교육사업은 관리본부의 문화팀에서 운영하고 있음



[그림 24] 광주도시관리공사 조직도

- ◆ 남한산성아트홀 관장의 성격이 문화팀의 팀장 직급으로 광주시 대표 문화시설인 남한산성아트홀의 수장 역할을 하기에는 위계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
 - 문화사업의 중심기관은 지역의 문화관련 자료조사, 연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의 수행 필요
 - 또한 지역 문화정책 계획 수립 시 부천시와 같은 경우는 부천문화재단의 본부장이 부천시의 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며, 문화관련 시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 현 체제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문화팀의 팀장이 수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계상 한계 등 현실적 어려움 존재
- ◆ 따라서 현 조직구성을 개편하여 문화본부에 대한 신규 조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문화본부를 확대하여 각 분야에 따른 팀(예시 : 정책기획팀, 홍보팀, 시민문화팀, 공연기획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 ◆ 그러나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기관 자체의 성격 상 경영성과 및 수익 등의 지표로서 평가가 수반되며, 현 남한산성아트홀의 운영 관계자 면담에 의하면 문화예술 사업의 특수성과 유연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며, 주 활동사업에 차이가 있음
 -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주요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 남한산성아트홀 및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운영으로 사업분야에 대한 성격이 매우 상이
 - 성과적(경제성) 지표에 집중하는 기관의 성격으로 인하여 대중성 있는 분야의 공연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 ◆ 현재 남한산성아트홀 운영 상에도 한계점이 존재하여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현 여건 상 문화 정책 및 문화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여 운영을 하는 방안은 광주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한 기회 확대, 소외계층 문화복지 사업 등 성과지표(경제성)로 설명할 수 없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등 어려움 발생

■ 문화원 기능 확대 방안

- ◆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며, 주 활동사업에 차이가 있음
 - 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
 - 문화재단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수행
- ◆ 광주문화원의 경우 향토 문화예술의 부흥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시 전통문화의 보전·계승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학교 및 책자발간
 -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광주시 문화의 날 행사 등
 - 전통제례계승사업 및 민속문화사업, 문화재교육사업 등
- ◆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문화원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사업 및 조직의 규모가 증대될 수 있으며, 문화원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문화원에서 공연 및 전시시설, 정책사업 기획운영 사례 또한 없으며, 문화원은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시설 및 사업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문화재단 설립

- ◆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공연, 전시, 기획, 교육, 외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남한산성아트홀'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함
- ◆ 문화재단의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의 확보가 가능함. 또한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이 우수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 ◆ 특히 지역문화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 단,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에 따른 기본경비가 소요되고, 신규 사업에 따른 운영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됨
- ◆ 문화재단 설립 시 대표이사 및 직원의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창의적 문화사업들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2. 대상사업 검토

2.1 기초문화재단의 사업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2014년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연구」³⁾에 따른 기초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음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시설운영, 문화정책,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축제, 공연/전시, 문화예술교육, 지역콘텐츠 사업, 위탁/수탁 사업, 공모지원 사업

-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영역인 위의 11개 영역을 유사 사업 영역으로 통합하면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시설운영, 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 지역콘텐츠 사업」으로 총 6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위의 기존 사업 영역과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업 영역을 통합하면 총 7개의 사업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의 내용 및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음

[표 98] 기초문화재단 주요 사업영역 내용 및 사업 예시

사업 영역	내 용	사업 예시
지역문화정책	지역 문화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정책 수립·생산·집행	지역문화정책 개발, 문화정책 연구, 지역문화포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문화예술진흥	단순 사업 실행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계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 진행	예술인/단체 육성 지원, 상주예술단체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생활문화	-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속 전망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진행	생활문화공동체, 지역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콘텐츠 사업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의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별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문화·관광 상품 개발, 지역별 중점사업 연계, 지역학 등
문화인력양성	지역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한 지역 이해도가 높은 문화인력의 양성	문화매개자 양성교육, 문화기획자 양성교육, 시민예술가양성 교육 등
문화복지	과거 수혜자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중심문화 복지 → 지역 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사업 추가 확장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인 DB구축, 문화복지 상담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 참여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 지역적 특성 반영	유형별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문화예술 전문강사 양성사업 등

3) 문화체육관광부(2014), 주관 : 춘천시문화재단, 후원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2 광주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

가. 광주시 문화시설 대상사업 검토

■ 이관검토 대상사업 개요

- ◆ 문화재단 대상사업은 크게 문화시설 운영·관리와 축제·문화사업,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사업으로 구분 가능함
- ◆ 광주문화재단 이관 검토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99] 광주문화재단 이관검토 대상사업

구분	검토 대상사업		위 치	운영주체	운영예산 (백만원)
문화 시설	공연시설	광주 문예회관	경안동	· 광주시(문화관광과)	49
		남한산성아트홀	송정동	· 광주도시관리공사	6,500 (스포츠센터 포함)
	도서시설	시립도서관	관내 5개소	· 광주시(시립도서관)	4,746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스포츠센터 (체육 부문)	송정동	· 광주도시관리공사	6,500 (아트홀 포함)
		청소년수련관	태전동	· 민간위탁	1,854
		외국어체험센터	태전동	· 민간위탁(㈜헤럴드)	700
		청소년복지시설	2개소	· 민간위탁(서울장신대학교)	931
		여성문화센터	송정동	· 광주시(여성보육과)	65
축제	남한산성문화제(10월)		남한산성도립 공원 일원	· 주최 : 광주시 경기도 · 주관 :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295
	광주왕실도자기축제(4~5월)		곤지암 도자공원 내	· 주최 : 광주시 · 주관 :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400
	퇴촌토마토 축제(6월)		퇴촌면 공설운동장	· 주최 : 광주시 퇴촌면 · 주관 : 퇴촌 토마토축제위원회	120
단체	시립예술단(광지원농악회)		—	· 광주시	864

(1) 공연시설

■ 남한산성아트홀

- ◆ 남한산성아트홀은 대표 문화시설로서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지역 대표 공연장을 주축으로 한 문화예술 사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 현재 남한산성아트홀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문화스포츠센터(통합건물형태)와 통합관리(관리팀, 문화팀, 체육팀)하고 있으며, 문화팀에서 남한산성아트홀의 무대 시설관리 및 공연기획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문화팀 인원 : 총 13명

- ◆ 도시관리공사의 조직 특성상 수익성 등 성과지표를 중시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 또한 경기도 내 문예회관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과반수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35개소의 문예회관 중 19개소(54.3%)가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음

[표 100] 경기도 내 문예회관 운영주체 현황

구 분		개소수	구성비(%)
직영		7	20.0
위탁	문화재단	19	54.3
	공단·공사	8	22.9
	민간위탁	1	2.9
	소계	28	80.0
합계		35	100.0

- ◆ 또한 경기도 내 문화재단이 있는 자치단체 15개소는 모두 지역 대표 공연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1] 타 지자체 문예회관 운영 현황

구 분	시설명	구 분	시설명
수원문화재단	수원SK아트리움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민회관	광명문화재단	광명시민회관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고양문화재단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오산문화재단	오산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예술회관
용인문화재단	용인포은아트홀, 용인시민회관	김포문화재단	김포아트홀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여주세종문화재단	세종국악당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		

- ◆ 남한산성아트홀의 경우도 문화재단에서 이관하여 문화예술 기획 전문가가 지역문화를 총괄하면서 공연, 전시, 교육, 공모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문예회관

- ◆ 문예회관은 1991년도에 건립된 연면적 1,463㎡의 소규모 시설로 공연장 및 세미나실(아카데미), 문화원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현재 운영은 광주시에서 직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1명)하고 있으며, 문화학교 사업은 광주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 ◆ 문예회관은 소규모의 노후된 시설로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6년 대관 7건, 2017년 대관 3건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이관하여 문예회관의 활성화 전략 모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 체제로 지속 운영 시 경쟁력 없는 시설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지역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남한산성아트홀의 서브(Sub) 시설로서의 활용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단, 광주 문예회관 관련 조례상 위탁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 필요

(3) 도서관

- ◆ 광주시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오폐도서관, 초월도서관, 곤지암도서관, 능평도서관 등 관내 5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직영체제로 운영 중임
 - 운영인력 : 총 55명(시소속 37명)
- ◆ 문화재단의 도서관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15개의 문화재단 중 6개소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립도서관을 일괄 운영하는 경우는 화성문화재단 1개소로 나타남. 그 외 경우는 특화주제 도서관 또는 복합문화시설 내 도서관이 위치한 경우 운영하고 있었음
 - 화성문화재단의 경우도 기존 시설관리공단 소속에서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 이관된 사례임

[표 102] 경기도 내 문예회관 운영주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수원문화재단	어린이도서관 3개소	-
성남문화재단	책테마파크	-
부천문화재단	도서관 多感(다감)	복사골센터 내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도서관	아람누리 내
용인문화재단	국제어린이도서관 / 청덕도서관	-
화성문화재단	시립도서관 12개소	화성시 도서관 일괄운영

- ◆ 최근 도서관은 독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로 문화재단으로 이관 시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 그러나 과거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공공도서관의 공익적 목적(장서량 확보) 및 사서직의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
- ◆ 또한 문화재단 설립 시 도서관의 위탁여부에 대해 논란이 다수 발생된 바 있음
 - 대구 북구문화재단 설립 시 설립 자체보다 구립도서관 수탁여부 논란(2017년)
 - 김포문화재단 설립 후 2~3년 뒤 공공도서관 문화재단 흡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한국사서협회에서 반발(2015년)한 바 있음. 현재 김포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시설은 담당하지 않고 있음
- ◆ 2015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을 직영으로 권고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한 바 있음
- ◆ 따라서 도서관은 기존의 직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자 함
 - 문화재단의 도서관 운영은 재단의 외형적 비대화를 가져와 안정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공공성을 가진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직영 운영의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단, 향후 문화적 측면이 강한 특화도서관 및 생활밀착형 도서관(작은도서관) 건립 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 체제를 유지하되 문화재단 설립 시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사업 등과 같은 연계사업 수행 필요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광주시 문화스포츠 센터

- ◆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는 남한산성아트홀과 연결된 통합 건물 형태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남한산성아트홀과 통합관리 하고 있음
- ◆ 복합시설인 고양어울림누리(체육시설 + 공연장 + 청소년시설)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설 특성별 운영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어울림누리체육센터(수영장, 체육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어울림극장 / 어울림미술관 / 별따기 배움터(예술교육) : 고양문화재단
 - 청소년 문화의 집 : 고양시 청소년문화재단
- ◆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 사업 특성상 문화재단 사업과는 거리가 있음에 따라 도시관리공

사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함

- ◆ 따라서 현재 통합된 시설관리 업무의 분리에 따라 남한산성아트홀과 문화스포츠센터의 전기, 전산 및 통신 등 설비 분리절차 등이 필요함
- ◆ 남한산성아트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장비에 대한 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계적 이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단계 : 시설관리업무 위탁(도시공사 통합관리)
 - 2단계(운영 3년차) : 문화재단 시설관리 업무 이관

■ 여성문화센터

- ◆ 여성회관은 현재 구시청 의회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 여성보육과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 경기권 문화재단 사례 검토결과 여성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현 여성회관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프로그램 강의실로 한정되어있으며, 현재 외국어, 창업취업반, 생활취미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문화재단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 체제(직영)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함

■ 청소년수련관

-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2014년 태전동에 연면적 9,715㎡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문화시설(공연장, 작은도서관), 동아리실(댄스/음악연습실, 동아리실), 체육시설(체육관, 헬스장)로 구성됨
- ◆ 청소년수련관은 2018년까지 청소년수련관은 직영(16명)으로, 외국어체험센터는 민간위탁((주)헤럴드, 5명)으로 별도 운영하였으나, 2019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으로 추진(계약기간 2년)
- ◆ 경기권 문화재단의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은 경기권 문화재단 15개소 중 군포문화재단 1개소로 나타남
 - 군포문화재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4개의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중
- ◆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15개 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7개소였음
 - 수원, 성남, 고양, 평택, 용인, 안양, 부천
- ◆ 문화재단 이관 시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단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어 체험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단, 현재 계약기간이 2년으로 만료 후 2021년부터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향후 이관 추진 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가능하므로 사전에 청소년단체로 지정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경기도 승인 필요)
- ◆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하여, 정관 상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명시한 비영리법인을 말함

■ 청소년 복지관련 시설

- ◆ 관내 청소년 복지관련 시설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33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154㎡)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민간위탁(서울장신대학교)으로 운영되고 있음
 -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직원 19명(시간제 10명)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직원 5명
- ◆ 청소년 복지시설의 사업은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 및 청소년 상담, 교육 및 복지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강화, 인식 개선 사업 등으로 나타남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은 복지적 성격이 강한 시설로 문화예술분야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음에 따라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군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복지시설 미운영

(5) 축제

■ 광주시 대표 축제

- ◆ 광주시 대표축제로는 남한산성문화제와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있음
 - 남한산성문화제 : 주최는 광주시 및 경기도, 주관은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담당
 - 광주왕실도자기축제 : 주최는 광주시, 주관은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담당
- ◆ 경기권 문화재단의 축제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15개 문화재단 중 14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3] 경기권 문화재단 운영축제

구 분	주최축제	주관축제	주최·주관축제
수원문화재단	—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연극축제 수원제즈페스티벌 수원국제음악제 수원문화재야행 정조대왕 능행차공동재현	—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축제	—	—
부천문화재단	—	—	부천어린이축제
광명문화재단	광명생활문화축제	—	광명인형극제
안산문화재단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여름미오페스티벌
안양문화예술재단	스마일맘페스티벌	안양시민축제 안양충훈벚꽃축제	—
고양문화재단	—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행주문화제	—
오산문화재단	—	독산성문화제	오산천두바퀴축제
군포문화재단	—	군포철쭉축제 평생학습축제 청소년진로박람회	군포생활문화제
하남문화재단	—	—	이성산성문화축제 부침개막걸리페스티벌
용인문화재단	—	—	용인거리축제
화성시문화재단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화성벚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봄사랑가족축제 매향리평화소풍 화성시가족사랑축제 동탄예술시장	파크페스티벌 병점로드페스티벌
여주세종문화재단	—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세종대왕문화제	명성황후송모제
의정부예술의전당	천상병예술제	—	의정부음악극축제 국제가야금축제 한여름밤의 힐링U

주 :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축제(불특정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는 밑줄로 표시함

- ◆ 문화재단에서 축제사업을 수행할 경우 축제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의 참여가 활발한 축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시에서 축제를 개최할 경우 후원, 기부 등의 지원에 제약이 있으므로 재단의 축제 및 행사 운영 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축제 대행사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은 유지하되, 전문성을 높인 축제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문화재단과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계획함
 - 축제의 예산은 시에서 관리하되, 문화재단은 축제추진위원회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
 - 재단 설립 초기에는 축제 주관기관 중 하나로 참여하여 지역 내 협력을 통한 기존 축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신규 축제 개발·운영 업무 수행 필요
 - ※ 문화재단은 신규축제 개발을 주력으로 하되, 2개 축제 주관자에 대해 관련 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 진행

■ 지역 주최 축제

- ◆ 퇴촌면은 1970년대부터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품질이 뛰어난 토마토를 생산하는 전국적인 토마토 주산지임
- ◆ 소비자에게 좋은 토마토를 판매하고, 팔당호 청정 지역에서 생산하는 무공해 토마토를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퇴촌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시 퇴촌면에서 주최, 퇴촌토마토축제 위원회에서 주관함
- ◆ 퇴촌토마토축제의 경우 남한산성문화제와 광주왕실도자기축제와 달리 지역적 특색이 강한 축제로서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단체

■ 시립예술단(광지원농악회)

- ◆ 광주시 관내 시립예술단으로는 광지원농악회가 있으며, 2010년 7월 창단함
- ◆ 광지원농악회는 현원 18명(정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형태는 위촉직임
 - 단무장 1명, 상임단원 13명, 비상임단원 4명으로 구성
- ◆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본 결과 15개 문화재단 중 용인문화재단 1개소로 나타났으며,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소속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술단 운영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있음
 - 용인문화재단 : 2001년 문화재단 설립 후 2006년 시립예술단 이관(한 차례 무산)
 - 문화재단으로 사업 이관 당시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2개 단체만 존재하였으며, 문화

재단으로 이관 후 용인시립합창단을 창단함

- ◆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직접 관리할 경우 재단이 가진 전문성이 가미되어 시너지 효과의 발
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나 문화재단 이관 시 소속단원의 처우와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견 조
율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예술단의 소속변경을 추진한 사례를 볼 때에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충분한 기
간을 두고 진행함

(7) 종합

- ◆ 광주시의 문화재단 관련 사업 검토 결과 광주문예회관, 남한산성아트홀, 청소년수련관은 이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와 공동 주
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재단의 청소년단체 승인(경기도) 필요

[표 104] 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결과

구 분	검토 대상사업		이관 여부
문화시설	공연시설	광주 문예회관	○
		남한산성 아트홀	○
	도서시설	시립도서관	△ (장기적 대상사업)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체육센터	x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상담센터	x
		여성문화센터	x
축제	남한산성문화제(10월)		△ (공동 주관)
	광주왕실도자기축제(4~5월)		△ (공동 주관)
	퇴촌도마토 축제(6월)		x
단체	시립예술단(광지원농악회)		x

나. 광주시 문화사업 이관검토

- ◆ 광주시 문화관광과, 광주문화원,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사업들 중 문화재단으로의 이관 가능 사업을 검토함
- ◆ 광주시 문화관광과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분야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예술과 관련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관사업으로 제시함
- ◆ 문화예술관련 단체의 경우 고유의 사업영역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문화재단 설립으로 기존 문화예술 단체의 입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이관사업을 선정함
- ◆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광주시 및 관련 단체의 문화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105] 광주시 및 관련 단체의 이관 대상사업

구 분	사업명		검토결과
광주시 문화관광과 (2019년)	너른고을 광주 성악 콩쿠르		○
	불량콘서트_관 3.0		○
	숨씨마켓_3.0		○
	2020년 해돋이 행사		○
	광주시 할로윈데이트		×
	문화누리카드		×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광주문화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
	책자 발간 사업		×
	축제 및 행사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
		박물관 미술관 공동전시회	○
		문화의 날 행사	×
	민속문화	전통제례계승사업	×
		덩콩네 줄타기 복원사업	×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한마당	○
한국예총 광주시회	광주예총	광주예술 책자발간, 광주예술제	× (고유활동사업)
	음악협회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총 5개 사업	
	연극협회	창작연극제 등 3개 사업	
	무용협회	조재연 출판 등 2개 사업	
	연예협회	청소년 트롯가요제 등 2개 사업	
	문인협회	광주문학 발간, 어울림 시화전	
	미술협회	너른고을 미술제	
	국악협회	국악한마당 2회	

다. 광주문화재단 사업범위(안)

- ◆ 광주문화사업 검토결과를 토대로 광주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제시함
- ◆ 기존 이관사업 및 광주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 발굴 운영을 통해 **광주형 문화활성화** 도모 필요
 -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의 문화사업을 검토한 결과 문화정책과 문화인력, 그 밖의 특화사업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영역에 대한 신규 사업 필요
 - 또한 광주시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홍보에 관한 적극적 활동이 필요할 것임
- 광주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 장애요인으로 정보 부족(3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광주시 문화예술 활동에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 및 홍보 강화를 2순위(21.0%)로 응답함

[표 106] 광주문화재단 사업범위(안)

구 분	이관사업	재단 사업방향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 문예회관 • 청소년수련관 • 남한산성아트홀	• 현 문화시설의 활성화 방안 모색 •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연계
문화정책 수립 및 문화진흥 활성화	-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계획 수립 • 외부 공모사업의 적극적 유치 • 문화재단 사업 관련 홍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지원	• 너른고을 광주 성악 콩쿠르 • 솜씨마켓 • 박물관 미술관 공동전시회 •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기획·운영
문화행사 축제	• 남한산성문화제 • 광주왕실도자기축제 • 불랑콘서트 • 해돋이행사/ 자연채 행복밥상 •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 정월대보름민속놀이 •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한마당	• 지역문화예술 신규축제 개발·운영 •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 •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 - 현 자연채 밥상을 월 1회 다양하고 차별화된 컨셉으로 확대·운영
문화예술 교육	• 남한산성아트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확대사업 • 창의예술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 • 지역문화기획자 과정 교육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 찾아가는 문화활동 • 거리로 나온 예술 •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 솜씨마켓	• 광주형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사업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육성·지원 등 •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시행 -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문화인력 양성	-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그밖의 특화사업	-	• 지역문화 콘텐츠 브랜드화 사업 • 국제문화 교류사업

2.3 문화재단 대상사업의 수행기관 중복도 검토

■ 광주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17)」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타당성 검토 시 지자체의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 광주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는 광주시 상수도, 광주시 하수도,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민장학회 총 4개의 기관이 있음
 - 상수도·하수도·시민장학회의 경우 문화재단과 성격 및 대상사업이 매우 상이함
 -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경우 현재 남한산성 문화스포츠센터(남한산성아트홀)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의 성격 상 운영 어려움 존재
 - 남한산성아트홀 관리 운영 업무를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문화재단 설립 시 전 문적 문화시설 운영관리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 문화재단 설립 시 남한산성 아트홀 운영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의 수행으로 기존 기관들의 업무영역과 차이점이 존재함
- ◆ 즉,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시설의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타 기관과의 기능 중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107] 광주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 분	광주시 상수도	광주시 하수도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시민장학회
설립형태	직영기업	직영기업	지방공사	출연기관
설립일	1997. 11. 09	2005. 1. 10	1999. 12. 8	1999
설립 조례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광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광주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 적	주민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함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광주시 관내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진흥사업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주요 기능	상수도 운영관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지역개발사업 시설운영사업	-

2.4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 방안 검토

■ 문화예술 단체 비교

- ◆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예총의 3개 기관을 비교한 결과 지역문화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설립 목적은 다소 유사하나, 서비스 대상 및 주요사업에 있어 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8] 광주시 문화예술 관련 단체

구 분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설립근거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목적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지역문화의 창달과 공공문화서비스 제공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
운영재원	지자체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지자체 보조금 개인 또는 법인 재산의 출연 및 기부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사업 수입금
주요 사업	· 문예회관 및 남한산성아트홀 등 문화시설 운영업무 전반 · 문화예술 진흥사업 - 문화예술 공모사업(국도비) - 문화예술 정책개발 ·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 남한산성문화제 및 왕실도자기축제 -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기획, 발굴, 운영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전, 전승 ·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 수집, 보존 · 지역문화행사 개최 ·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 문화복지사업	·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 예술문화인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 예술문화홍보를 위한 종합 예술지 발간 및 보급 · 연구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등 개최 · 기타 부대사업
서비스 대상	모든 주민	회원 및 일반주민	회원(주로 예술인)

■ 문화예술단체별 역할관계 정립

- ◆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광주시 내 문화예술 관련 주체간의 역할 정립 및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광주 문화원 및 한국예총 광주시지부의 추진사업을 살펴본 결과 광주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 계승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한국예총 광주시회의 경우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 ◆ 문화재단 설립 시 연계 협력방안으로는 광주문화원의 경우 지역전통문화 관련 교육과정 프로그램, 전통문화예술 교육인 양성과정 등 전통문화예술관련 협력 사업의 기획·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예총 광주시회의 경우 지역예술축제, 예술교육사업, 문화재생사업 등 지역전문 예술가를 활용한 협력사업의 기획·운영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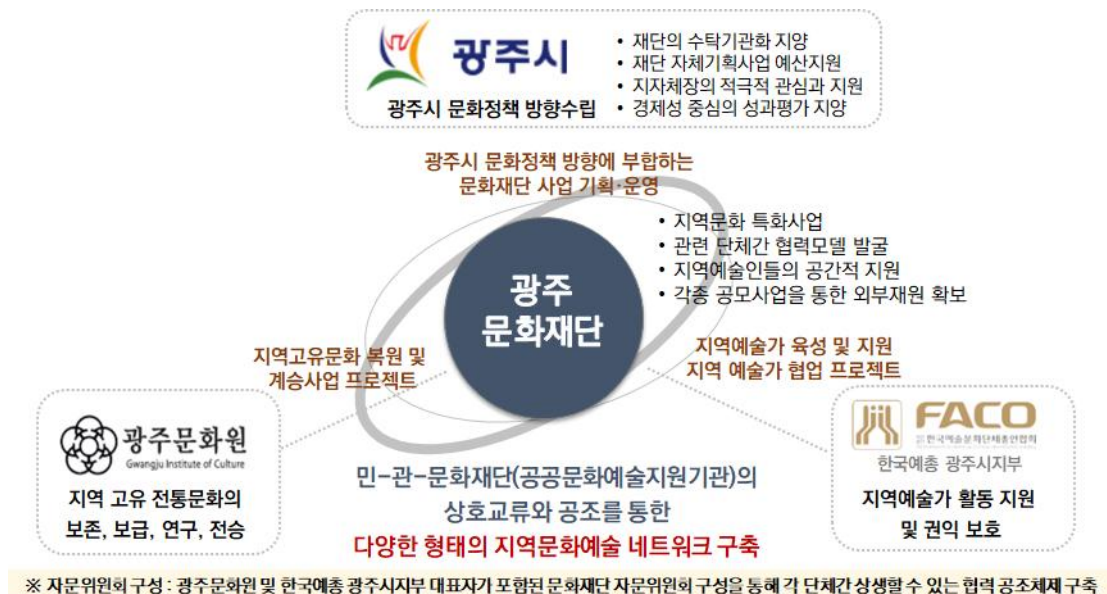
[표 109] 광주시 문화예술 단체별 사업내용

구 분	광주문화원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기본현황	· 설립일 : 1987년 1월 · 조직 : 원장, 부원장(5), 이사(24), 감사(2), 직원(3)	· 설립일 : 2003년 4월 · 조직 : 9개 협회, 1,944명 – 연예협회(6개분과), 음악협회(5개 단체), 연극협회(6개 극단), 무용협회(3개 단체), 문인협회(4개 단체), 미술협회(5개분과), 영화협회, 국악협회, 사진협회
추진사업 (2018)	· 광주문화원 및 사무국 운영(67백만원) · 문화학교 및 책자발간 등(93백만원) – 문화학교 운영비, 광주문화소식지 발간 등 · 행사사업 보조(77백만원) –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제4회 광주시 문화의 날 행사 등 · 전통제례계승사업(50백만원) – 유림 선현지 문화탐방, 선현추모행사 지원 등 · 민속문화사업(50백만원) – 덩쿨네 줄타기 복원사업, 예절교육사업 등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교육사업(20백만원)	· 책자 발간 등 경상사업(13백만원) – 광주예술 책자발간, 광주문화 발간, 어울림 시화전 · 운영비 보조(46백만원) – 예총 문화예술사업,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 행사사업 보조(218백만원) – 효 국악한마당 – 어울너을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 보훈가족과 노인을 위한 조재연 출판 – 시민과 함께하는 한범택 춤의 세계 –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정기문화공연 –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예 산	357백만원	277백만원
문화재단 연계 협력방안	지역전통문화 관련 교육과정 프로그램, 전통문화예술 교육인 양성과정 등 전통문화예술관련 협력사업 기획·운영	지역예술축제, 예술교육사업, 문화 재생사업 등 지역전문 예술가를 활용한 협력사업 기획·운영

- ◆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광주시와 광주문화원,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등 문화관련 단체와의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 광주시 문화예술관련 주체별 업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각 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업사업을 통해 민-관-문화재단(공공문화예술지원기관)의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 또한 원활한 소통 및 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해 광주문화원 및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대표자가 포함된 문화재단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각 단체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공조체제 구축이 요구됨

[표 110]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영역 구분

구분	업무영역
광주시	· 문화예술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및 집행 · 상급기관(문체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 ·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인프라 구축사업 및 보수사업 · 문화재단, 문화관련 단체(기관)의 재정 지원 및 감독
광주문화재단	· 광주시 문화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문화재단 사업기획·운영 · 광주시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기획·운영 · 광주시 문화관련 단체(기관)과의 협업사업 기획운영 - 지역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지역고유문화 복원 및 계승사업 프로젝트 · 광주시만의 지역문화 특화사업 기획·추진
광주문화원	· 지역 고유문화의 연구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전통문화 행사 기획운영 · 광주시 향토사 발굴 및 보급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연구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등) · 예술문화인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 예술문화 홍보를 위한 종합예술지 발간 및 보급



[그림 25] 문화예술단체간 역할관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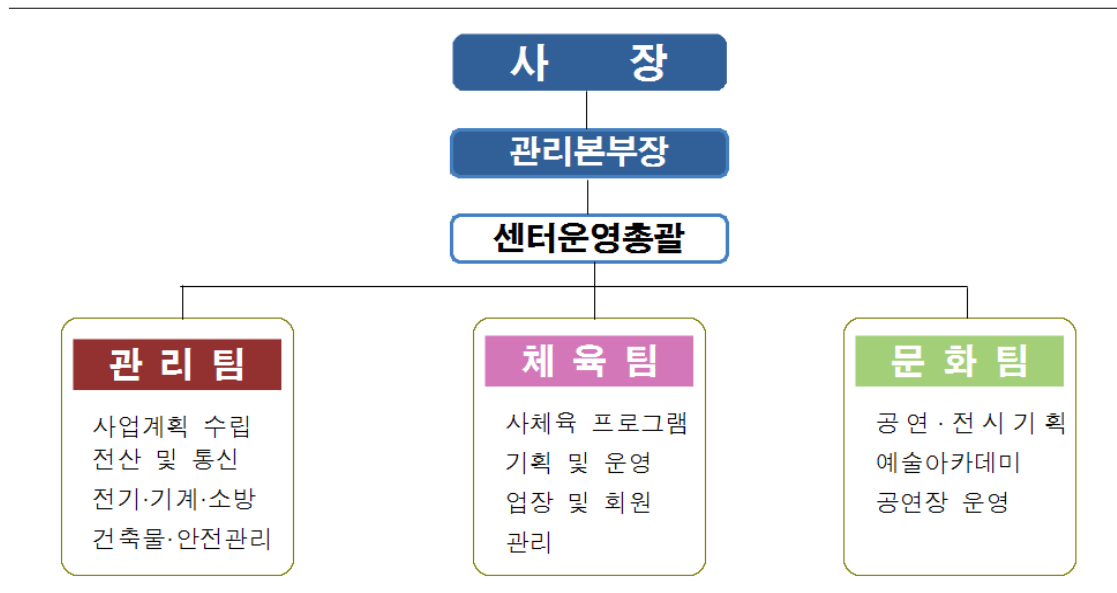
3. 조직 및 인력계획

3.1 이관시설의 기존 인력 검토

가. 남한산성아트홀

■ 현 운영인력

- ◆ 현재 남한산성아트홀은 문화스포츠센터와 함께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팀, 체육팀, 문화팀으로 구성됨
- ◆ 남한산성 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트홀 및 문화스포츠센터의 전체적 사업계획 및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26] 광주 도시관리공사 조직도

- ◆ 남한산성아트홀 운영을 담당하는 문화팀은 13명(정규직 9명, 공무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명의 추가 인원에 대해 채용 공고 중으로 향후 총 16명 운영 예정임
- ◆ 문화팀 13명의 담당인력별 직급 및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111] 문화팀 인력별 직급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업무	비 고
1	5급(팀장)	· 팀 중장기 계획 및 예산관리 · 연간 기획공연 수립 및 관련 홍보 마케팅	기존인력
2	6급(과장)	· 대극장 무대조명 감독	기존인력
3	6급(과장)	· 대극장 무대음향 감독	기존인력
4	7급(대리)	· 대소극장 대관(정기, 수시대관) 업무 및 부서 서무 · 공동기획 및 외부지원사업 관련 업무	기존인력
5	8급(주임)	· 소극장 무대음향 감독	기존인력
6	8급(주임)	· 소극장 무대기계 감독	기존인력
7	8급(주임)	· 소극장 무대조명 감독	기존인력
8	7급(대리)	· 공연기획 및 홍보 마케팅(언론보도/매체홍보) · 상설공연(스테이지온) 기획 및 운영	기존인력
9	6급(과장)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지원사업(교육부문) · 전시실 운영, 대관 및 외부지원사업(전시부문)	기존인력
10	공무직(사원)	· 영유아, 성인 예술아카데미 운영	기존인력
11	공무직(사원)	· 영유아, 성인 예술아카데미 운영	기존인력
12	공무직(사원)	· 시설안내 (티켓판매 및 관리)	기존인력
13	공무직(사원)	· 대소극장 하우스매니저 · 공연 홍보마케팅 업무지원	기존인력
14	6급(과장)	· 무대기계	채용 진행중
15	7급(대리)	· 공연기획	채용 진행중
16	8급(주임)	· 공연기획	채용 진행중

■ 유사규모 공연장 운영인력과의 비교

- ◆ 남한산성아트홀의 기존 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단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사규모 공연장인 의정부예술의전당, 군포문화예술회관, 하남문화예술회관을 담당하는 운영인력을 조사함
- ◆ 유사 공연장 운영인력을 검토한 결과 최소 17명(군포) ~ 최대 27명(하남)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 남한산성아트홀의 인력은 최저 수준과 유사한 인력인 16명임
- ◆ 남한산성아트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재단 설립 시 남한산성아트홀의 공연기획, 무대, 교육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현 수준(16명)과 동일하게 계획하고자 함

[표 112] 유사규모 공연장 운영인력 비교

구 분	남한산성아트홀	의정부예술의전당	군포문화예술회관	하남문화예술회관
주요시설	대공연장(1,068석) 소공연장(270석)	대공연장(1,025석) 소공연장(286석)	대공연장(1,134석) 중공연장(428석) 야외공연장	중공연장(911석) 소공연장(249석) 야외공연장
공연일수	249일	288일	169일	187일
연 이용객	138,063	280,034	244,036	107,157
운영주체	도시관리공사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군포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운영인력 ¹⁾	16명 (팀장 1명, 무대관련 6명, 교육전시관련 3명, 공연기획 및 시설안내 6명)	27명 (문화사업본부장 1명, 공연기획부 9명, 교육전시부 9명, 무대기술부 8명)	17명 (공연기획 7명, 무대예술 9명, 교육사업 1명)	24명 (공연기획 6명, 홍보마케팅 4명, 무대기술 7명, 시민문화 7명)

주 1) 남한산성아트홀과 동일여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관리 인원 제외
출처 :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기준 / 인력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나. 청소년수련관

■ 현 운영인력

-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2018년까지 직영으로 운영,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련관 내 외국어체험센터는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
- ◆ 현 검토 시점은 민간위탁 전환 단계로 운영인력이 변동적이기 때문에, 직영 시 인력을 기준으로 검토 함
-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인력은 총 21명임
 - －청소년수련관 : 16명 / 외국어체험센터(민간위탁) : 5명
- ◆ 청소년수련관에서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수용인원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급수와 인원을 제시하고 있음

[표 113]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인, 2급 청소년지도사 1인, 3급 청소년지도사 2인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수용인원은 770명으로 청소년지도사 5명이 필요하며, 현재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는 5명으로 법적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음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추가(1·2·3급) 1명
- ◆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유사규모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력을 검토함

[표 114] 유사규모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력 비교

구분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분당 정자청소년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연면적	9,715㎡	7,328㎡	13,909㎡	8,216㎡
운영주체	직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용인시청소년 미래재단
운영인력	총 21명 (청소년수련관 16명, 외국어체험센터 5명)	총 29명 (관장1명, 운영지원팀 7명, 청소년활동팀 14명, 문화사업팀 7명)	총 18명 (관장 1명 운영지원팀 6명 교육사업팀 4명 활동사업팀 7명)	총 19명 (관장1 관리팀 5 활동팀 7 방과후아카데미 3 교육문화 3)

- ◆ 유사규모의 청소년수련관 인력을 검토한 결과 최소 18명 ~ 최대 29명으로 나타남
 - 분당 정자청소년수련관(29명)의 경우 제외 시 18명 ~ 20명으로 유사 수준임
 -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각 수련관별 문화사업팀을 별도로 두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당 정자청소년수련관 문화사업팀에서는 청바지 프로젝트, 진로캠프, 교육공동체 사업(학교 맞춤 프로그램), 각종 공모사업, 평생교육 강좌 운영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유사규모 청소년수련관의 인력과 비교 결과 유사수준으로 나타나 재단설립 시 현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자 함

3.2 광주문화재단 인력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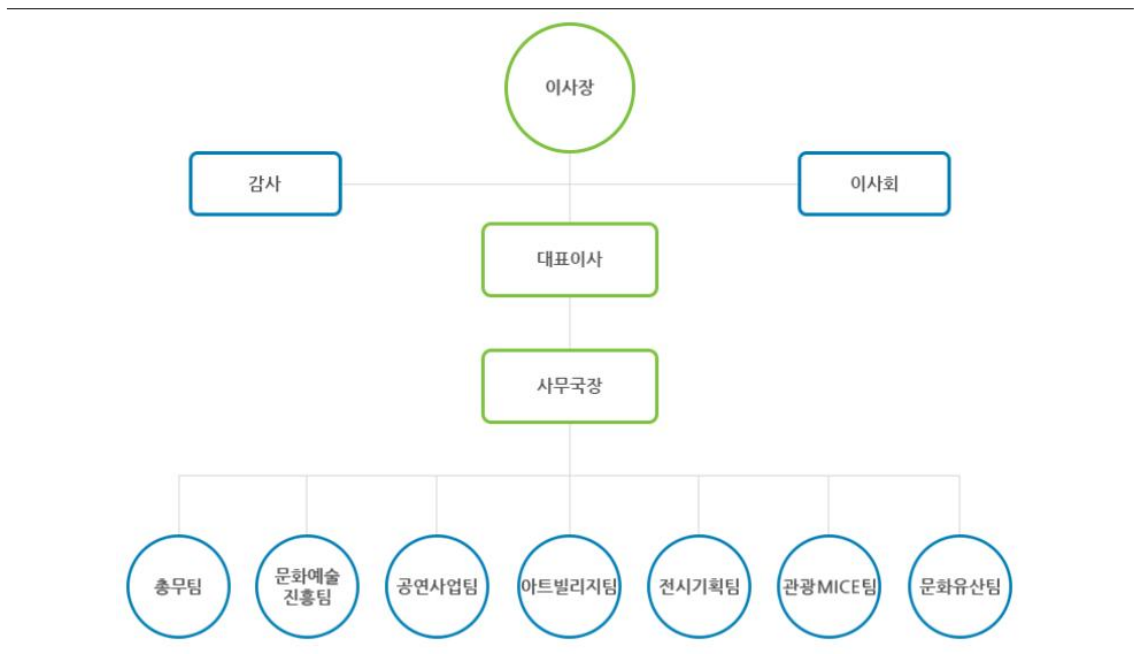
가. 유사규모 문화재단 조직 검토

- ◆ 유사규모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인 의정부예술의전당, 김포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을 검토함
- ◆ 의정부예술의전당
 - －운영시설 및 축제 : 예술의전당(공연장, 전시장), 천상병예술제 의정부음악극축제, 국제가야금축제, 한여름밤의 힐링U
 - －운영조직 : 2본부 5부 2실
 - 경영행정본부 : 행정지원부, 교육전시부, 경영전략실
 - 문화사업본부 : 공연기획부, 홍보마케팅부, 무대기술부, 축제운영실
 - －운영인력 : 정원 40명(현원 40명)



[그림 27] 의정부예술의전당 조직도

- ◆ 김포문화재단
 - －운영시설 및 축제 : 김포아트홀, 통진두레문화센터, 월곶생활문화센터, 김포아트빌리지, 김포국제 조각공원
 - －운영조직 : 1국 7팀
 - 사무국 : 총무팀, 문화예술진흥팀, 공연사업팀, 아트빌리지팀, 전시기획팀, 관광MICE팀, 문화유산팀
 - －운영인력 : 정원 45명(현원 44명)



[그림 28] 김포문화재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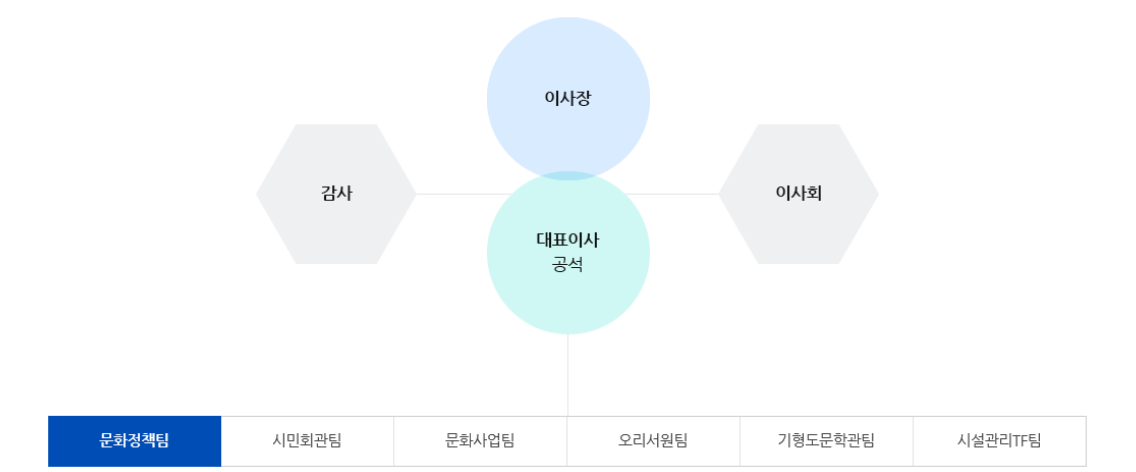
◆ 광명문화재단

－운영시설 및 축제 : 광명시민회관, 광명시민운동장, 기형도문학관, 문화의집(2개소),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오리서원(문화유적지), 광명생활축제 및 광명인형극제

－운영조직 : 6팀

· 문화정책팀, 시민회관팀, 문화사업팀, 오리서원팀, 기형도문학관팀, 시설관리TF팀

－운영인력 : 현원 35명



[그림 29] 광명문화재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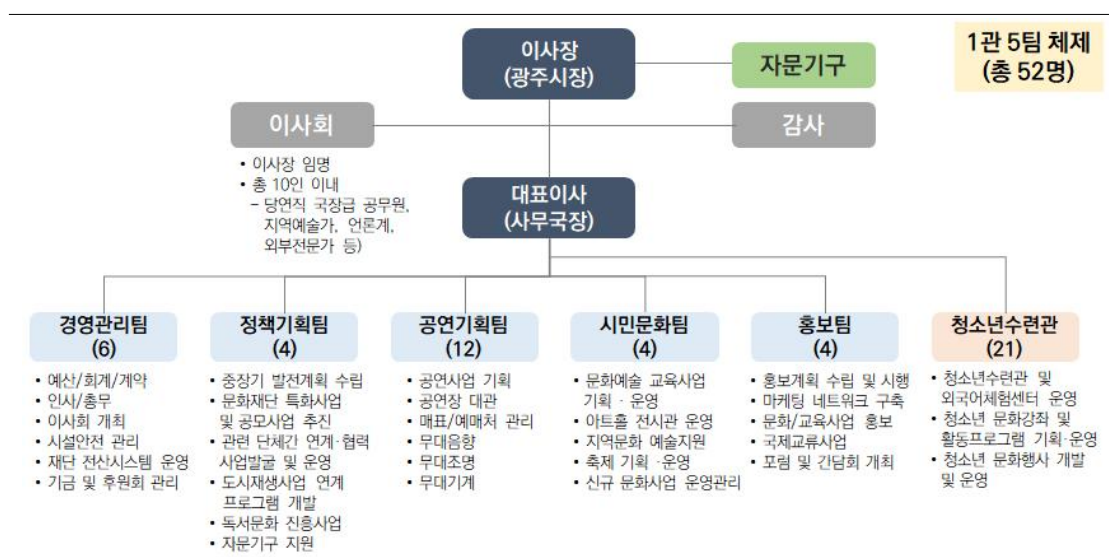
나. 조직 및 인력계획(안)

■ 기본방향

- ◆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17)」에 의한 조직과 정원 운영원칙에 따라 조직 및 인력계획을 수립함
 - 기관 하부조직은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며,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함
 -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조직과 정원을 운영토록 함
 -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상위직 위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함
 -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에는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함
- ◆ 특히 조직구성에 있어 문화시설의 수탁기관화를 지양하기 위해 정책기획팀 및 홍보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문화재단으로서의 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책기획팀 :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운영, 외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운영예산 절감, 광주시민의 특화사업 기획·운영 등을 위한 문화정책팀 신설
 - 홍보팀 :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등의 홍보 부족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적극적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팀 신설
 - 광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 장애요인의 1순위 정보 부족(30.9%), 광주시 문화예술 활동 요구 항목의 2순위 정보 및 홍보 강화(21.0%)

■ 조직 및 인력계획

- ◆ 광주문화재단의 조직 및 인력은 1관 5팀 체제, 총 52명으로 계획함
 - 청소년수련관(21명), 경영관리팀(6명), 정책기획팀(4명), 공연기획팀(12명), 시민문화팀(4명), 홍보팀(4명)



[그림 30] 광주문화재단 인력계획(안)

※ 기존 광주도시관리공사 문화팀의 16명(채용 진행 중 인력(3명) 포함) 인력은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 인력별 해당업무에 따라 공연기획팀 12명, 시민문화팀 3명, 홍보팀 1명으로 이전배치

[표 115] 팀별 업무범위

구 분	업무범위
경영관리팀	· 경영평가, 물품관리, 재단규정 정비 · 인사, 노무, 복무 관련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정기 및 수시 이사회 개최 · 재단 예산, 결산 및 회계업무, 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 · 재단 전산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 시설안전관리 · 기금 및 후원회 관리
정책기획팀	·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문화재단 특화사업 및 외부 공모사업 추진 · 신규 문화사업 개발 및 운영추진 계획 수립 · 관련 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독서문화진흥사업 · 전문가 자문기구 지원
공연기획팀	· 남한산성아트홀 업무전반 - 기획공연, 대관공연 운영 - 공연 티켓 예매 등 관리, 하우스매니저 · 무대음향 / 무대기계 / 무대조명 관리·감독
시민문화팀	· 남한산성아트홀 예술아카데미 운영 · 문화예술 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 남한산성아트홀 전시관 운영 · 남한산성문화제 및 왕실도자기 축제 기획·운영(축제추진위 공동주관) · 신규 문화예술 축제 기획 및 운영 · 신규 문화사업 운영 및 관리
홍보팀	· 광주문화재단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연 홍보 및 마케팅네트워크 구축 · 문화사업 및 교육사업 홍보 · 국제교류사업 추진 · 관련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등 포럼 및 간담회 개최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관 및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 청소년수련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특화사업 운영 · 국내외 교류 협력 추진 · 청소년 문화강좌 및 성인 문화강좌 기획·운영 · 청소년 문화축제 개발 및 운영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단계별 운영조직 및 인력

- ◆ 연차별 운영사업에 따라 단계별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함

[표 116] 단계별 조직 및 인력계획

구 분	조 직	인원(명)	비 고
1단계 (2020년)	5팀 체제 (대표이사(1), 경영관리(4(파견2 포함)), 홍보(4), 공연기획(12), 정책기획(4), 시민문화(4))	29 (파견인력 제외시 27)	· 남한산성아트홀, 문예회관,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 - 남한산성아트홀 시설관리 위탁(도시공사) : 전기, 기계설비, 소방 등
2단계 (2021년)	1관 5팀 체제 (대표이사(1), 경영관리(4(파견2 포함)), 홍보(4), 공연기획(12), 정책기획(4), 시민문화(4), 청소년수련관(21))	50 (파견인력 제외시 48)	· 1단계 사업 + 청소년수련관
3단계 (2022년)	1관 5팀 체제 (대표이사(1), 경영관리(6), 홍보(4), 공연기획(12), 정책기획(4), 시민문화(4), 청소년수련관(21))	52 (파견인력 없음)	· 2단계 사업 + 남한산성아트홀 시설관리(경영관리 4명 충원)

■ 직급별 운영인력

- ◆ 타 문화재단 직급체계를 검토한 결과 광명 및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제외하고 대표이사와 함께 실무부서를 관할하는 본부장(또는 사무국장)을 두고 있음
- ◆ 인건비 직급체계는 재단별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화재단 팀장은 지방공무원 6급 수준임

[표 117] 문화재단 직급체계 사례

재단명	정원(명)	기관장	조직		인건비 직급체계
안양문화예술재단	69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1관 6부	3급 ~ 9급
안산문화재단	57	대표이사	본부장(2)	2본부 6부 1국	본부장 / 2급 ~ 6급
김포문화재단	45	대표이사	사무국장	1국 7팀	3급 ~ 7급
의정부예술의전당	40	상임이사	본부장(2)	2본부 5부 2실	6급 ~ 9급
하남문화재단	37	대표이사	본부장	2관 1팀	1급 ~ 5급
광명문화재단	35	대표이사	-	6팀	3급 ~ 7급
오산문화재단	27	상임이사	정책실장	4팀	정책실장 / 4급 ~ 7급
여주세종문화재단	25	상임이사	-	3팀	6급 ~ 9급

- ◆ 문화재단 직급별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으며, 인건비 체계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고용 승계(16명)가 필요하며, 광주시 산하 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인건비 직급 체계를 준용함

－인건비 체계 : 2급 ~ 8급, 공무원

- 대표이사 2급, 사무국장 3급, 팀장급 4~5급 적용

- ◆ 단계별 직급별 운영인력 계획은 다음과 같음

－1단계 : 27명 (2급 1명, 5급 4명, 6급 7명, 7급 6명, 8급 7명, 공무원 4명)

[표 118] 1단계 운영인력(2020년)

구 분	계	대표이사	경영기획팀	정책사업팀	공연기획팀	시민문화팀	홍보팀	청소년수련관
계	27	1	2	4	12	4	4	—
2급	1	1	—	—	—	—	—	—
3급	—	—	—	—	—	—	—	—
4급	—	—	—	—	—	—	—	—
5급	4	—	—	1	1	1	1	—
6급	6	—	—	1	3	1	1	—
7급	5	—	1	1	2	—	1	—
8급	7	—	1	1	4	—	1	—
공무직	4	—	—	—	2	2	—	—

※ 경영기획팀 2명 공무원 파견인력은 제외한 인원임

－2단계 : 48명 (2급 1명, 4급 1명, 5급 7명, 6급 9명, 7급 7명, 8급 16명, 공무원 7명)

[표 119] 2단계 운영인력(2021년)

구 분	계	대표이사	경영관리팀	정책기획팀	공연기획팀	시민문화팀	홍보팀	청소년수련관
계	48	1	2	4	12	4	4	21
2급	1	1	—	—	—	—	—	—
3급	—	—	—	—	—	—	—	—
4급	1	—	—	—	—	—	—	1
5급	7	—	—	1	1	1	1	3
6급	9	—	—	1	3	1	1	3
7급	7	—	1	1	2	—	1	2
8급	16	—	1	1	4	—	1	9
공무직	7	—	—	—	2	2	—	3

※ 경영기획팀 2명 공무원 파견인력은 제외한 인원임

-3단계 : 52명 (2급 1명, 4급 2명, 5급 7명, 6급 11명, 7급 8명, 8급 16명, 공무원 7명)

[표 120] 3단계 운영인력(2022년)

구 분	계	대표이사	경영관리팀	정책기획팀	공연기획팀	시민문화팀	홍보팀	청소년수련관
계	52	1	6	4	12	4	4	21
2급	1	1	—	—	—	—	—	—
3급	—	—	—	—	—	—	—	—
4급	2	—	1	—	—	—	—	1
5급	7	—	—	1	1	1	1	3
6급	11	—	2	1	3	1	1	3
7급	8	—	2	1	2	—	1	2
8급	16	—	1	1	4	—	1	9
공무원	7	—	—	—	2	2	—	3

- ◆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며, 직원 채용 또한 외부인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표 121] 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조건 사례

구 분	대표이사 자격조건
수원문화재단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지닌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2년 이상 재직 경력자 · 문화예술분야 20년 이상 경력자 ·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경영전문가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부산문화재단	· 문화예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자 · 문화예술분야 단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정부기관 등 10년 이상 경력자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3.3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 변동요인 검토

■ 공무원 인력 감축 효과

- ◆ 문예회관 관리인력 1명, 남한산성문화제 운영 인력 0.5명, 왕실도자기축제 운영 인력 0.5명 등 총 2명의 공무원 인력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22] 공무원 인력감축 효과

부서		사무	해당인력	해당업무 비율	감축인원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문예회관 관리	1	100%	1
	문화예술팀	남한산성문화제	1	50%	0.5
기업지원과	기업도예팀	왕실도자기축제	1	50%	0.5
합계			—	—	2.0

■ 광주시관리공사 인력 변동

- ◆ 광주시관리공사의 남한산성아트홀 업무 관련 문화팀 16명의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표 123] 공무원 인력감축 효과

부서		사무	해당인력	해당업무 비율	감축인원
관리본부	본부장	업무 총괄	1	1	—
	관리팀	시설관리 및 위수탁업무 등	12	12	—
	문화팀	남한산성아트홀 관련	16	—	16
	체육팀	문화스포츠센터 관련	—	—	—
합계			29	13	16

※ 현 문화팀 인력은 14명이나, 신규 채용 진행 중인 인원(2명)을 포함하여 산정

■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감축 효과

- ◆ 재단 설립으로 인하여 공무원 2명 감축, 도시관리공사 16명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운영계획

4.1 비전도출을 위한 SWOT 분석

■ SWOT 분석

- ◆ 광주문화재단의 비전을 설정하기에 앞서 현 여건의 SWOT 분석을 실시하여 강점과 기회를 강화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재단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함

① 강점(Strength)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속적 인구 증가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대표 문화시설 남한산성아트홀 위치
-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관심도 및 향유 요구도 증가
-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약 70%)

② 약점(Weakness)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 택지지구와 구도심간 격차 심화
-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 증가로 정주의식 부족, 정체성 미약
-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야외 공연시설의 부족
- 문화관련 종합 정책 및 계획 수립 기관의 부재에 따라 문화관련 특화사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문화예술 예산부문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③ 기회(Opportunity)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고, 지역 및 생활문화를 강조하는 등 지역문화 패러다임 변화
-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 운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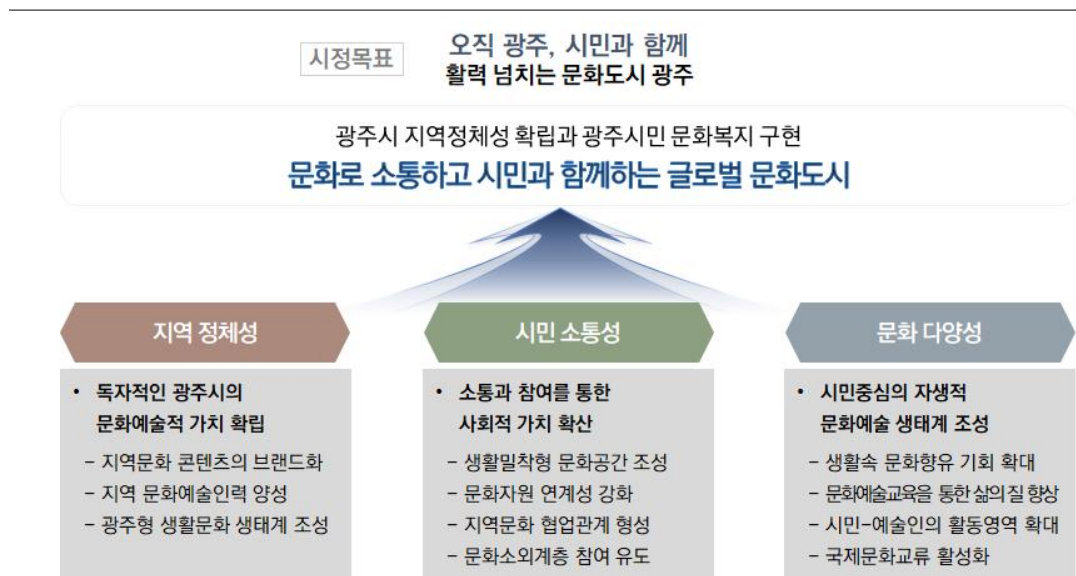
④ 위협(Threat)

-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논란 존재
 - 단,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 시 불공정한 비전문적 인력의 채용, 관련 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소통 불화로 인한 반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됨
- ◆ 광주시 문화여건 분석 결과 광주 문화재단 설립·운영 시 광주시민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하는 방향성 아래 다양한 사업의 기획·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2 운영 기본방향

가. 비전 및 목표

- ◆ 비전 도출을 위해 앞서 광주시의 내외부 환경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주시민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있으나,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려 문화로 소통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또한 광주시의 지역정체성이 미약하며, 정주의식이 부족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광주시민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이 요구됨
- ◆ 현재 광주시의 시정목표는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시정목표와 현 광주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한 문화재단의 비전은 ‘문화로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설정함
- ◆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① 독자적인 광주시의 문화예술적 가치 확립, ②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③ 시민중심의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의 3대 목표를 설정함
- ◆ 3가지 목표별 사업방향은 다음과 같음
 - 독자적인 광주시의 문화예술적 가치 확립 : 지역문화 콘텐츠의 브랜드화, 지역 문화예술인력 양성, 광주형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문화자원 연계성 강화, 지역 문화 협업관계 형성, 문화소외계층 참여유도
 - 시민중심의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민-예술인의 활동영역 확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그림 31] 비전 및 목표

나.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2020~2021) : 제도적 준비와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단계
 - ◆ 남한산성아트홀의 기획공연 확대 및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단계
 - ◆ 문화예술 관련 DB(광주문화예술뱅크 시스템) 구축 및 연계활용
 - ◆ 시민, 예술가, 관련 단체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실천하는 단계
- 2단계(2022~2023) : 문화예술도시 광주를 알리는 브랜드 가치 강화 단계
 - ◆ 광주만의 특색을 가진 사업추진을 통한 정체성 확보
 - 광주문화재단 정책사업의 브랜드화(예시 : 성남(사랑방문화클럽),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광주 문화컨텐츠의 브랜드화
 - ◆ 품격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수준높은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등 전문성 확보
- 3단계(2024) :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주 문화예술의 국제화 단계
 - ◆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글로벌 이미지 확립 단계
 - 광주 문화 컨텐츠 발굴 및 지속적 개발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확립
 -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별 문화예술 활성화
 -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1단계 (2020~2021)	2단계 (2022~2023)	3단계 (2024)
제도적 준비와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단계	문화예술도시 광주를 알리는 브랜드 가치 강화 단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주 문화예술의 국제화 단계
- 남한산성아트홀 활성화 단계 - 기획공연 확대 및 홍보 활성화 - 문화예술 관련 DB구축(광주문화예술뱅크 시스템) 및 연계 활용 - 시민, 예술가, 관련 예술단체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실천하는 단계	- 광주만의 특색을 가진 사업추진을 통한 정체성 확보 - 광주문화재단 정책사업의 브랜드화 ※ 예시 : 성남(사랑방문화클럽),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광주 문화컨텐츠 브랜드화 - 품격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등 전문성 확보	-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글로벌 이미지 확립 단계 - 광주 문화 컨텐츠 발굴 및 지속적 개발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확립 -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별 문화예술 활성화 -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그림 32] 광주문화재단의 단계별 추진계획

4.3 운영 사업 계획

가. 지역 정체성 확립사업

(1) 지역문화 콘텐츠 브랜드화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지역민의 애착심 및 자부심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예술가를 활용한 창작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브랜드화
- ◆ 마을을 무대로 한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단체, 예술가의 의욕 고취 및 자부심 강화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지역공동체 및 주민,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 ◆ 추진부서 : 정책사업팀, 시민문화팀, 공연기획팀

■ 사업내용

- ◆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용 공모사업 운영
 - 역사, 문화, 생태 등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예술창작 활동 및 지역특화 브랜드 개발 지원
- ◆ 광주시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문화재생사업)
 - 물의 도시, 성곽의 도시 등 광주시만의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사업의 추진
 - 공공디자인, 공동체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기반 조성사업 시행

■ 관련 사례

- ◆ 세종문화재단 <여민락 교향시 창작음악회>
 - 2019년 세종축제와 연계해 창작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문화적 성취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여민락 교향시 작곡
 - 세종시 문화컨텐츠의 전국화 실현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지속적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연으로 제작 예정에 있음
- ◆ 대구문화재단 <옛골목은 살아있다>
 - 근대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의 옛골목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거리연극 이벤트로 재현하여 대구의 근대문화도시 이미지를 부각함
 - 공연명 : 옛 골목은 살아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공연기간 : 2018년 5월 ~ 10월 / 총 9회
- 내용 : 을사늑약 / 서상돈 선생의 국채보상운동 등
- 출연진 : 총 44명의 지역 예술인 참여(대구지역 전문배우 12명, 계명문화대 뮤지컬과 학생 18명, 스태프 14명)



[그림 33] 대구문화재단의 ‘옛 골목은 살아있다’ 공연 전경

(2) 문화예술인력 양성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광주시 관내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 및 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립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광주시 내 문화예술인
- ◆ 추진부서 : 정책사업팀, 시민문화팀

■ 사업내용

- ◆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및 프로젝트 지원
- ◆ 신진예술인 창작 인큐베이팅
 - 지역 내 전문 중견예술인의 멘토링 지원
- ◆ 지역예술인 레지던스(창작공간) 조성사업
 - 지역문화 예술의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 ◆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지원
 - 예술가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관련 사례

◆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 아케이드>

-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입주예술가 및 작가들의 창작공간 운영
- 황학동 중앙시장 지하 쇼핑센터 내 52개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공예 레지던스

◆ 서울문화재단 <연희문학창작촌>

- 시, 소설, 아동문학, 희곡, 평론, 번역 등 6개 분야 작가 대상
- 입주 작가에게 개인 집필실, 개별 샤워실 제공



[그림 34] 신당창작아케이드 및 연희문학창작촌 전경

(3) 광주형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시민을 참여자로 이끌어 생활문화 확산 및 선순환 구조를 구축
- ◆ 지역 내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광주시민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생활권별 지역 내 주민 및 생활예술동호인
- ◆ 추진부서 : 시민문화팀

■ 사업내용

- ◆ 생활권별 생활문화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사업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 계획과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모델 구축
 - 인적자원(네트워크), 공간자원(거점활성화), 지역콘텐츠(동네이야기), 문화지도(지역축제), 거버넌스(협력시스템)

- ◆ 시민이 만드는 프로젝트 사업
 -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
- ◆ 동호회 네트워크 사업
 - 동아리 연계 문화공연 및 축제

■ 관련 사례

- ◆ 인천문화재단 <우주인 프로젝트>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시민들이 직접 기획자가 되는 사업



[그림 35] 인천문화재단의 우주인 프로젝트

나. 소통 강화 사업

(1)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생활권 단위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망을 조성하고, 지역 내 마을 활동가, 예술가들의 거점 마련을 통한 시민, 예술가 지역의 유기적 공동체 형성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지역예술가, 주민
- ◆ 추진부서 : 정책사업팀, 시민문화팀

■ 사업내용

- ◆ 생활권별 기초조사 연구 및 문화공간 조성 계획 수립
 - 생활권별 특성 및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맞춤형 문화공간을 계획
-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 생활권별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기획자) 활용 프로젝트 진행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례

- ◆ 성남문화재단 <시민 밀착형 문화지원 사업>
 - 5분거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 조성사업 추진(2018~2021)
 - 현재 3개구 중 구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에 각 1개소씩 공공예술창작소 조성완료
 - 2018년 문체부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지원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폐교를 화룡○한 꿈꾸는 예술터 조성 중에 있음



[그림 36] 성남문화재단의 시민밀착형 문화지원사업

(2) 문화자원 연계성 강화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지역 내 인적자원, 공간자원, 문화컨텐츠 정보구축 및 매개활동을 통한 자원의 적극적 활용 필요
- ◆ 문화자원정보 DB 구축 및 매개자 활동사업을 통한 문화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광주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지역 내 문화예술공동체 및 동아리
- ◆ 추진부서 : 정책사업팀

■ 사업내용

- ◆ 생활예술매개자(Facilitating Artist) 활동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공간자원, 인적자원 연계하는 생활예술매개자 선발
 - 단계적 인원 확충
- ◆ 광주문화예술뱅크 시스템 구축
 - 광주 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정보 DB 구축
 - 문화공간,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동아리

■ 관련 사례

- ◆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매개자 사업>
 - 생활매개자 양성을 통한 시민들의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 활동 :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공간자원(공연장, 연습실), 인적자원(멘토 및 타 동아리) 연계 활동
 - 교육 : 매개자 활동 매뉴얼, 교육과정 및 액션러닝 진행
 - 인원 : 70명 공개모집
 - 활동비 : 월 평균 120만원 활동비 지급



[그림 37]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매개자 사업

(3) 지역문화 협업관계 형성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문화관련 인프라 공유사업 및 정기적 포럼, 간담회 개최 사업을 통해 민-관-문화재단 유기적 시스템 구축
- ◆ 문화예술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광주시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 예술인
- ◆ 추진부서 : 홍보팀, 시민문화팀

■ 사업내용

- ◆ 문화예술 관련 포럼 및 간담회 개최
 - 광주시 문화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단체의 소통 기회 마련
 -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협력사업 등에 대한 논의
- ◆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 찾아가는 문화마중 프로젝트
 - 문화소외지역 내 생활밀착형 공간을 매개로 찾아가는 지역별 맞춤 교육 및 공연

■ 관련 사례

- ◆ 완주문화재단 <찾아가는 예술포차>
 - 완주군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주민들이 희망하는 맞춤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 지역예술인(예총 완주지회)의 공연 및 교육사업



[그림 38] 완주문화재단 찾아가는 예술포차

(4) 문화소외계층 복지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사업을 통해 공정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 ◆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우울증 고위험군 등 문화소외계층
- ◆ 추진부서 : 시민문화팀

■ 사업내용

- ◆ 문화소외계층 매개자 활동사업
 - 참여자 발굴, 프로그램 및 강사 매칭
 - 문화소외계층 동호회 육성
- ◆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 장애인 :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맞춤형 정서치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 노인 :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및 생활예술동호인 육성사업 추진

■ 관련 사례

- ◆ 부산문화재단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자택을 예술가가 방문하여 일대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치유 프로그램 운영
 - 활동분야 : 국악, 대중음악, 미술, 공예, 문학, 무용 등
 - 사업성과 : 대상자 발굴 74명, 예술가 38명



[그림 39] 부산문화재단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다.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사업

(1)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사업 발굴
- ◆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욱 가까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수혜 범위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광주시민 및 관내 문화소외계층
- ◆ 추진부서 : 공연기획팀

■ 사업내용

- ◆ 거리예술활성화 사업
 - 광주시 거리곳곳, 찾아가는 거리예술문화 활성화
 - 광주시 공식 버스킹 존 마련 및 주요거리의 문화예술 공연 운영
- ◆ 야외 돛자리 콘서트 ‘피크닉 콘서트’
- ◆ 아마추어 페어 : 동아리 페어 개최(부스, 홍보 지원)

■ 관련 사례

- ◆ 인천 서구문화재단 <노을마당 문화행사>
 - 평소 공연장을 찾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오케스트라, 브라스 밴드, 마임 등 다양한 공연을 우리 주변 가까운 공원, 주민밀집 지역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

-장소 : 공원, 수변지역, 지하철역, 시장 등 구민 밀집지역

-공연 : 클래식행사, 성악공연, 버스킹 공연 등



[그림 40] 인천 서구문화재단 노을마당 문화행사

(2) 문화예술 교육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의 주체자로서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광주시민 및 예술교육 관심자
- ◆ 추진부서 : 시민문화팀

■ 사업내용

- ◆ 시민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현 남한산성아트홀의 문화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무용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생활권별 아카데미 교육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 ◆ 교육전문가 : 창의예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 예술교육가의 기본역량을 기를 수 있는 예술교육 창작과정 수업 진행
- ◆ 기획전문가 : 지역문화기획자 과정교육
 - 이론과정, 현장탐방, 실전 프로젝트 기획(멘토링)

■ 관련 사례

- ◆ 서울문화재단 <New AiE(New Art is Education)>

- 예술교육창작과정은 2007년부터 예술가 교사 양성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하고 운영한 전문 교육과정
-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라는 모토 아래 5주간 총 50시간 내외 진행
- ◆ 충북문화재단 <“쓸모있는 문화작업장 틈뎸” 지역문화기획과정>
 - 대상 :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충북지역 청년층, 문화관련 전공자 등
 - 교육과정 : 기획서 작성 전반교육, 로드 스콜라, 실전 프로젝트 기획

(3) 시민-예술인 협력 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및 마을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참여자로서 기회 제공 및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지역예술가 및 단체, 지역주민
- ◆ 추진부서 : 공연기획팀, 정책사업팀

■ 사업내용

- ◆ 함께 만드는 공연
 -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프로그램
 - 시민창작 뮤지컬, 함께 만드는 콘서트 등 연 1회 시행
- ◆ 문화路 마을路
 - 지역 내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예시 : 예술골목 조성사업 등

■ 관련 사례

- ◆ 인천문화재단 <인천왈츠>
 - 인천왈츠는 시민창작뮤지컬 기획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창작 뮤지컬로 지역 극단과 40여명의 시민 참가자(10대~70대)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극본 또한 극작가와 함께 시민이 함께 만들어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회 개최함



[그림 41] 인천문화재단 인천왈츠

(4) 국제문화 교류 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세계 예술도시 문화예술 단체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국제적 감각 소양 및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국제적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예술가의 해외 교류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대상 및 추진부서

- ◆ 대상 : 지역 예술가 및 단체, 광주시
- ◆ 추진부서 : 홍보팀

■ 사업내용

- ◆ 해외 레지던스 파견사업
 - 해외레지던스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예술인 해외 레지던스 활동 지원
 - 지역 유망 예술가 선정 지원
- ◆ 국제도시 문화교류 사업
 - 문화교류 자매결연 도시 확대를 통한 국제교류사업
 - 세계도시 문화포럼 : 국제 문화정책 정보교류

■ 관련 사례

- ◆ 대구문화재단 <국제교류사업>
 - DaBe Network 사업
 - 지역 유망 예술가를 발굴하여 세계무대에 데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 무용 : 무용수 및 안무가 / 독일 베를린 (3개월, 4명)

- 시각 : 미술작가 및 큐레이터 / 독일 베를린 (12개월, 2명)
- 해외 레지던스 파견
 - 중국 항주 레지던스 공간 / 시각예술분야 (3개월, 6명)
- ◆ 울산문화재단 <대만 화련시 문화교류>
 - 2018년 국제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 지속적 문화예술분야 교류와 상호협력 증대를 위한 문화교류 협약서 체결
 - 대만 화련시 국제 마라톤 대회 : 울산 민예총의 '진혼', 판소리 '사랑가', 울산소속 무용단 창작 무용 공연

VII

광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1. 경제성 분석
2. 파급효과 분석

1. 경제성 분석

1.1 기본방향

가. 분석방법

- ◆ 분석기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
- ◆ 비용편익분석(B/C Ratio : Benefit-Cost Ratio)
 - 총 편익과 총 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비용편익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비용편익비율이 1.0을 상회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B/C \text{ Ratio}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B_t : t시점의 편익, C_t : t시점의 비용, r : 할인율, n : 분석기간

-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현재가치로 환산된 총 편익과 총 비용의 차이이며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 따라서 순현재가치의 값이 +의 값을 갖는 사업은 적용된 할인율에서 자본비용을 회수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값이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NPV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B_t : 편익, C_t : 비용, r : 할인율, n : 분석기간

-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 내부수익률은 사업의 시행을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내부수익률은 순 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IRR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B_t : 편익, C_t : 비용, r : 할인율, n : 분석기간

[표 124] 분석기법 장단점

평가지표	판단	장점	단점
비용편익	$B/C \geq 1$	• 이해가 용이 • 사업규모 고려 가능 • 비용편익 발생기간 고려	• 비용과 편익의 명확한 구분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가능 • 사회적 할인율 파악
순현재가치	$NPV \geq 0$	• 대안 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타 분석에 이용 가능	• 할인율의 명확한 파악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내부수익률	$IRR \geq r$	• 사업의 수익성 측정가능 • 타 대안과 비교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제

나. 분석전제

- ◆ 광주문화재단 사업에 관한 타당성은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산출함
 - 비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이관사업 운영비, 문화재단 특화사업 운영비로 구성
 - 편익은 금전적 수입과 비금전적 수입으로 구성
- ◆ 타당성 분석 시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함
 - 재무적 타당성은 비용 대비 금전적 수입을 반영
 -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 대비 금전적 수입 및 비금전적 수입을 반영
- ◆ 분석 기간은 설립 후 30년 동안의 범위를 대상으로 함
 - 2020년 ~ 2049년(30년간)
- ◆ 할인율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2017.12.27.)」에 따라 최근 3개년 간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 1.31%를 활용함

1.2 비용 추정

가. 인건비

- ◆ 운영인력의 인건비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 보수규정을 참고하였으며, 문화재단 설립 시 광주도시관리공사 16명의 고용승계가 필요하므로 준용하여 적용함
- ◆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급부터 8급,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연봉제임
- ◆ 직급별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기본급의 한계액은 다음과 같음

[표 125] 기준 기본급의 한계액

(단위 : 원)

직 급	기 준 기 본 급 의 한 계	
	하 한 액	상 한 액
2 급	45,500,000	81,500,000
3 급	39,500,000	75,000,000
4 급	34,000,000	69,000,000
5 급	29,000,000	58,000,000
6 급	25,500,000	53,000,000
7 급	22,500,000	45,000,000
8 급	21,000,000	43,000,000

◆ 기본급 산정기준

- 문화재단 인건비 산정 시 기본급은 급수별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공무원(계약직)은 기준이 없으므로 문화팀 공무원의 실제 기본급을 반영함
- 그러나 8급의 경우 실제 지급액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8급의 하한·상한 평균값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됨. 이에 8급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26,696천원)보다 조금 많은 28,000천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하여 산출함
- 인건비 산출 시 기준금액은 2018년 보수규정임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시점인 2020년 기준단가(최근 5년간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2.96%))로 보정하여 적용함

◆ 제수당 산정기준

- 광주도시관리공사 문화팀의 2018년도 실제 제수당 지급 비율을 살펴본 결과 기본급 대비 평균 38%로 분석됨에 따라 38%의 제수당 비율을 적용함

◆ 직급별 인건비

-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직급별 인건비는 다음과 같음

[표 126] 직급별 인건비

(단위 : 천원)

직 급	기본급		기본급 외 수당 (기본급 × 38%)	급수별 적용 인건비
	2018년	2020년 보정단가		
2 급	63,500	67,315	25,580	92,894
3 급	57,250	60,689	23,062	83,751
4 급	51,500	54,594	20,746	75,340
5 급	43,500	46,113	17,523	63,636
6 급	39,250	41,608	15,811	57,419
7 급	33,750	35,778	13,595	49,373
8 급	28,000	29,682	11,279	40,961
공무직	26,696	28,300	10,754	39,055

◆ 단계별 인건비 산출

－1단계 1,381,767천원(29명), 2단계 2,404,835천원(50명), 3단계 2,644,386천원(52명)

[표 127] 단계별 운영인력 및 인건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운영인력	27명 (파견인력 2명(경영기획) 인건비 제외)	48명 (파견인력 2명(경영기획) 인건비 제외)	52명
인건비(천원)	1,381,767	2,404,835	2,664,386

◆ 팀별 인건비 산출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3단계 시점 기준 청소년수련관 1,023,068천원(21명), 공연기획팀 576,594천원(12명), 경영기획팀 329,885천원(6명) 순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됨

[표 128] 단계별 팀별 인건비

구 분	1단계(2020)		2단계(2021)		3단계(2022)	
	인원(명)	인건비(천원)	인원(명)	인건비(천원)	인원(명)	인건비(천원)
대표이사	1	92,894	1	92,894	1	92,894
경영기획팀	2 (파견인력 2 제외)	90,334	2 (파견인력 2 제외)	90,334	6	329,885
정책사업팀	4	211,390	4	211,390	4	211,390
공연기획팀	12	576,594	12	576,594	12	576,594
시민문화팀	4	199,165	4	199,165	4	199,165
홍보팀	4	211,390	4	211,390	4	211,390
청소년수련관	—	—	21	1,023,068	21	1,023,068
계	27	1,381,767	48	2,404,835	52	2,644,386

나. 인건비성 경비

- ◆ 운영경비는 이관 사업별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반영되어 있으나,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는 미포함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 ◆ 기존 운영인력이 아닌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신규인력은 1단계·2단계 11명, 3단계 15명임

[표 129]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신규인력

구 분	1단계 (2020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2년)
대표이사	1	1	1
경영기획팀	2	2	6
홍보팀	3	3	3
시민문화팀	1	1	1
정책기획팀	4	4	4
총 계	11	11	15

- ◆ 인건비성 경비는 비교적 재단 운영규모가 비슷한 오산문화재단과 의정부문화재단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인건비 대비 인건비성 경비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균값을 적용함

－인건비 대비 인건비성 경비 항목의 평균 비율 : 31.1%

(오산문화재단 38.2%, 의정부예술의전당 24.0%)

- ◆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단계 2단계 620,272천원(11명), 3단계 859,822천원(15명)이며, 유사사례의 인건비성 경비 효율인 31.1%를 적용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산출함
- ◆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인건비성 경비는 1단계 2단계 192,905천원, 3단계 267,405천원임

[표 130]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신규인력

구 분	1단계 (2020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2년)
인건비 (천원)	620,272	620,272	859,822
인건비성 경비효율	31.1%	31.1%	31.1%
인건비성 경비 (천원)	192,905	192,905	267,405

다. 이관사업 운영비

- ◆ 이관사업 운영비를 추정한 결과 총 5,818,356천원으로 예상됨

－각 시설별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 시점에서 2020년 설립 시까지의 연간 물가상승률(연 1.24%)을 적용하여 운영비를 산출함

[표 131] 이관사업 운영비

구 분	사업명	2020년 기준 사업비(천원)
문화시설 관리운영사업	문예회관	50,018
	남한산성아트홀	2,652,931
	청소년수련관	1,968,483
	남한산성문화재	302,361
	왕실도자기축제	409,982
	소계	5,383,775
광주시 사업	너른고을 광주 성악 콩쿠르	36,898
	불량콘서트_관 3.0	153,743
	숨씨마켓_3.0	30,749
	2020년 해돋이행사	20,499
	자연채 행복밥상	96,346
	소계	338,235
광주문화원 사업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51,248
	광주시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4,100
	광주시 박물관 미술관 공동전시회	10,250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15,374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 한마당	15,374
	소계	96,346
합계		5,818,356

라. 문화재단 특화사업 운영비

- ◆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운영뿐만이 아니라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의 기획·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 문화재단 특화사업 운영비는 초기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연차별로 순차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초기년도 2억원, 5차년도 7억원으로 설정함

[표 132] 문화재단 특화사업 운영비

구 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금액(천원)	200,000	300,000	400,000	500,000	700,000

마. 총 비용

■ 문화재단 총 사업비

- ◆ 각 항목별 비용을 종합한 결과 문화재단 설립 시의 총 비용은 다음과 같음

[표 133] 광주문화재단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설립초기)	2024년 (운영5년차)	비 고
인건비		1,381,767	2,644,386	· 광주시관리공사 연봉 기준 적용/ 총 52명 · 초기 2년간 파견인력 2명 인건비 제외
운영경비		192,905	267,405	·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재단설립 추가인력 (초기 11명/2022년 이후 15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적용
이관 사업 운영비	문예회관	50,018	50,018	· 각 사업별 예산서 및 결산서 기준 적용 · 2020년 시점으로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산출 · 아트홀 시설관리 위탁금 － 전기, 기계, 소방 총 3명 인건비 (7급 적용)의 50% 금액
	남한산성아트홀	2,652,931	2,652,931	
	아트홀 시설관리 위탁	74,060	—	
	청소년수련관	—	1,968,483	
	남한산성문화제	302,361	302,361	
	왕실도자기축제	409,982	409,982	
	광주시 이관사업	338,235	338,235	
	광주문화원 이관사업	96,346	96,346	
소 계		3,923,932	5,818,356	—
문화재단 특화사업 운영비		200,000	700,000	· 초기년도 2억원 / 연차별 단계적 증가 · 5차년도(2024년) 이후 7억원 동일
총 계		5,698,604	9,430,146	—

연차별 사업비

- 문화재단 설립 후 5년간 사업비는 다음과 같으며, 5차년도 이후의 예산은 동일함

[표 134] 문화재단 설립 후 5년간 사업비

구 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인건비	1,381,767	2,404,835	2,644,386	2,644,386	2,644,386
운영경비	192,905	192,905	267,405	267,405	267,405
이관사업	3,923,932	5,892,415	5,818,356	5,818,356	5,818,356
특화사업	200,000	300,000	400,000	500,000	700,000
합 계	5,698,604	8,790,155	9,130,146	9,230,146	9,430,146

현 운영비 대비 문화재단 설립 시 예산 비교

- 현 운영비 대비 문화재단 설립 시의 예산 비교 시 현 운영예산 대비 약 2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재단 설립 시 예산 증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신규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 : 약 11.3억원
 - 신규인력 15명 : 대표이사(1), 경영기획(6), 정책기획(4), 시민문화(1), 홍보(3)
 -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 약 4.4억원 (∵ 문화재단 보수규정 변경)
 - 문화재단 특화사업 추진비 : 약 7억원
 - 남한산성아트홀 인건비 : 약 0.7억원 (∵ 인건비 지급 기준 통일)

[표 135] 현 운영비 대비 문화재단 설립시의 운영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영비		문화재단 설립시 [B]	설립시 예산증가분 [B-A]
		현 기준 ¹⁾	2020년 보정단가 [A]		
문예회관		49	50	50	-
남한산성아트홀		3,115	3,344	3,414	70
축제	남한산성문화제	295	302	302	-
	광주왕실도자기축제	400	410	410	-
광주시 및 문화원 이관사업		424	435	435	-
청소년 수련관		2,430	2,548	2,992	444
문화재단 신규사업		-	-	700	700
신규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		-	-	1,127	1,127
총 운영비		6,712	7,089	9,430	2,341

1.3 편익 추정

- ◆ 광주문화재단 설립 운영 시의 편익은 사업에 대한 금전적 수입과 비금전적 가치인 사회적 편익으로 구분 가능함
- ◆ 금전적 수입은 문화재단의 운영 시설인 문예회관, 남한산성아트홀, 청소년수련관 수입 및 문화재단 예산 기부금 항목을 산출, 사회적 편익(비금전적 가치)은 남한산성아트홀, 청소년수련관, 축제 및 행사 등의 항목을 산출함

가. 금전적 수입

- ◆ 금전적 수입으로는 이관사업 시설별 수입금과 예산 기부금 항목으로 구분 가능함
- ◆ 이관사업 시설별 수입금
 - 이관사업 시설별 현 운영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문화재단 설립 시점(202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 수입을 산출한 결과 총 1,168,768천원
 - 문예회관 259천원, 남한산성아트홀 656,990천원, 청소년수련관 511,519천원
- ◆ 예산 기부금
 - 광주시와 인구수가 유사한 지자체의 문화재단 최근 2년간 기부금 평균 금액은 78,637천원임
 - 2020년 시점의 예산 기부금은 보정단가(물가상승률 연 1.24%) 적용 시 80,599천원

[표 136] 유사 인구규모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기부금 현황

구분	재단명	인구수	사업체수	기부금(천원)		연간 기부금 평균 (천원)
				2017	2018	
군포	군포문화재단	284,518	17,132	63,620	61,500	62,560
의정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449,006	25,943	46,200	-	23,100
아산	아산문화재단	311,453	20,936	149,850	150,650	150,250
광주	광주문화재단	374,709	25,603	-	-	-

- ◆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광주문화재단의 금전적 수입을 추정한 결과 2020년(설립초기) 약 7.4억원, 2024년(운영 5년차) 약 12.5억원으로 예상됨

[표 137] 광주문화재단의 예상 운영수입

구분		2020년 (설립초기)	2024년 (운영5년차)	비고
시설 운영수입	문예회관	259	259	· 각 사업별 운영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2020년 물가상승률 반영
	남한산성아트홀	656,990	656,990	
	청소년수련관	-	511,519	
	소 계	657,250	1,168,768	
기부금		80,599	80,599	· 유사규모 자치단체 문화재단의 평균 기부금 적용
총 계		737,849	1,249,367	-

나. 사회적 편익

(1) 남한산성아트홀 편익

- 남한산성아트홀 편익은 ① 기획공연 이용료 절감편익, ② 전시실 관람에 따른 이용료 절감편익, ③ 대관료 절감편익의 세가지 항목을 산출함

■ 기획공연 이용료 절감편익

- 남한산성아트홀 기획공연은 2017년 기준 이용객 28,989명, 수입 272,352천원으로 1인당 객단가는 9,395원으로 산출됨

[표 138] 남한산성아트홀 기획공연 수입 및 이용객 현황

구 분	공연횟수	수입 (천원)	이용객 (명)	객단가 (원)
내 용	102	272,352	28,989	9,395

출처 : 광주도시관리공사, 2017년 기준

- 현 민간 티켓가격의 평균요금은 20,156원으로 남한산성아트홀 기획공연 객단가(9,395원)와 비교 시 1인당 10,761원의 절감효과 발생

[표 139] 국내 공공 및 민간공연장 평균 티켓가격

구 분	공공	민간
평균 티켓가격	16,424	20,156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2017.12), 「공연예술 실태조사 보고서」

- 현 남한산성아트홀 기획공연의 절감편익은 총 323,691천원으로 산출됨
 $\text{—관람객}(28,989\text{명}) \times 1\text{인당 절감효과}(10,761\text{원}) = 323,691\text{천원}$

[표 140] 기획공연 수입

구 분	이용인원	적용단가(2017)	2020년 기준	절감편익(천원)
기획공연 절감편익	28,989	10,761	11,166	323,691

■ 전시실 관람에 따른 이용료 절감편익

- 현 남한산성아트홀의 전시실의 기획전시 관람객은 17,650명으로 무료로 운영 중에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8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권 사립미술관의 이용요금을 분석한 결과 평균 3,788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남한산성아트홀 전시실의 1인당 이용절감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전시실 기획전시 관람객의 절감편익은 69,382천원으로 산출됨
 $\text{—관람객}(17,650\text{명}) \times 1\text{인당 절감효과}(3,931\text{원}) = 69,382\text{천원}$

[표 141] 전시실 관람에 따른 이용료 절감편익

구 분	이용인원	적용단가(2017)	2020년 기준	절감편익(천원)
전시실 이용료 절감편익	17,650	3,788	3,931	69,382

■ 대관료 절감편익

- ◆ 남한산성아트홀의 대관료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유사사례의 1석당 대관료를 파악하였으며, 유사사례로는 블루스퀘어와 LG아트센터를 적용함
- ◆ 유사사례의 1석당 대관료를 산출한 결과 평균 11,626원으로 산출됨
 - 블루스퀘어 14,476원, LG 아트센터 8,776원
- ◆ 유사사례 단가를 적용한 남한산성아트홀의 예상수입은 대공연장의 경우 956,078천원, 소공연장의 경우 219,732천원으로 총 1,175,810천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대공연장(1,068석) : $11,626원 \times 1,068석 = 12,416천원$
 - 소공연장(270석) : $11,626원 \times 270석 = 3,139천원$
- ◆ 대관료 절감편익은 유사사례 단가 적용 시 예상수입(1,175,810천원)과 현재 남한산성 아트홀의 대관수입(118,975천원)의 차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총 1,056,835천원으로 2020년 시점으로 보정 시 1,083,207천원으로 산출됨

[표 142] 대관료 절감 편익

구 분	1석당 대관료(원)	유사사례 단가적용시 예상수입(천원)	남한산성아트홀 대관수입(천원)	절감편익(천원)	2020년 시점 편익(천원)
대관료 절감편익	11,626	1,175,810	118,975	1,056,835	1,083,207

(2) 청소년수련관 편익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절감편익

- ◆ 현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연간 수강인원은 2018년 기준 11,769명임
- ◆ 수강료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주변 문화센터 아동강좌 평균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159,533원(3개월)으로 나타남
- ◆ 현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강좌 평균 수강료는 31,875원(3개월)으로 수강생 1인당 절감효과는 127,658원(2020년 보정단가 : 130,844원) 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절감 편익을 산출한 결과 총 1,539,902천원으로 예상됨

-연간 청소년강좌 수강인원(11,769명) × 1인당 절감 수강료(130,844원) = 1,539,902천원

[표 143] 청소년 수강료 절감편익

구 분	이용인원	적용단가(2018)	2020년 기준	절감편익(천원)
청소년 수강료 절감편익	11,769	127,658	130,844	1,539,902

■ 성인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절감편익

- ◆ 현 청소년수련관의 성인 교육프로그램 연간 수강인원은 2018년 기준 69,231명임
- ◆ 수강료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주변 문화센터 성인강좌 평균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121,909원(3개월)으로 나타남
- ◆ 현 청소년수련관의 성인강좌 평균 수강료는 69,231원(3개월)으로 수강생 1인당 절감효과는 52,678원(2020년 보정단가 : 53,993원)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성인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절감 편익을 산출한 결과 총 296,526천원으로 예상됨

-연간 성인강좌 수강인원(5,629명) × 1인당 절감 수강료(53,993원) = 296,526천원

[표 144] 성인 수강료 절감편익

구 분	이용인원	적용단가(2018)	2020년 기준	절감편익(천원)
성인 수강료 절감편익	5,629	52,678	53,993	296,526

(3) 축제 편익

■ 남한산성문화제

- ◆ 남한산성문화제 편익을 도출하기 위해 남한산성문화제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용역보고서(2018)의 직접경제효과 부문을 검토함
 - 남한산성문화제 방문객은 2018년 기준 250천명으로, 외지인 비율은 97.2%로 나타남
 - 방문객의 1인당 지출액은 69,288원, 지역 내 1인당 소비액은 28,918원으로 추정
 - 직접경제효과는 외지인 수(242,950명)에 지역 내 소비금액(28,918원)을 적용하여 7,025,651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 상기에서 제시된 직접경제효과 금액은 지역 내 1인당 소비금액이 추정치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제시된 직접경제효과 금액의 50%인 3,600,472천원을 적용함

[표 145] 남한산성문화제 직접경제효과

구 분	방문인원 (외지인)	지역 내 1인당 지출액(원)	2020년 기준	절감편익 (천원)	적용비율	적용 편익 (천원)
남한산성문화제 직접경제효과	242,950	28,918	29,640	7,200,944	50%	3,600,472

■ 왕실도자기축제

- ◆ 왕실도자기축제의 편익을 도출하기 위해 왕실도자기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용역보고서(2018)의 직접경제효과 부문을 검토함
 - 왕실도자기축제 방문객은 2018년 기준 136천명으로, 외지인 비율은 99.2%로 나타남
 - 방문객의 1인당 지출액은 78,523원, 지역 내 1인당 소비액은 32,343원으로 추정
 - 직접경제효과는 외지인 수(135,537명)에 지역 내 소비금액(32,343원)을 적용하여 4,377,137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 상기에서 제시된 직접경제효과 금액은 지역 내 1인당 소비금액이 추정치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제시된 직접경제효과 금액의 50%인 2,246,496천원을 적용함

[표 146] 왕실도자기축제 직접경제효과

구 분	방문인원 (외지인)	지역 내 1인당 지출액(원)	2020년 기준	절감편익 (천원)	적용비율	적용 편익 (천원)
왕실도자기축제 직접경제효과	135,537	32,343	33,150	4,492,993	50%	2,246,496

(4) 문화행사 편익

■ 자연채 행복밥상

- ◆ 행사개요
 - 목적 : 가족단위 광주시민의 행복밥상을 준비하여 문화공연, 체험행사 참여를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광주시 생산 농산물 자연채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함
 - 행사내용 : 먹거리 행사,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체험 행사, 가족 행복 노래자랑, 축하공연
 - 참여인원 : 1,565명
- ◆ 자연채 행복밥상 편익
 - 여가활동의 행복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추정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여가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인용

-문화예술 참여에 따른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보상잉여(CS : Compensating Surplus)에 대하여 8,351원/일(2020년 기준)로 제시하고 있음

-자연채 행복밥상 편익 : 참가인원(1,565명) × 문화예술 참여 CS(8,351원/일) = 13,070천원

[표 147] 자연채 행복밥상 편익

구 분	참가인원	문화예술참여 CS	2020년 기준	편익(천원)
자연채 행복밥상 편익	1,565명	7,756원/일	8,351원/일	13,070

■ 해돋이 행사

◆ 행사개요

-목적 :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한해를 계획하고 소망을 기원하며 덕담과 희망을 나누는 해돋이 행사

-행사내용 : 해맞이 소원기원 행사 및 공연관람, 떡국 등 시식

-참여인원 : 6,000명

◆ 해돋이행사 편익

-여가활동의 행복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추정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여가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인용

-문화예술 관람에 따른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보상잉여(CS : Compensating Surplus)에 대하여 5,678원/일(2020년 기준)로 제시하고 있음

-해돋이행사 편익 : 참가인원(6,000명) × 문화예술 관람 CS(5,678원/일) = 34,069천원

[표 148] 해돋이행사 편익

구 분	참가인원	문화예술관람 CS	2020년 기준	편익(천원)
해돋이행사 편익	6,000명	5,273원/일	5,678원/일	34,069

(5) 종 합

- ◆ 광주문화재단의 사회적 편익은 2020년(설립초기) 약 74억원, 2024(운영 5년차) 약 92억원으로 추정됨

－남한산성아트홀 15억원, 청소년수련관 18억원, 지역축제 58억원, 문화행사 0.5억원

[표 149] 광주문화재단의 사회적 편익

구 분		2020년 (설립초기)	2024년 (운영 5년차)
남한산성 아트홀	기획공연 이용료 절감편익	323,691	323,691
	대관료 절감편익	1,083,207	1,083,207
	전시관 관람료 절감 편익	69,382	69,382
	소 계	1,476,281	1,476,281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강좌 수강료 절감편익	－	1,539,902
	성인 강좌 수강료 절감편익	－	296,526
	소 계	－	1,836,428
지역축제	남한산성문화제	3,600,472	3,512,825
	광주왕실도자기축제	2,188,568	2,188,568
	소 계	5,846,968	5,846,968
문화행사	자연채 행복밥상	13,070	13,070
	해돋이행사	34,069	34,069
	소 계	47,139	47,139
총 계		7,370,388	9,206,816

1.4 재무적 타당성

가. 연차별 수입 · 비용

-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현재가 기준 30년간 총 수입은 30,324백만원, 총 비용은 227,916백만원 수준으로 197,593백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됨
- 할인율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2017.12.27.)」에 따라 최근 3개년 간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 1.31%를 적용함

[표 150] 광주문화재단의 연차별 수입 · 비용 내역

할인년차		수입	비용	할인율 (1.31%)	수입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1	2020	738	5,709	0.987	728	5,635	-4,906
2	2021	1,249	8,790	0.974	1,217	8,564	-7,347
3	2022	1,249	9,130	0.962	1,202	8,781	-7,579
4	2023	1,249	9,230	0.949	1,186	8,762	-7,576
5	2024	1,249	9,430	0.937	1,171	8,836	-7,665
6	2025	1,249	9,430	0.925	1,156	8,722	-7,566
7	2026	1,249	9,430	0.913	1,141	8,609	-7,468
8	2027	1,249	9,430	0.901	1,126	8,498	-7,372
9	2028	1,249	9,430	0.889	1,111	8,388	-7,277
10	2029	1,249	9,430	0.878	1,097	8,279	-7,182
11	2030	1,249	9,430	0.867	1,083	8,172	-7,090
12	2031	1,249	9,430	0.855	1,069	8,067	-6,998
13	2032	1,249	9,430	0.844	1,055	7,962	-6,907
14	2033	1,249	9,430	0.833	1,041	7,859	-6,818
15	2034	1,249	9,430	0.823	1,028	7,758	-6,730
16	2035	1,249	9,430	0.812	1,015	7,657	-6,643
17	2036	1,249	9,430	0.802	1,001	7,558	-6,557
18	2037	1,249	9,430	0.791	988	7,461	-6,472
19	2038	1,249	9,430	0.781	976	7,364	-6,389
20	2039	1,249	9,430	0.771	963	7,269	-6,306
21	2040	1,249	9,430	0.761	951	7,175	-6,224
22	2041	1,249	9,430	0.751	938	7,082	-6,144
23	2042	1,249	9,430	0.741	926	6,991	-6,064
24	2043	1,249	9,430	0.732	914	6,900	-5,986
25	2044	1,249	9,430	0.722	902	6,811	-5,909
26	2045	1,249	9,430	0.713	891	6,723	-5,832
27	2046	1,249	9,430	0.704	879	6,636	-5,757
28	2047	1,249	9,430	0.695	868	6,550	-5,682
29	2048	1,249	9,430	0.686	857	6,465	-5,609
30	2049	1,249	9,430	0.677	846	6,382	-5,536
합계		36,969	278,043	-	30,324	227,916	-197,593

나. 재무성 분석 결과

- ◆ 재무성 분석 결과 3개 부문 모두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및 사업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

[표 151] 재무성 분석 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 (B/C Ratio)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타당성 판단기준	$B/C \geq 1$	$NPV \geq 0$	$IRR > r$ ($r=1.31\%$)
주요 내용	0.13	- 197,593백만원	불능

1.5 경제적 타당성

가. 연차별 편익 · 비용

-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현재가 기준 30년간 총 편익은 255,692백만원, 총 비용은 227,916백만원 수준으로 27,776백만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됨
- 할인율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2017.12.27.)」에 따라 최근 3개년 간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 1.31%를 적용함

[표 152] 광주문화재단의 연차별 편익 · 비용 내역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1.31%)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1	2020	8,108	5,709	0.987	8,003	5,635	2,369
2	2021	10,456	8,790	0.974	10,188	8,564	1,623
3	2022	10,456	9,130	0.962	10,056	8,781	1,275
4	2023	10,456	9,230	0.949	9,926	8,762	1,164
5	2024	10,456	9,430	0.937	9,797	8,836	961
6	2025	10,456	9,430	0.925	9,671	8,722	949
7	2026	10,456	9,430	0.913	9,546	8,609	937
8	2027	10,456	9,430	0.901	9,422	8,498	925
9	2028	10,456	9,430	0.889	9,300	8,388	913
10	2029	10,456	9,430	0.878	9,180	8,279	901
11	2030	10,456	9,430	0.867	9,061	8,172	889
12	2031	10,456	9,430	0.855	8,944	8,067	878
13	2032	10,456	9,430	0.844	8,829	7,962	866
14	2033	10,456	9,430	0.833	8,714	7,859	855
15	2034	10,456	9,430	0.823	8,602	7,758	844
16	2035	10,456	9,430	0.812	8,491	7,657	833
17	2036	10,456	9,430	0.802	8,381	7,558	822
18	2037	10,456	9,430	0.791	8,272	7,461	812
19	2038	10,456	9,430	0.781	8,165	7,364	801
20	2039	10,456	9,430	0.771	8,060	7,269	791
21	2040	10,456	9,430	0.761	7,956	7,175	781
22	2041	10,456	9,430	0.751	7,853	7,082	771
23	2042	10,456	9,430	0.741	7,751	6,991	761
24	2043	10,456	9,430	0.732	7,651	6,900	751
25	2044	10,456	9,430	0.722	7,552	6,811	741
26	2045	10,456	9,430	0.713	7,454	6,723	731
27	2046	10,456	9,430	0.704	7,358	6,636	722
28	2047	10,456	9,430	0.695	7,263	6,550	713
29	2048	10,456	9,430	0.686	7,169	6,465	703
30	2049	10,456	9,430	0.677	7,076	6,382	694
합계		311,338	278,043	—	255,692	227,916	27,776

나. 경제성 분석 결과

- ◆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 1.12, 순현재가치 27,776백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153] 경제성 분석 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 (B/C Ratio)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타당성 판단기준	$B/C \geq 1$	$NPV \geq 0$	$IRR > r$ ($r=1.31\%$)
주요 내용	1.12	27,776백만원	불능

2. 파급효과 분석

2.1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가. 출연금

- ◆ 광주시는 광주문화재단이 설립되는 2020년 이후 매년 운영비용에서 운영수입(기부금 포함) 및 외부 지원금을 제외한 부족 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함
- ◆ 출연금은 2020년(설립초기) 약 47억원(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 81.6%), 2024년(운영 5년차) 약 79억원(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 83.5%)으로 분석됨

[표 154] 광주문화재단 예상 출연금

구 분		금 액(천원)	비고
운영비	2020년(설립초기)	5,698,604	2명 공무원 파견, 문화재단 특화사업(2억)
	2024년(운영5년차)	9,430,146	파견인력 없음, 청소년수련관 사업 포함, 문화재단 특화사업(7억)
운영수입	2020년(설립초기)	1,048,484	사업수입(6.6억), 기부금(0.8억), 외부지원금(3.1억)
	2024년(운영5년차)	1,560,002	청소년수련관 사업수입(5.1억) 포함
출연금	2020년(설립초기)	4,650,120	출연금 비율 81.6%
	2024년(운영5년차)	7,870,144	출연금 비율 83.5% (향후 적극적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감소 가능)

- ◆ 유사규모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의 출연금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약 81%로 유사규모 지자체의 문화재단 출연금 비율과 유사하며, 향후 적극적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외부지원금 증가 시 출연금 비율을 더욱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155] 유사규모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출연금 현황

구 분	인구(명)	정원/현원	예산(A)	출연금(B)	출연금 비율(B/A)
안양문화예술재단	587,809	69/62	156억원	124억원	80%
의정부예술의전당	449,006	40/40	84억원	66억원	79%
김포문화재단	434,442	45/44	71억원	66억원	94%
광명문화재단	335,328	-/35	61억원	52억원	85%
군포문화재단	284,518	132/127	183억원	126억원	69%
평 균	-	-	-	-	81%

※ 각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위탁비 및 대행비를 포함한 금액임

나.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 자본금

- ◆ 과거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초기 출연금을 설립 자본금으로 적용하는 형태였으나, 최근 지자체는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되도록 자본금은 최소화하는 경향을 나타냄
 - 불필요하게 과다 산정 시 지자체 매몰비용으로 예산 낭비 발생 우려
- ◆ 문화재단 사례의 경우 설립 자본금을 대부분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초기 구입비 등의 필요 비용은 1차년도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음
 - 경기권 기초 문화재단 자본금 사례
 - 성남, 광명, 안산, 안양, 고양, 오산, 군포, 하남, 용인, 김포, 화성, 여주세종, 의정부문화재단 : 1천만원
 - 부천 문화재단 : 1백만원
- ◆ 문화재단의 타 사례와 같이 광주문화재단의 경우도 자본금 1천만원으로 계획하고자 함

■ 가용투자재원 분석

- ◆ 광주시 2018년 기준 총 예산 규모는 905,445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156] 연도별 광주시 예산규모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규모 (백만원)	635,154	600,285	622,894	703,680	905,445

주 :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 : 2018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광주시)

- ◆ 세출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의 비중이 2014년 4.3%에서 2018년 3.9%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문화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표 157] 분야별 예산규모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1,393	100	444,677	100	472,617	100	546,129	100	700,547	100
일반공공행정	29,928	6.1	34,174	7.7	34,073	7.2	34,281	6.3	79,227	11.3
공공질서 및 안전	6,359	1.3	3,619	0.8	6,586	1.4	7,010	1.3	3,321	0.5
교 육	4,145	0.9	6,362	1.4	6,572	1.4	6,929	1.3	8,057	1.1
문화 및 관광	21,276	4.3	23,758	5.4	20,149	4.3	21,366	3.9	27,104	3.9
환경보호	16,786	3.4	13,530	3.0	14,726	3.1	24,186	4.4	24,637	3.5
사회복지	156,106	31.8	165,500	37.2	180,852	38.3	195,294	35.8	262,058	37.4
보 건	8,508	1.7	10,401	2.3	11,315	2.4	13,096	2.4	14,231	2.0
농림해양수산	13,661	2.8	17,582	4.0	18,956	4.0	22,367	4.1	26,270	3.8
산업·중소기업	1,599	0.3	2,160	0.5	2,034	0.4	2,058	0.4	4,061	0.6
수송 및 교통	65,171	13.3	66,231	14.9	71,426	15.1	92,129	16.9	94,875	13.5
국토 및 지역개발	93,376	19.0	16,498	3.7	16,127	3.4	34,005	6.2	45,695	6.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5,497	1.1	6,398	1.4	6,453	1.4	5,967	1.1	4,829	0.7
기 타	68,982	14.0	78,463	17.7	83,347	17.6	87,440	16.0	106,181	15.2

자료 : 2018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광주시)

- ◆ 광주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광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출연금 비중을 살펴봄
- ◆ 광주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는 초기년도 4,660백만원(자본금 1천만원 포함), 운영5년차(2024년) 7,870백만원이며, 이는 광주시 재정규모의 0.5~0.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158] 일반회계 대비 출연금 비율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	881,848	961,214	1,047,723	1,142,018	1,244,800
출연금	4,660	7,230	7,570	7,670	7,870
비율	0.5%	0.8%	0.7%	0.7%	0.6%

주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증가율(9.0%) 적용 / 2020년 출연금은 자본금(1천만원) 포함금액

다. 운영재원 조달방안

■ 광주시 직접 예산 지원

-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이 필요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문화재단 설립 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재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 ◆ 지역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등 추가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문화부 보조사업(전액보조/ 국비 지방비 정률매칭/ 정액 자부담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지역예술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 공모사업의 경우 단년도 계속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차년도 공모사업 확보계획 마련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기부금 및 후원금 모집

-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부금품법」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
 - 일반기부금 : 구체적 용도나 조건 없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후원금을 출연하는 기부로 기부금은 광주문화재단 기금으로 편성
 - 지정기부금 : 희망하는 문화예술사업 또는 예술인(단체)를 직접 지정하여 지원 기부
- ◆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부자는 법인의 경우 일정 한도 내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일정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문화재단 운영수입

- ◆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시설(남한산성아트홀, 청소년수련관 등)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강좌, 시설대관, 주차비 등

- ◆ 또한 문화재단의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문화재단은 공공성 측면에 있어 수익사업이 제한적일 수 있음



[그림 42] 운영재원 조달방안

2.2 경제적 파급효과

- ◆ 광주문화재단 설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2017)」에 따르면 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종수요는 예상되는 실제 지출을 의미하므로, 가상의 편익을 최종수요로 보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광주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이 모두 이관되고, 특화사업 운영비가 정착되는 2024년(운영 5년차)의 연간 운영예산을 최종 수요로 설정함
- ◆ 한국은행이 2015년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른 경기지역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음

[표 159] 경기지역 산업연관표 유발계수

구 분	내 용	경기도 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서 자გი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이 어느 정도 유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별 최종 수요액과 자გი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유발액을 이용하여 산출된 계수	1.874
부가가치 유발계수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서 자გი지역 및 타 지역의 부가가치가 어느정도 유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	0.782
취업유발계수	최종수요 한 단위(10억원) 발생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 (단위: 명/10억원)	25.4

자료 : 한국은행(2015),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경기지역의 문화 및 기타서비스 부문 계수 적용

- ◆ 상기 유발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파급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7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억원, 취업유발효과 239명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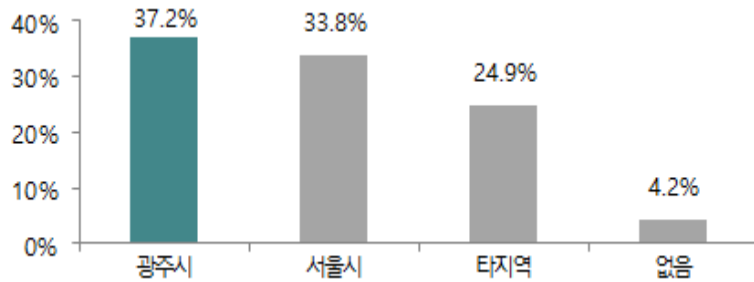
[표 160]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백만원)	취업유발효과 (명)
유발 계수	1.874	0.782	25.4
최종 수요	9,430		
파급 효과	17,672	7,374	239

2.3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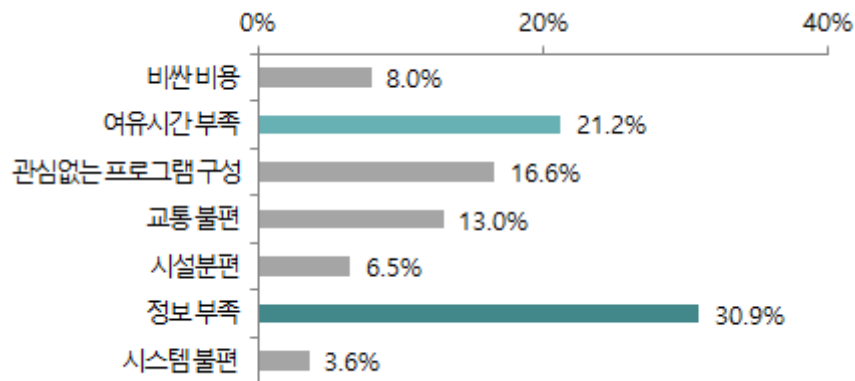
■ 광주시 문화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제고

- ◆ 본 연구에서 실시한 광주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타 지역에서의 문화활동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광주시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또한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여건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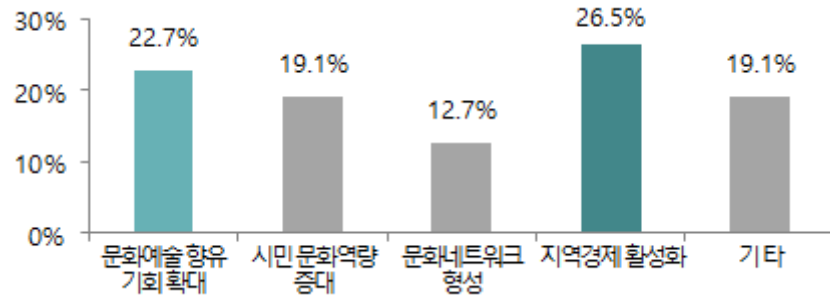
[그림 43] 최근 1년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지역

- ◆ 또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시 장애요인으로 정보 부족을 가장 1순위로 응답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활동 유도가 필요함. 이에 광주문화재단은 별도의 홍보팀을 구성하여 다각적 채널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



[그림 44] 문화예술활동 참여시 장애요인

- ◆ 이러한 문화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재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 또한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음



[그림 45] 문화재단 설립 기대효과

■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 ◆ 광주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광주시의 문화예술사업을 종합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가능함으로써 광주시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광주시 문화사업의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관-민-문화재단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부문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광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관된 주체 및 인력이 담당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지속성 및 사업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지역 문화서비스 기획 및 운영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또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참여자를 발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기대
 - 일반 시민이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문화예술활동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므로써 문화예술인, 창작(생산) 및 향유(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 효과 기대 가능

■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 ◆ 광주문화재단 운영 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좁게는 문화소외계층을 배려한 프로그램부터 넓게는 광주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포함함
- ◆ 모든 연령, 계층, 지역을 배려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주시민이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운영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접근하기 쉬운 문화환경 조성 및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VIII

종합결론

- ◆ 행정안전부(2017.1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타당성 판단 항목별 검토결과 광주시 문화재단의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161] 광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종합

구 분		내 용					검토 결과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대상사업	· 지역문화재단 사업영역 해당되는 기존 사업들에 대해 검토 － 현 시설 및 운영현황 파악, 타 문화재단 운영사업 검토, 문화재단 이관 시 활성화 가능여부 검토 → 이관사업 － 시설 : 문예회관, 남한산성아트홀, 청소년수련관 － 축제 :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3개 시설 이관 2개 축제 (공동주관)	
	경제성 분석	분석 기간	30년	할인율	1.31%		경제적 타당성 확보	
		B/C	1.12	NPV	27,776백만원			
	사업수행 방식의 적절성	· 문화사업 관련 운영주체별 최적의 방안 도출 － 직영, 민간위탁, 공사/공단 및 문화재단 비교 · 광주시 여건 상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제시 ① 광주시 문화수요 증대 ② 지역 정체성 확립 필요 ③ 광주시 정주여건 제고 ④ 문화예술사업 운영여건 개선 필요 ⑤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기반마련					적 정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경기도)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백만원)		취업유발효과 (명)	파급효과 약 250억	
		17,672		7,374		239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방재정 대비 0.5~0.8%
		일반회계 (백만원)	881,848	961,214	1,047,723	1,142,018	1,244,800	
		출연금 (백만원)	4,660	7,230	7,570	7,670	7,870	
		비율 (%)	0.5%	0.8%	0.7%	0.7%	0.6%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문화재단 설립 시 희망사업 － 1순위 : 지역특화사업 개발 25.6% － 2순위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 22.8% · 문화재단 설립 시 기대효과 － 1순위 : 문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6.5% － 2순위 :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22.7%					문화재단 찬성/설립 시 긍정적 효과 기대	
다른 기관과의 기능 중복		· 광주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4개 기관)의 목적, 성격 검토					기능 중복 없음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 타 기관 운영사례 및 현 운영 인력의 적정성 검토 → 1관 5팀 체제(총 52명) : 경영관리팀, 정책기획팀, 공연기획팀, 시민문화팀, 홍보팀, 청소년수련관					1관 5팀 (52명)	
적정 자본구조 분석		· 타 문화재단 자본금 사례 검토					1천만원 자본금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기존 대상사업의 관련 인력 검토					공무원 2명 도시관리공사 16명 감축	



부 록

1. 주민의견조사 설문지
2.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문화재단 정관(안)

1. 주민의견조사 설문지

「광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광주시민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광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광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생각하시거나 느끼신 대로 해당 항목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을 할애하시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주관기관 : 광주시 문화관광과

조사기관 :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담당자 : 강민애 과장 (연락처 : 070-8650-4314)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견

1. 귀하께서는 평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 있다

2. 귀하께서 평소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선호하십니까(다중응답)? (____, ____)

- ① 전시회(미술, 건축, 서예, 디자인 등) ② 전통 예술 공연(국악, 풍물, 민속극 등)
③ 서양음악 공연(클래식, 오페라 등) ④ 대중음악 공연
⑤ 연극, 뮤지컬 ⑥ 무용(한국무용, 서양무용, 현대무용)
⑦ 영화 ⑧ 축제(야외행사 포함)
⑨ 문화예술교육(악기연주강좌 등) ⑩ 문학행사(시화전, 작가와의 대화 등)
⑪ 강의 및 역사탐방(역사, 철학콘서트 등) ⑫ 기타()

3. 귀하께서 지난 1년간(2017.11~2018.11)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광주시 ② 타 지역 ③ 서울 ④ 기타()

4. 귀하께서 지난 1년간(2017.11~2018.11) 참여하신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별 참여 횟수 및 만족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참여 횟수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공연관람(음악, 무용, 연극 등)	()회	☐	☐	☐	☐	☐
2.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회	☐	☐	☐	☐	☐
3. 축제 방문(야외행사 포함)	()회	☐	☐	☐	☐	☐
4. 문화예술교육(학교 교육 제외)	()회	☐	☐	☐	☐	☐
5. 역사문화유적 답사, 체험	()회	☐	☐	☐	☐	☐
6. 문화관련 단체(동호회, 합창단 등)	()회	☐	☐	☐	☐	☐
7. 극장에서 영화관람	()회	☐	☐	☐	☐	☐

5. 귀하께서는 광주시 문화예술 활동 및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영역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설]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충분하다	☐	☐	☐	☐	☐
[환경]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기회가 충분하다	☐	☐	☐	☐	☐
[활동] 광주시 문화예술 활동단체가 다양하다	☐	☐	☐	☐	☐
[교육] 광주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	☐	☐	☐	☐
[축제] 광주시 축제 및 문화행사가 다양하다	☐	☐	☐	☐	☐
[종합] 광주시 문화예술 활동 및 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	☐	☐

6. 귀하께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다중응답)? (____, ____)

- | | |
|------------------------|------------------------|
|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 | ② 프로그램의 기간 및 시간 |
| ③ 편의시설의 구비 수준 | ④ 참여진(주관단체, 출연진)의 지명도 |
| ⑤ 교통의 편의성 | ⑥ 위치의 접근성(거주지와의 거리) |
| ⑦ 문화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견/언론보도 | ⑧ 문화 활동에 대한 주위의견/네티즌평가 |
| ⑨ 비용의 적정성 | ⑩ 기타() |

7. 귀하께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다중응답)? (____, ____)

- | | |
|----------------------|--------------------|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 ② 시간적 여유가 없다 |
| ③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 ④ 문화시설까지의 교통이 불편하다 |
| ⑤ 시설(편의시설 등)이 불편하다 |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 ⑦ 시스템(예매, 예약 등)이 어렵다 | ⑧ 기타() |

8. 광주시 문화예술시설(광주문예회관, 남한산성아트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 8-1로 이동) ② 없다 (→ 문 9로 이동)

8-1.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응답자 → 문 8-2로 이동)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8-2. 광주시 문화예술시설 이용에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취약한 문화기반시설(공연장·전시시설 등) | ② 문화프로그램의 부족 |
| ③ 문화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 지원 미약 | ④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 등 혜택 부족 |
| ⑤ 주민 홍보 부족 | ⑥ 기타() |

9. 귀하께서는 향후 문화예술 활동시간을 늘릴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크게 늘릴 것 ② 늘릴 것 ③ 현재와 동일 ④ 줄일 것 ⑤ 크게 줄일 것

10. 향후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여건은 무엇입니까(다중응답)? (____, ____)

- | | |
|-----------------|------------------|
| ① 문화시설의 확충과 정비 | ②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확대 |
| ③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④ 시민 문화공동체 발굴 |
| ⑤ 지역 문화 인력 양성 | ⑥ 소외계층 문화 격차 해소 |
| ⑦ 관련 정보·홍보수단 강화 | ⑧ 기타() |

광주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

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문화전문기관을 말함 • 문화재단 설립 현황 : 전국 95개소(광역시 17개소, 기초 78개소) 중 경기도 16개소 - 경기, 수원, 성남, 부천, 광명, 안산, 안양, 고양, 오산, 군포, 하남, 용인, 김포, 화성, 여주, 의정부
------	---

11. 광주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문 11-1로 이동) ② 반대 (→ 문 11-2로 이동) ③ 잘 모르겠음 (→ 문 12로 이동)

11-1. 광주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 12로 이동)

- ① 공공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제공 ② 축제 및 문화행사의 질 향상 기대
③ 문화에 대한 종합전문기관 설치 필요 ④ 안정된 지원과 다양한 문화행사 기대 ⑤ 기타()

11-2. 광주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상태에 만족 ② 현 문화예술 기관과 기능 중복 ③ 지역 발전 영향력 미비
④ 타 분야 사업의 재원 투입 우선 ⑤ 기타()

12. 광주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② 주민 생활문화활동 지원
③ 문화예술인 지원·양성 확대 ④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⑤ 광주시 문화정책 연구·개발 ⑥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⑦ 문화시설의 내실있는 관리·운영 ⑧ 지역특화 문화콘텐츠사업 개발(지역축제 등)
⑨ 문화관련 홍보·마케팅의 확대 ⑩ 기타()

13. 광주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다중응답)? (____, ____)

- ① 문화예술시설 구축 ② 전문 인력 확충 ③ 충분한 재원 확보
④ 지역주민과의 협력 관계 ⑤ 지역문화예술인과의 협력 관계 ⑥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⑦ 지역특화 사업 개발(축제 등) ⑧ 자율적 사업 운영 환경 ⑨ 기타()

14. 광주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다중응답)? (____, ____)

- 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② 문화복지·교육 확대로 시민 문화역량 증대
③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④ 문화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문화기반 강화
⑤ 문화예술 창작 여건 개선 ⑥ 문화콘텐츠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⑦ 문화행정 효율성 증진 ⑧ 기타()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관련 질문

15. 성 별 ⇨ ① 남 ② 여
16. 연 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7. 거 주 지 ⇨ ① 경안동 ② 곤지암읍 ③ 광남동 ④ 남종면 ⑤ 남한산성면
⑥ 도척면 ⑦ 송정동 ⑧ 오폭읍 ⑨ 초월읍 ⑩ 퇴촌면
18. 거주 기간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15년 ⑤ 15년 이상
19. 직 업 ⇨ ① 농·축수업 ② 자영업 ③ 공무원 ④ 회사원 ⑤ 생산/기술직
⑥ 판매/서비스/영업직 ⑦ 전문직 ⑧ 단순노무직 ⑨ 학생
⑩ 주부 ⑪ 무직 ⑫ 은퇴자 ⑬ 기타()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설문제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2.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청소년수련관·외국어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교육연구
4. 문화예술 진흥·지역문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5.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7.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8.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보고·검사·감사)

-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협약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중인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광주문화재단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광주문화재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891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2.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청소년수련관·외국어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교육연구
4. 문화예술 진흥·지역문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5.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7.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8.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재단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인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이사장)

-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회를 소집 및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대표이사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④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⑤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사람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5급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
 3. 문화예술관련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5. 저명한 문화예술인으로써 예술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
 6. 그 밖에 임명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대표이사는 사무국장을 겸직한다.

제9조(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경제문화담당국장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5급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
 2. 문화예술관련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4. 저명한 문화예술인으로써 예술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
 5. 그 밖에 임명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감사)

-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감사는 문화관광담당과장이 된다.

- ③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 2. 이사회 및 사무국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⑤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재단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비상설로 하고, 시장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 2명과, 재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설립 최초는 위원회를 시에 설치하고, 시장이 위원 4명, 시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며, 이사후보의 선정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시장이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
 - 2. 4년제 대학 문화예술 관련학과 교수
 -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및 기관 시설의 장
 - 4. 변호사, 공인회계사
 - 5.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면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단의 임원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만기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였을 때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 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0조제4항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예산, 결산,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조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제척)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산 및 회 계

제21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및 자본증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④ 재단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22조(재산의 관리)

- 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24조(경비의 충당)

-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의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2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결산서의 제출)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보고·감사)

재단은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이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0조(직제 및 정원)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재단의 사무를 관장을 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2조(직원의 임명 등)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자문기구)

재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둔다.

제35조(수당의 지급 등)

제34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제36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기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기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제40조(광고방법)

재단이 광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재단 및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 ①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된 정관은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구분	금액(원)	비고
출연금(현금)	₩10,000,000	

[별지 2]

설립발기인 명단

번호	성명	주소	약력(경력)	날인
1				
2				
3				
4				
5				
6				
7				
8				
9				
10				